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사항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년 3월 31일

이순래 · 장규원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
제4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3
제2장 수용자의 인권과 진정권	5
제1절 수용자 인권의 기본방향	5
제2절 진정권제도에 관한 규범적 검토	8
제3절 외국의 인권위원회와 진정제도	20
제3장 진정권 제도의 운영실태	31
제1절 진정신청의 현황	31
제2절 진정처리결과의 현황	35
제4장 연구방법론	38
제1절 수용자 설문조사	38
제2절 구금시설 공무원 심층면접조사	41
제3절 조사대상 구금시설의 진정권제도 운영	43
제4절 조사대상 수용자의 일반적 성격	49
제5장 연구결과	55
제1절 진정권제도 인지도	55
제2절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 태도	68
제3절 진정경험	83
제4절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87
제5절 진정권행사의 방해요인	94
제6절 진정후 불이익 경험	99
제7절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	103
제8절 교정공무원의 심층면접 결과	110
제9절 요약	116

제6장 결론	120
제1절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	120
제2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21
제3절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124
참 고 문 헌	126
부 록 1 Interview Guide	128
부 록 2 설문지.....	129
부 록 A 구급시설별 조사결과	150
부 록 B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67
부 록 C 진정효과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73
부 록 D 진정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74
부 록 E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78
부 록 F 진정방해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81
부 록 G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82
부 록 H 시설의 진정권보장노력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83
부 록 I 진정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84
설문조사 지침서	188
심층면접 지침서	190
면접조사자 훈련자료	192
자문회의 회의결과	194

< 표 목 차 >

<표 3-1> 인권침해 진정접수현황	32
<표 3-2> 월별 면진진정 신청현황	33
<표 3-3> 구금시설별 면진진정 신청률	34
<표 3-4> 구금시설별 진정 처리현황	36
<표 4-1> 조사표의 구성	39
<표 4-2> 조사대상자의 분포	40
<표 4-3> 심층면접대상자 분포	41
<표 4-4> 시설별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방법, 배정시간, 교육자	44
<표 4-5> 시설별 입소후 진정권제도 교육방법, 배정시간, 교육자	46
<표 4-6> 시설별 입소시와 입소후의 진정관련 교육시간	47
<표 4-7> 시설별 진정함 설치현황	48
<표 4-8> 조사대상 수용자의 성별	49
<표 4-9> 조사대상 수용자의 연령별 특성	50
<표 4-10> 조사대상 수용자의 신분별 특성	50
<표 4-11> 조사대상 수용자의 학력별 특성	51
<표 4-12> 조사대상 수용자의 전과	52
<표 4-13> 조사대상 수용자의 징벌경험	52
<표 4-14> 조사대상 수용자의 적응정도	53
<표 4-15> 시설유형별 조사대상자 분포	54
<표 5-1>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56
<표 5-2> 시설유형별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57
<표 5-3> 진정절차에 대한 인지도	59
<표 5-4> 시설유형별 진정절차 인지도	60
<표 5-5>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성별과의 관계	63
<표 5-6>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연령과의 관계	64
<표 5-7> 진정권제도의 인지도와 수용자 신분과의 관계	64
<표 5-8>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교육정도와와의 관계	65
<표 5-9>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전과와의 관계	66
<표 5-10>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징벌경험과의 관계	66

<표 5-11>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수용생활 적응도와의 관계	67
<표 5-12> 타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행위 필요성에 관한 태도	69
<표 5-13> 시설책임자와의 상담에 관한 태도	70
<표 5-14> 진정효과에 관한 소극적 태도	70
<표 5-15> 진정 후의 불이익에 관한 태도	71
<표 5-16> 시설유형별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	72
<표 5-17> 시설유형별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태도	73
<표 5-18> 성별과 진정효과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	74
<표 5-19> 연령과 진정효과에 관한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	75
<표 5-20> 수용자 신분과 진정효과에 관한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	76
<표 5-21> 학력과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76
<표 5-22> 전과횟수와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77
<표 5-23> 징벌경험과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78
<표 5-24> 수용생활 적응도와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78
<표 5-25> 성별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79
<표 5-26> 연령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80
<표 5-27> 수용자 신분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80
<표 5-28> 학력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81
<표 5-29> 전과횟수와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82
<표 5-30> 징벌경험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82
<표 5-31> 수용생활 적응도와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83
<표 5-32> 진정경험	84
<표 5-33> 진정형태	84
<표 5-34> 서면진정사유	85
<표 5-35> 면진진정사유	86
<표 5-36>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88
<표 5-37> 시설유형별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에 의한 진정장애	89
<표 5-38> 시설유형별 진정절차의 복잡성·불편함으로 인한 진정장애	90
<표 5-39> 시설유형별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진정장애	92
<표 5-40> 시설유형별 서면진정도구의 미비로 인한 진정장애	92
<표 5-41> 시설유형별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진정장애	93
<표 5-42> 진정방해 경험	94
<표 5-43> 시설유형별 진정방해	95

<표 5-44> 진정방해의 경우에 진정사유	96
<표 5-45> 진정방해자	97
<표 5-46> 진정방해방법	98
<표 5-47> 진정 불이익 경험	100
<표 5-48> 시설유형별 진정후 불이익 경험	101
<표 5-49> 교정공무원으로부터의 불이익 내용	102
<표 5-50>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	105
<표 5-51> 시설유형별 입소시 진정권 관련 교육	107
<표 5-52> 시설유형별 입소후 진정권 관련 교육	107
<표 5-53> 시설유형별 진정함의 설치의견	108
<표 5-54> 시설유형별 인권위 진정관련 안내서 비치와 자유로운 열람	108
<표 5-55> 시설유형별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	10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에 있어서도 그들이 시설내에서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의 인격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정 현실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낡은 시설 등으로 시설내 생활이 열악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 결과 교정시설은 종종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인식되고 있다.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인권단체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교정시설 관련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실제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3,593건의 진정사건에서 2,833건이 인권침해사건이었고(78.8%), 그 중에서 교정시설 관련사건이 1,113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9.3%).²⁾ 국가인권위원회법(2001.5.24. 법률 제6481호)과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2002.2.9. 대통령령 제17517호)에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 시설수용자의 입소시에 인권침해사실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진정방법의 고지, 진정함의 설치 및 운용, 서면진정 문서의 열람금지,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등을 규정하여 시설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침해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금시설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들의 자유로운 진정권행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1) 장규원,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자료(www.humanrights.go.kr) 참조.

하는 연구과제는 1) 진정권의 법적 근거, 2) 진정권 제도의 운영실태, 3)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 인지도, 4) 수용자들의 진정권행사에 대한 태도, 5) 진정권행사의 경험, 6)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7) 진정권행사의 방해요인, 8) 진정권행사 후의 불이익 사항, 9)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 10) 진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다.

제2절 연구방법

이 연구가 활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공식통계분석 등이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진정권에 대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18개 구금 시설에서 임의 추출된 1,084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1)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 인지도, 2) 수용자들의 진정권행사에 대한 태도, 3) 진정권행사의 경험, 4)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5) 진정권행사의 방해요인, 6) 진정권행사 후의 불이익 사항, 7)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관한 실태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진정권제도에 대한 실무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8개 교정시설의 고충처리반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들 중에서 24명을 선정하여 1) 진정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태도, 2) 수용자들이 진정을 하는 이유, 3) 수용자의 진정행위로 인한 업무상의 고충과 문제점, 4) 진정방해의 이유와 동기, 5) 진정권의 제도적 보완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식통계분석은 진정권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자료 및 교정시설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공식통계를 통하여 1) 인권침해에 관한 전체 진정사례의 규모, 2) 진정신청의 추세, 3) 구금시설별 진정신청률, 4) 진정의 처리결과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정권제도의 실태에 대한 기술정보(descriptive information)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수용시설 특성과 진정권제도의 실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는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지원한 SA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보고서는 6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진정권에 대한 법률적 의미와 다른 수용자 권리구제장치와 진정과의 차이 및 외국의 진정제도를 검토하였다. 제3장은 진정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관한 전체 진정 사례의 규모, 진정신청의 추세, 구금시설별 진정신청률, 진정신청의 처리결과, 진정의 처리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제4장은 연구방법론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는 수용자 대상의 설문조사 방법, 교정공무원 대상의 심층면접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사가 실시되었던 구금시설과 수용자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기술하였다. 구금시설에 관한 일반적 정보로는 진정권행사에 대한 입소시 교육방법, 진정권행사에 대한 입소후 교육방법, 진정함 설치와 관리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수용자의 일반적 정보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신분, 전과경험, 구금시설 적응도 등을 기술하였다. 제5장은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 인지도, 수용자들의 진정권행사에 대한 태도, 진정권행사의 경험,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진정권행사의 방해요인, 진정권행사 후의 불이익 경험,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교정공무원과의 심층면접결과를 정리하였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여기서는 우선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진정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제도보완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제4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구금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정권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실태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의 실태자료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진정권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고자 했을 때에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정직 공무원의 인권교육과 교도행

정 개선방안의 모색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규범학적 연구를 통한 법률적·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구금시설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데 사용하는 시설 및 군교도소로 규정하고 있다. 구금시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이며 또한 시설수용자와 시설근무 공무원의 불평등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시설수용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 구금시설 중에서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등 44개 교정시설 중에서 18개 시설만을 연구대상시설로 한정하였고, 조사대상 선정은 시설규모, 지역, 시설유형, 조사대상 성별 비율, 미결/기결수 등을 고려하여 표집했지만 실제 조사대상 선정은 교정시설의 여건으로 인해 시설측이 추출함으로써 조사대상자들이 임의추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제2장 수용자의 인권과 진정권

제1절 수용자 인권의 기본방향

1. 법률적 관계의 변화

수용자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법률적 관계에 놓이는 것인가? 종래 국가와 수용자와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론에 따라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교정당국의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 이상의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수용자에게는 일반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고, 기본권에 대한 제한도 반드시 법률에 의할 필요가 없으며 수용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거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인 특정한 신분에 있는 자는 그 포괄적 지배권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특별권력관계론에 따르면, 특정한 행정목적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특별권력의 발동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행정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기본권을 갖지 못하고(기본권의 배제),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도 다투지 못하며(사법심사의 배제) 또한 법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법치주의의 배제) 합목적성에 따라 특정 상대방에게 강화된 복종이 요구된다 하였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배제를 그 특색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하여 오늘날에는 비판적 입장에서 새로운 검토가 전개되면서 이를 부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나,³⁾ 무엇보다도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법치

3) 예컨대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하여 관료국가(官僚國家)의 유물 내지 화석화(化石化)한 절대적 행정의 산물이다(석중현, 2000: 165).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은 역사적·이데올로기적 소산

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실정헌법 아래서 헌법적 근거도 없이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성립·발전된 특별권력관계론은 이른바 ‘수용자 사건’이라 불리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행형에 관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부인되었다.⁴⁾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2년 3월 14일 수용자의 경우에도 기본권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BVerfGE 33; 1, 9ff.). 이 판결 이후 소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법률유보는 적용되며, 기본권 행사의 제한은 오로지 법률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고,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처분도 권력복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권리보호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등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고,⁵⁾ 오늘날에 와서는 특별권력관계는 이른바 ‘특수한 신분관계’의 명칭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특수한 신분관계라 하여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즉 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은 특수신분관계설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침해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 특수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은 예컨대 군인·군무원의 기본권제한,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수용자의 개별법률(행형법)에 의한 특별한 제한을 들 수 있다.

2. 실질적 법치주의와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된다는 원칙을 말한

이기 때문에 민주적·법치주의적 헌법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적절치 못하다(권영성, 2003; 김동희, 2003)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4) Kaiser/Kerner/Schöch, Strafvollzug (4.Aufl.), 1997.

5)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타인과의 접견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나 제한의 필요가 없는 데도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의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2.5.8, 91부8, 공보925호, 82쪽).

다. 형식적 의미로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률로써 예측 가능한 국가를 법치국가라 한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란 법치주의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한 형식적 법률의 지배를 말한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우위를 절대시하여 법률을 방자한 국가권력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은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수단 내지 법률을 이용한 합법적인 지배를 의미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정의의 이념 그리고 개인의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여 법의 실질적인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제기되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오늘날에는 수용자도 형벌로써 자유박탈을 당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반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체로서 인정되고 있다. 즉 수용자와 국가와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명령·복종의 관계가 아니고, 권리와 의무라는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헌법은 직접적으로 법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전반에 걸쳐 그 이념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즉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제37조 제2항을 비롯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한 제119조 제2항 등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행형과 관련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소는 기본권의 보장, 집행의 법률적합성, 사법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다.⁶⁾

행형법정주의(行刑法定主義)에 따라 예컨대 ‘행형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용자의 수용관계는 여전히 특별권력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행형 분야에서도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인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헌법상의 기본권은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가치결정과 법원리들이 그 척도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은 특히 헌법 제12조 제1항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단지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형벌집행과 행형과정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이른바 행형법정주의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행형법정주의란 단지 행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행형절차의 적정도 아울러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장규원, 앞의 책, 1995 참조.

특수신분관계인 수용자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용된다면, 수용자의 어떤 권리가 어느 정도로 제한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은 헌법이 헌법 자체나 개별법률(행형법)을 통해 유보를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유념하여야 할 것은, 수용자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할지라도 인정된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보다 강화된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절대적 기본권에 속하여 법률로써도 박탈 내지 제한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예컨대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들 수 있다. 둘째, 외부와의 교통권 등의 제한은 법률의 명확한 근거가 요구된다. 한편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라 하여도 처우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는 두발·운동·개인물품의 소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헌법원칙들과 개별기본권 규정들은 어떠한 방향에서(또는 방향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틀을 제공한다.

제2절 진정권제도에 관한 규범적 검토

1. 진정권 개념정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침해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요청으로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청구권적 기본권 중의 하나로 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상대로 청원을 할 수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⁷⁾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手段的) 권리이다. 따라서 청구권적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우리의 경우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관하여 청원법(1963.2.26. 법률 제1283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청원법 제4조는 청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정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원의 개념을 빌어서 진정의 개념을 정리한다. 청원의 개념과 진정의 개념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구별되는 개념인가는 청원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청원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1)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국가기관에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는 자유권설(自由權說), 2)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국가가 이를 수리·심사할 수 있는 청구권설(請求權說), 3)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설(參政權說), 4) 청원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면서 일정한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복합적 권리설(複合的 權利說)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청원권은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또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국가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복합적 권리설).

사전적 의미의 ‘청원’이란 바라는 바를 말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또한 사전적 의미의 ‘진정’은 실정을 털어놓고 말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서 진정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진정은 고충민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말하며,⁸⁾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사기업이나 기

7)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550쪽 이하 참조.

8) 이창현·지영림, 진정서·탄원서 작성의 모든 것, 청림출판, 1999. 13쪽.

타 사회적 제도 등에서 야기된 침해나 차별과 관련하여 청원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청원권의 개념과 진정권의 개념은 같은 선에서 놓고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청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해지게 되어 있지만, 진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것 이외의 그 기본권적 침해 및 차별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 처분에 대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진정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제11조 제외)에 정한 인권침해의 사항, 고용관계,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관계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관계에서의 차별, 특정인에 대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차별은 법인, 단체, 사인간의 차별과는 달리 차별사유와 영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헌법 제11조)로 규정된다. 진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 더불어 청원권이 미치기 어려운 범위, 특히 구금·보호시설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에까지 그 대상을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4조 참조).

진정의 방법과 개시는 진정서를 통해 이루어진다(청원법 제6조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여기서 진정서란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한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에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이 행정기관으로 인하여 겪게 된 억울한 일을 편지형식으로 써놓은 것은 물론,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보내온 것, 그 외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는 모든 종류의 진정을 진정서라고 할 수 있다.

2. 진정제도와 유사제도 검토

오늘날 교정처우의 기본방향은 수용자에게도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동의와 참여 하에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다(재통합 모델).⁹⁾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수용자가 권리를 가진다고 해도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과 구제책이 없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수용자의 권리구제는 크게 ‘비사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

9) 장규원, 앞의 책, 1995; 박재운,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국민대학교출판부, 1996 참조.

법적 구제는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의 형태가 있고, 기본권침해의 경우는 헌법소원까지 가능하다.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는 소장면담과 순회점검공무원이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행정심판 등의 제도가 있다. 이러한 구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비사법적 구제

청원 청원은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그 사정을 호소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행형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수용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청원서를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정공무원은 그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5항).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소장이 지체 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행형법상의 청원은 헌법상의 청원권(헌법 제26조 참조)과 이에 의한 청원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헌법과 그에 따른 청원법의 청원이 다소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행형법상의 청원은 교도소장의 위법·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수용자에게만 그의 처우상 이익을 위해 보장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수리하고 심사·처리할 의무는 있으나 재판절차에 준하는 재결(裁決)이나 결정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차이가 있다.

청원법과는 달리 행형법에서는 청원에 대한 결정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청원인에게 전달토록 하고 있으나, 이 점만으로 행형법상의 청원이 행정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원으로 당해처분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청원이 채택되더라도 즉시 당해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소장의 취소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원은 중요한 권리구제수단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실효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¹¹⁾

10)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425쪽.

소장면담 행형법시행령(2000.3.28. 대통령령 제16759호)은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1항). 소장면담은 처우에 대한 불복 이외에 일신상의 사정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원과는 구분된다.

소장면담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뿐만이 아니라 일신상의 사정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신상상담을 위한 제도로써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행형법시행령에서는 수용자의 신청에 대한 소장의 면담이 의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소장의 직무상의 의무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수용자에 대하여 면담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장면담은 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장이 수용자의 면담요청을 거절한 때에는 청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의 청구 행정심판법(1984.12.15. 법률 제3755호)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형법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수용자는 행형에 있어서 권리를 위법·부당하게 침해당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법원 외의 기관으로부터 권리를 구제 받는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인 행정소송과 구별되고,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정식적 권리구제라는 점에서 비정식적 권리구제인 청원과 구별된다.

행정심판청구의 길이 수용자에게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요구하는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수용자의 권리나 교정당국의 자유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¹²⁾

행형 옴버즈맨 제도 옴버즈맨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부정 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나 정부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을 말한다.

11) 정진수,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60~62쪽.

12) 정진수, 앞의 책, 2002, 63쪽.

일반적으로 옴버즈맨은 불평을 수리하여 수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기관에 대안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는 권한을 가진다. 옴버즈맨은 해당기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만 있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그들의 비당파성과 설득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옴버즈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불평을 쉽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옴버즈맨의 수용자·교도관 그리고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옴버즈맨의 해결책이 수용자와 교도관 모두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한다.¹³⁾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제도를 보면 사법옴버즈맨이나 군사옴버즈맨이나 모두 의회의 각 원(各院) 24인으로 구성되는 48선거인단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선될 수 있다. 옴버즈맨은 매년 의회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회가 의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170여 년 동안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례는 전혀 없다. 옴버즈맨은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직무는 정부각료와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비위(非違)에 관한 조사·판단·건의의 권한을 가지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문이나 기타 자료·정보에 의하여 스스로 인지한 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옴버즈맨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어느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나 건의할 수 있다.

나. 사법적 구제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대하여 소송의 형식으로써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수단이다.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 있으며(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 이 중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며 항고소송의 유형으로서는 취소소송·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같은 법 제4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조치에 대한 불복신청의 수단으로서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며 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수용자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론에 따르면 수용자는 사법부의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용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13) 정진연, “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와 법적 구제”, 교정 (제11호), 2000, 31쪽.

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982.7.27. 80누86). 따라서 수형관계가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자의 항고소송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행정법에서 직접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태도는 수용자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¹⁴⁾

헌법소원 수용자는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자는 모든 절차를 통해서도 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수용자의 헌법소원을 보장하고 있다.

3. 진정의 처리절차

이 연구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진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그 기본이 된다(제1조, 제2조, 제19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참조¹⁵⁾).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의 처리절차를 개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2002.3.8.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을 살펴보아야 한다.¹⁶⁾ 법에 기초하여 진정처리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진정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칙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보충적 사항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4) 장규원, “교정행정의 미래”, 교정연구 (제12호), 한국교정학회, 2001, 93쪽 이하 참조.

15) 이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특별히 법률명을 표기하지 않고 조문만을 표기하며, 다른 법률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약어로서 표기한다.

1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은 2003년 6월 2일 개정되었으나, 본 연구는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개정된 조사규칙을 중심으로 진정처리절차를 살펴본다.

가. 조사와 구제절차 처리 원칙

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 담당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1항). 그리고 인권위 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관계인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진정·관계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나. 진정의 방법과 절차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 진정은 문서(우편,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규칙 제6조). 진정인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 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규칙 제12조), 접수담당자는 제출된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진정내용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규칙 제10조). 한편 접수담당자는 진정을 접수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장래 활동방침 수립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기초통계자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작성하게 할 수는 없다(규칙 제11조).

진정사건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과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으로 분류한다(규칙 제14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다. 시설수용자의 진정방법

특히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가 서면으로 진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즉 서면진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소속공무원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속공무원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같은 조 제7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의 면전에서 할 수 있다. 이를 면진진정이라 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즉시 그 뜻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통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확인서와 면담일정서를 발급받는 즉시 진정인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하고,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과 인권위원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라. 시설수용자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시설수용자의 진정에 있어서 ① 진정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

17) 여기서 ‘구금·보호시설’이란 교정시설,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상자를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군교도소, 외국인보호소, 다수인 보호시설을 뜻한다(제2조 참조).

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⑥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⑦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⑨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⑩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제32조).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하며, 이송 받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때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제32조 제4항).

마. 조사의 개시와 사건의 처리절차

진정사건이 각하 또는 이송의 대상이 아닌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연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의 개시는 진정접수가 된 때이다. 진정사건은 조사·심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20조).

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에 각하사유 또는 이송사유가 있는 경우(제32조, 제33조 참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게 수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사유가 있는 경우(제34조 제1항 참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한 경우(제36조 제7항 참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관할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22조).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① 사실이 아닌 경우, ②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고, 그 이유를 진정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39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절차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였으나(제40조 참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피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바.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될 때에는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제44조). 구제조치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포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참조).

진정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45조).

또한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에 회복하기 어렵고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관계인 혹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하는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제48조, 제60조 참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37조).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여 할 수 없다(제47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동안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청원, 소장면접, 행정심판이 있었으며, 사법적 구제수단으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청원, 소장면접, 행정심판 등의 비사법적 구제수단은 수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권리침해 또는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는 교정행정 당국에 의한 것으로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는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등 수용자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의 권리구제수단에 비교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진정제도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므로 과거 비사법적 구제수단들에 흔히 지적되었던 실효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이다. 두번째, 권리구제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청원은 행형법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만 행해지지만 진정의 경우는 행형법이 정하는 바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기본권적 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권에 비하여 구제범위가 보다 광범위하다. 세번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이다.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에 수용자들은 절차의 복잡성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진정제도는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진정의사를 표명하면 즉시 진정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번째, 면전진정이란 새로운 진정방법을 도입하여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진정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즉 외부와의 접견이나 교통이 자유롭지 못한 수용자들에게 위원회의 위원 혹은 직원이 방문하여 진정을 듣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진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섯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징벌중에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용상태와 관계없이 수용자들이 항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9조). 마지막으로, 진정처리과정에서 원상회복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합의와 조정과 같은 분쟁해소절차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내지 제43조).¹⁸⁾

18) 원상회복의 이념과 운용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이호중, 형법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연

제3절 외국의 인권위원회와 진정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국제적 보호는 크게 강화되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비롯한 많은 인권조약들이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조약들은 각국의 인권 관련 입법에 영향을 주었다.¹⁹⁾ 또한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들을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다. 예컨대 여성, 장애인, 난민 등 특정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만 제도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외국의 인권위원회 관련입법과 진정 관련제도를 살펴본다.²⁰⁾

1. 캐나다 인권법

가. 캐나다 인권법의 연혁과 내용

캐나다에서는 1977년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이하 ‘인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인권법의 제정 이전에는 개별적인 차별금지 법률이 있었다.²¹⁾ 인권법은 제정 이후 인권심판소(Human Rights Tribunal)의 설치를 위한 개정 등 여러 차

구, 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순래, 소년전환처우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8, 학당 명형식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pp. 511-539; 이순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근 피해자학 연구동향, 1999, 피해자학 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pp. 3-25).

19) 토마스 버겐탈/양건·김재원 옮김, 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1992 참조.

20) 이에 대해서는 문준조,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조용환, “세계인권회의참가보고서”, 인권보고서 (제8집), 대한변호사협회, 1993;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0; 토마스 버겐탈/양건·김재원, 앞의 책, 1992을 주로 참조하였다.

21) 예컨대 British Columbia Social Assistance Act 1945; Ontario Racial Discrimination Act 1944; Saskatchewan Bill of Rights Act 1947 등을 꼽을 수 있다.

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권법은 연방헌법의 권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되는 차별금지법률로서 헌법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인권법의 목적은 “모든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질 수 있고 갖기를 희망하는 생활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여기서 기회균등이란 실질적 평등 개념에 따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차별금지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법은 차별금지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로는 인종 또는 출신국, 종교, 연령, 성, 성적 성향, 결혼상태, 가족상황, 장애, 사면된 범죄에 대한 유죄(전력) 등을 열거하고 있다. 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을 다르게, 부정적으로 또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괴롭힘도 차별에 해당한다.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일반인에 의해 관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생활시설·서비스·공공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제5조), 상업적 공간이나 거주시설의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제6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제7조 내지 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법은 차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차별적 관행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별의 입증책임은 진정인에게 있다. 진정인이 차별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반증이 없는 한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

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처리

모든 사람은 인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지된 사유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자신이 그러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²²⁾

진정은 인권위원회 접수창구 담당자가 진정인의 진정의사를 확인하고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진정서가 수리되면 피진정인에게 그 사본을 송달하여 그에 대한 반론

22) 캐나다 인권법 제26조는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최고 7년을 임기로 총독이 임명하고,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인권위원회 직원은 진정서를 검토하고 그 수리 여부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권고안을 검토한 후 당해 진정을 각하하거나 그 진정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관의 임명을 지시하거나 또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의 개시를 인권심판소 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의 법원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다. 인권심판소는 심리 중에 증인을 소환하고 제시된 증거를 검토하며, 심리를 종결한 후 진정의 기각 또는 인용의 결정을 한다. 한편 인권위원회 위원은 인권심판소에 출석하여 공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가지며, 진정인은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권위원이 진정인을 대리하는 경우도 있다. 피진정인은 직접 출두하거나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뉴질랜드 인권법

가. 뉴질랜드 인권법의 연혁과 내용

뉴질랜드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3)은 1993년에 들어 흔히 통상적 국가기관이 아닌 별도의 실체를 구성하여 인권을 보호하려한 최초의 선례로 평가되는 1977년의 인권위원회법(The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77)과 1971년의 인종관계법(The Race Relations Act 1971)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²³⁾ 1993년 뉴질랜드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진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과거 인종관계법(1971)에서 금지하였던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행위와 성, 종교적 신념, 윤리적 믿음, 연령, 가족상태, 결혼상태, 장애상태, 정치적 의견, 취업상태, 성적 지향 등 13개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2000년 초에 뉴질랜드 법무부는 인권보호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01년 12월에 수정인권법(The Human Rights Amendment Act 2001)을 제정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에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특수법인(body corporate)이며, 인권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해 총독이 임명한다. 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인권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한다. ②

23) 구체적인 법조문에 관해서는 www.hrc.co.nz 참조

인권분야에서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한다. ③ 인권법의 이해와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성명을 포함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공적인 권고를 발표한다. ④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인권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관행의 회피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공표한다. ⑤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한다. ⑥ 인권보호와 관련된 다른 사람과 단체들과 협의하고 협력한다. ⑦ 수상에게 수시로 인권보호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제인권문서의 준수수가 바람직한지의 여부, 입법안이나 정부 정책안이 인권보호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한다. ⑧ 인권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여 또는 부과된 다른 기능, 권한 및 직무를 행한다.

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처리

2001년 수정인권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진정처리절차이다. 수정인권법은 진정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인권소송국(The Office of Human Rights Proceedings), 인권심판소(The Human Rights Review Tribunal)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수정인권법은 과거 인권위원회에 설치되었던 진정담당부서(Complaints Division)와 조사기능(investigation function)을 폐지하고 대신에 분쟁의 조정역할을 강화하였다.²⁴⁾ 인권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은 정보조언자 단계, 당직조정관 단계, 조정관 단계 등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정보조언자(information adviser)는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에 진정신청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 관련사항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구를 소개한다. 정보조언자 단계를 통해 신청인의 분쟁이 해결되면 해당사건은 종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사건은 당직조정관(duty mediator)으로 이첩된다. 당직조정관 역시 비공식적으로 개입하거나, 전문가 상담의 기회제공, 관련자료의 수집, 태도변화를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한다. 당직조정관 단계에서 신청인의 분쟁이 해결되면 해당사건은 종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평가(assessment) 과정을 거쳐 해당사건은 조정담당관(mediator)으로 이첩된다. 조정담당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관련당사자들에

24) "The amended Act removes the Complaints Division and Commission's related investigation functions. The Act now has a flexible, speedy approach to try to settle complaints, including mediation.", <http://www.hrc.co.nz/index.php?p=308>.

통보하고, 서신·전화·대면접촉 등을 통한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settlement)를 도출한다. 조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합의로는 1) 차별행위에 대한 참회나 사과, 2) 앞으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 3) 인권교육프로그램 수강, 4) 진정신청인이 겪은 심리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5) 합의준수를 담보하는 보증인의 제시 등이 있다. 인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조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진정신청인이나 피진정인이 조정과정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비밀이 보장된다(제85조). 수정인권법 제82조는 또한 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역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소송국은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인권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인권소송국의 국장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수상이 임명한다. 인권소송국의 역할은 인권심판소의 제소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진정신청자는 인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권심판소 제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절차를 거쳤더라도 인권위원회의 중재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에 동의는 했지만 피진정인이 합의이행에 태만한 경우 등에 인권심판소 제소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 자체도 분쟁조정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정부나 공무원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인권심판소에 제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 인권소송국은 1) 해당 진정의 법률위배정도, 2) 관계된 사람들의 규모, 3) 진정신청자의 피해수준, 4) 인권심판소에서 예견되는 판결내용, 5) 유사사례의 판결내용과 신청사건과의 합치도, 6) 공공이익의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인권심판소에 제소여부를 판단한다.

인권심판소는 인권위원회로부터 독립되어 법원에 소속한 기구이다. 인권심판소는 일반법원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와 같이 진정당사자들의 심문 결과를 토대로 판결한다. 진정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인권심판소는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거나 기타 다른 구제조치를 명령한다. 인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이 비공식적이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반하여 인권심판소의 절차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인권심판소는 인권소송국에서 제소한 진정사건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 중재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인권소송국에서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나 인권소송국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소송비용은 진정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법원과 달리 인권심판소는 1) 피고가 수정인권법을 위반했다는 선언, 2) 피고측에 대한 금지명령, 3) 진정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작위명령, 4) 특정계약이 수정인권법을 위반했다는 선언, 5) 불공정계약법(The Illegal Contracts Act 1970)에 준한 구제

조치, 6) 기타 심판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구제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다.

3.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권관련법

가. 오스트레일리아 인권법의 연혁과 내용

오스트레일리아는 1986년 ‘인권 및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이하 ‘인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²⁵⁾ 인권법은 제1부 총칙, 제2부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 제2 B부 불법적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제2 C부 차별적인 재결과 결정의 다른 기구에의 회부, 제3부 잡칙,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원회에 관해 인권법 제10A조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보편성 및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의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인권법과 다른 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법에 의해 보장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능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해결을 꾀할 수 있다(인권법 제13조).

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행하고 심리를 수행하며 또한 어떠한 검토 또는 심리과정에서 정보가 입수된 때에도 증거 규칙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진정인의 고용의 안전, 사생활 또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정보나 문서의 내용은 비밀을 지켜야 하며, 또한 인권위원회가 특정하는 방법 내지는 특정하는 사람에게만 공표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14조).

25) 오스트레일리아 인권법의 정식명칭은 “An Act to establish 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to make provision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nd in relation to equal opportunity in employment, and for related purposes”이며, 약칭으로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라 하고 있다; 인권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www.hreoc.gov.au 참조.

나. 인권침해진정의 처리

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진정 사항에 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진정 내용이 1998년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에 따른 사생활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사생활보호위원회에 그 진정을 회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정은 사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사생활보호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으로 간주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진정서 등의 작성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위원장과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며(인권법 제36조), 인권위원의 임기는 7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제37조).

인권법 제21조는 정보 및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진정 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해당인(또는 해당기관)에 필요한 정보나 문서를 제공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심문을 할 수 있으며(제22조), 허위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고의로 제공한 경우나 인권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방해, 간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26조).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관련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침해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행위의 반복 또는 그러한 관행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해당인(또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제28조). 권고의 내용으로는 예컨대 인권침해적 행위 또는 관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의 보상금 지급, 그러한 행위 또는 관행의 결과 어떠한 사람이 입은 손실·피해구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조치의 실시 권고를 들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관련인에게 통지한 후, 진정관련자의 불법적 차별에 대하여 연방법원 또는 연방치안판사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가 불법적 차별을 행하였음을 선언하고 그러한 불법적 차별에 대한 재발 방지의 명령, 손실 또는 피해의 구제 명령 등을 선고할 수 있다(제46PO조).

끝으로 인권위원회는 특정한 분야에서의 차별적 행위로 인해 제기된 진정사건의 해결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그 진정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제2 C부의 관련 규정 참조). 이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노사법원(The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Tribunal), 보수법원(The Remuneration Tribunal) 등이 있다.

4. 태국 국가인권위원회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연혁과 인권위원회의 내용

태국은 1999년 10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법(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B.E.2542)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태국의 경우에 인권위원회가 보호대상으로 하는 범위는 대단히 넓다. 보호대상으로 하는 인권에 관하여 “타일랜드 헌법 또는 타일랜드 법률 또는 타일랜드가 당사국인 조약에 의하여 보장 또는 보호되는 인간의 존엄, 권리, 자유 및 평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국왕이 상원의장의 자문을 얻어 임명한다(제5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재임할 수 없다(제10조). 인권위원회 사무소는 국회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의 지위를 가지며(제17조), 위원회의 일반업무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인권위원회의 행정업무, 인권침해 진정의 인권위원회에의 회부, 인권위원회가 위임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인권분야에서의 연구와 교육과 지식 전달의 촉진, 인권 신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인권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제18조).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국내 및 국제적 수준의 인권원칙의 존중 및 준수를 촉진한다. ② 인권을 침해하거나 태국이 당사국인 인권에 관한 각종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조사하고 보고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 또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시한다. 이렇게 제시된 구제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추후의 절차를 위해 국회에 보고한다. ③ 국회 또는 내각에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하여 정책과 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안한다. ④ 인권에 대한 교육, 연구 및 지식보급을 촉진한다. ⑤ 인권분야에서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다른 단체간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한다.

⑥ 국내의 인권분야의 상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및 내각에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⑦ 위원회에 대한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그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 ⑧ 태국이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관한 어떠한 조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각과 의회에 제시한다. ⑨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임명·구성한다. ⑩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그 인권침해사건의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① 정부기관,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업에 공적 기타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과 의견에 대한 진술서 제출, 물건, 문서 기타 관련증거 인계 또는 그러한 진술을 할 대표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련자,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특정한 일자, 시간 및 장소에서의 진술 또는 물건, 문서 기타 관련 증거의 인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그 필요성으로 인해 지체없이 수행되어야 할 진상 조사 또는 관련정보수집을 위하여 주거지 기타의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영장의 발부를 관할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조사의 개시 또는 정보의 수집에 앞서 위원 또는 위임받은 직원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가능한 한 그 장소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 또는 관계인의 입회 하에 조사와 정보수집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유자 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사 및 증거수집은 증인으로 소환한 2이상의 사람의 입회 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 관리인 및 관련인은 위원 또는 위임받은 직원의 직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지명된 증인 또는 직원에 대한 생활비 및 여비의 지급의 규칙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나. 진정처리절차

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소송대상이 아닌 또는 법원이 이미 종국적인 명령 또는 판결을 내린 인권을 침해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심사하고 구제조치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종국적 명령이나 판결이 있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의 독립의 논란이 지적되기도 한다.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서면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진정을 접수하면 인권위원회 사무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으로부터 진

정이 민간 인권단체에 제기된 경우, 그리고 그 단체가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단체는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인권침해사건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거나 또는 제24조에 따라 민간단체로부터 진정이 접수된 경우, 인권위원회는 그 인권침해자로 지목된 사람(또는 기관 내지 위원회)에게 인권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실에 대해 답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이 자신의 권한 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정인 또는 진정을 제기한 민간단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인권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해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련당사자들 또는 기관들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화해에 합의하고 위원회가 그러한 합의가 인권보호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당사자들간의 서면합의를 작성함으로써 그 문제를 종결짓는다. 추후에 당사자 일방에 의한 그러한 합의의 불이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당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심사를 속행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되어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때에는 인권침해의 상황과 그 이유, 인권침해자 또는 기관의 법적 의무와 그 이행방법을 명확히 적시한 인권침해 구제조치와 이행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제조치를 적시함에 있어서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대상과 진정처리절차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간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차별행위를 진정대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며, 태국은 헌법과 법률 및 국제조약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 권리, 자유, 평등의 침해 그리고 법원의 소송대상이 아닌 또는 법원이 이미 종국적인 명령 또는 판결을 내린 인권을 침해하는 작위·부작위까지도 진정대상으로 규정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진정대상이 광범위하다.

진정처리절차도 대부분의 인권위원회가 접수단계, 조사단계, 심의단계, 조정 및 의결

단계 등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지만 인권심판소의 설치여부, 조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의 유무 등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최근 뉴질랜드가 개편한 진정처리절차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는 수정인권법의 제정으로 인권위원회 업무에서 진정담당 부서와 조사기능을 폐지하고 대신에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진정처리를 위해 조사활동은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공식적 진정조사는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폐와 허위진술을 유발할 수 있고 피진정인의 은폐와 부인을 반증하려면 또다시 더 많은 조사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사활동은 진상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진정처리기간 역시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질랜드의 최근 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데 유용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대상은 크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정대상은 태국과 유사한 범위이며,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해서는 진정대상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진정대상으로 특정하여 시설수용자의 인권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진정처리절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1) 진정 접수와 분류, 사건예비조사, 사건조사(서면조사, 출석조사, 실지조사), 조사종결, 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합의권고, 조정, 전원위원회 의결 등의 체계적 절차를 운영하고, 2)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3) 합의나 조정과 같은 원상회복 이념에 기반한 처리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면전진정의 방법으로도 진정을 접수하고, 진정 접수 후에 인권침해행위가 계속될 때는 진정에 대한 결정전이라도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등은 외국에 비해 개선된 형태의 진정처리절차이다.

제3장 진정권 제도의 운영실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것은 2001년 5월 24일이며, 이에 기초하여 2001년 11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과 함께 다음 날인 2001년 11월 26일부터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침해행위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본 장에서는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정권제도의 운영실태를 진정신청의 현황, 진정신청처리의 현황, 진정사건의 처리결과 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절 진정신청의 현황

<표 3-1>은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관련 진정사건을 시설별로 분류한 것이다. 먼저,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2,833건으로 월평균 200건 가량씩 접수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인권침해 진정사례들을 시설별로 분류했을 때에 진정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은 구금시설이다. 구금시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1,113건으로 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39.3%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다른 시설이나 기관과 관련한 진정건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예를 들어 경찰과 관련한 진정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에 839건으로 전체의 29.6%에 불과하며, 검찰과 관련한 진정은 300건(10.6%), 사법기관에 관한 진정은 70건(2.5%),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진정은 66건(2.4%) 등이다. 이를 통하여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에서 구금시설과 관련한 진정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며, 다른 국가시설이나 기관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인권침해 진정접수현황

국 가 시 설 명	진 정 접 수 건 수	비 율
검 찰	300	10.6
경 찰	839	29.6
국 정 원	33	1.2
특별사법경찰관리	31	1.1
지 자 체	66	2.4
사 법 기 관	70	2.5
입 법 기 관	1	0.0
기타국가기관	236	8.3
구 금 시 설	1,113	39.3
보 호 시 설	34	1.2
군 검 찰	4	0.1
군 헌 병	41	1.4
기 무 사	6	0.2
군구금시설	3	0.1
기 타 군 사	56	2.0
계	2,833	100.0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3, p 93.

구금·보호시설에 한정하여 면전진정 신청추세를 보면 최근에 들어 면전진정 신청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2>는 면전진정 신청사건들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다. 진정권 제도의 초기 단계인 2001년 12월, 2002년 1월, 2월의 경우에 월별 진정신청건수는 13건, 17건, 21건 등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2년 3월에 들면서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53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6월과 10월을 제외하고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2년 7월에 들면서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124건으로 100건을 상회하고, 8월에는 151건, 9월에는 166건, 11월에는 179건, 12월에는 183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2> 월별 면전진정 신청현황

월	'01 12.	'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신청	13	17	21	53	67	77	65	124	151	166	127	179	183	1,243
증감		4	4	32	14	10	-12	59	27	15	-39	52	4	
비율		30.8	23.5	152.4	26.4	14.9	-15.6	90.8	21.8	9.9	23.5	40.9	2.2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3, p 104.

다음으로 면전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의 비율을 구금시설별로 살펴보았다.

<표 3-3>에서 알 수 있듯이,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구금시설의 전체적인 면전진정 신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수용자 100명당 면전진정 신청건수를 계산했을 때에 면전진정 신청률은 2.1%로 100명당 평균 2.1건이다.

면전진정 신청률은 구금시설별로도 많은 편차가 있다. 면전진정 신청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청송 제2교도소로 수용자 100명당 약 21.2건이며, 가장 낮은 시설은 제주교도소이다. 제주교도소의 경우는 2002년 12월말까지 전체 수용자 650명 중에서 1명만이 면전진정 신청하여 신청률이 0.2건에 불과하다. 수용자 100명당 3건 이상의 면전진정 신청이 있었던 시설은 청송제2교도소를 포함하여, 청송교도소, 청송제2보호감호소, 공주교도소, 광주교도소 등이다. 이에 반하여 면전진정 신청률이 100명당 0.5건 이하의 시설은 제주교도소를 비롯하여 의정부교도소, 여주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성동구치소, 수원구치소, 강릉교도소, 경주교도소, 울산구치소, 천안구치지소, 천안개방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평택구치지소, 군산교도소, 경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공주치료감호소, 청주소년원 등이다.

<표 3-3> 구금시설별 면전진정 신청률

구 분 시 설 명	현 원 (명)	신 청 (건)	신 청 륜 (%)
합 계	60,903	1,234	2.1
안양교도소	2,916	77	2.6
춘천교도소	1,309	19	1.5
원주교도소	1,061	40	3.8
의정부교도소	1,522	5	0.3
여주교도소	981	2	0.2
영등포구치소	2,253		
영등포교도소	1,639	5	0.3
서울구치소	3,777	77	2.0
성동구치소	1,957	7	0.4
인천구치소	2,420	27	1.1
수원구치소	2,339	5	0.2
강릉교도소	485	2	0.4
청송교도소	1,760	55	3.1
청송제2교도소	646	137	21.2
청송제1보호감호소	896	17	1.9
청송제2보호감호소	732	45	6.1
대구교도소	3,152	91	2.9
부산교도소	1,821	51	2.8
진주교도소	1,255	74	5.9
안동교도소	1,043	19	1.8
경주교도소	724	3	0.4
마산교도소	2,046	11	0.5
대구구치소	1,254	2	0.2
울산구치소	604	1	0.2
부산구치소	2,625	53	2.0
대전교도소	3,959	75	1.9
청주교도소	1,542	35	2.3
공주교도소	926	42	4.5
천안구치지소	313	1	0.3
천안소년교도소	730		
논산구치지소	278	2	0.7
천안개방교도소	320	1	0.3
홍성교도소	599	14	2.3
청주여자교도소	439	1	0.2

구 분 시 설 명	현 원 (명)	신 청 (건)	신 청 륜 (%)
평택구치지소	237	1	0.4
광주교도소	2,918	141	4.8
서산구치지소	199		
전주교도소	1,835	56	3.1
목포교도소	1,614	28	1.7
군산교도소	1,186	2	0.2
장흥교도소	418	5	1.2
순천교도소	768	4	0.5
제주교도소	650	1	0.2
김천소년교도소	755	0	0.0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3, p 105-106.

※ 현원은 2002년 국정감사자료, 신청건수는 2001. 11. 26~2002. 12. 31 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유치장과 보호시설 수용자의 면전진정 9건을 제외한 것임.

제2절 진정처리결과의 현황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종류로는 고발, 수사의뢰, 권고, 합의권고, 기각, 각하, 이송, 긴급구제 등이 있다.

<표 3-4>는 구금시설별로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처리유형별 현황에 대하여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2002년 9월 현재에 대부분의 진정이 아직 조사중으로 진정의 처리유형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전체 805건의 진정 중에서 84.6%에 해당하는 681건이 그때까지 조사중이었으며, 조사가 끝나고 위원회의 사건처리가 있었던 진정은 124건으로 15.4%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124건의 사건종결된 진정 중에서 각하 처리된 것은 117건으로 94.4%를 차지한다. 기각으로 사건종결된 진정은 5건으로 4.0%가량이다. 이로써 진정의 대부분(98.4%)은 진정내용이 위원회에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사유 등으로 각하나 기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구제조치나 합의를 알선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권고 처분은 2건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권위 사무처가 2002년 4월에야 구성되었고 초기 진정접수 단계에서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이 인권위 조사가능 기간인 1년 이상을 경과한 사건들이 다수 접수되었기에 <표 3-4>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실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의하면 기각과 각하의 비율은 95.9%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4> 구급시설별 진정 처리현황

구 분	진정접수	조사진행	사 건 종 결			
			소계	권고	기각	각하
계	805 (100.0)	681 (84.6)	124 (15.4)	2 (0.3)	5 (0.6)	117 (14.5)
강릉교도소	4	4 (100.0)				
안양교도소	25	22 (88.0)	3 (12.0)			3 (12.0)
여주교도소	2	1 (50.0)	1 (50.0)			1 (50.0)
영등포교도소	9	8 (88.9)	1 (11.1)			1 (11.1)
원주교도소	28	23 (82.1)	5 (17.9)			5 (17.9)
의정부교도소	7	3 (42.9)	4 (57.1)		1 (14.2)	3 (42.9)
춘천교도소	16	14 (87.5)	2 (12.5)			2 (12.5)
서울구치소	17	15 (88.2)	2 (11.8)			2 (11.8)
성동구치소	4	4 (100.0)				
수원구치소	4	4 (100.0)				
영등포구치소	6	6 (100.0)				
인천구치소	27	17 (63.0)	10 (37.0)		1 (3.7)	9 (33.3)
경주교도소	8	8 (100.0)				
김천소년교도소	1	1 (100.0)				
대구교도소	61	58 (95.1)	3 (4.9)			3 (4.9)
마산교도소	11	10 (90.9)	1 (9.1)			1 (9.1)
부산교도소	43	39 (90.7)	4 (9.3)		1 (2.3)	3 (7.0)
안동교도소	12	8 (66.7)	4 (33.3)			4 (33.3)
진주교도소	30	27 (90.0)	3 (10.0)			3 (10.0)
청송교도소	42	28 (66.7)	14 (33.3)	1 (2.4)		13 (30.9)
청송제2교도소	69	62 (89.9)	7 (10.1)			7 (10.1)
대구구치소	3	2 (66.7)	1 (33.3)			1 (33.3)
부산구치소	20	16 (80.0)	4 (20.0)			4 (20.0)
울산구치소	2	1 (50.0)	1 (50.0)	1 (50.0)		

구 분	진정접수	조사진행	사 건 종 결			
			소계	권고	기각	각하
청송제1보호감호소	35	24 (68.6)	11 (31.4)			11 (31.4)
청송제2보호감호소	26	24 (92.3)	2 (7.7)			2 (7.7)
공주교도소	13	12 (92.3)	1 (7.7)			1 (7.7)
대전교도소	50	43 (86.0)	7 (14.0)			7 (14.0)
청주교도소	23	22 (95.7)	1 (4.3)			1 (4.3)
홍성교도소	15	13 (86.7)	2 (13.3)			2 (13.3)
광주교도소	65	54 (83.1)	11 (16.9)			11 (16.9)
전주교도소	25	21 (84.0)	4 (16.0)			4 (16.0)
목포교도소	42	38 (90.5)	4 (9.5)			4 (9.5)
군산교도소	16	10 (62.5)	6 (37.5)			6 (37.5)
순천교도소	4	3 (75.0)	1 (25.0)			1 (25.0)
제주교도소	4	3 (75.0)	1 (25.0)			1 (25.0)
장흥교도소	3	2 (66.7)	1 (33.3)			1 (33.3)
기타	33	31 (93.9)	2 (6.1)		2 (6.1)	

※ 구금시설별 진정사건처리는 2002년 9월까지의 결과임.

제4장 연구방법론

구금시설 내의 진정권 보장현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활용한 연구방법은 크게 수용자 설문조사와 구금시설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이다. 본 장에서는 수용자 설문조사의 방법, 구금시설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의 방법, 조사대상 구금시설의 진정권제도 운영실태, 조사대상 수용자의 일반적 성격 등을 살펴본다.

제1절 수용자 설문조사

1. 조사표의 구성

조사표의 초안은 기존문헌과 교정시설관련 연구의 조사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초안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조사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조사표는 크게 9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1>과 같다. (참조: 부록, 조사표)

<표 4-1> 조사표의 구성

조사표의 내용	문항 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8
진정권 제도에 대한 인지도	11
진정권 행사에 대한 태도	8
시설생활 중에 겪을 수 있는 고충사항	58
진정권행사의 경험	8
진정권행사의 장애·방해 요인	11
진정권행사에 대한 구금시설의 보장노력	16
진정권행사 이후의 불이익	6
개방형 질문	2
총 문항수	138

2. 표본추출

본 연구는 2단계 과정을 거쳐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본추출의 제1단계는 조사대상 구금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이었다. 조사대상 구금시설은 시설유형(구치시설/초범/2범이상구금시설), 수용자신분(미결, 기결, 환자), 수용자 성별(남자, 여자), 설치지역(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등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의 제2단계는 제1단계에서 선정된 구금시설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다. 구금시설별 조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임의표집을 위하여 수용자 설문조사 이전에 필요인원을 해당 구금시설에 사전통보하고 조사 당일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 4-2>은 제1단계와 제2단계 표본추출과정을 거쳐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구금시설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분포

단위 : 명

시 설 명	조사대상자	분석대상자
공주교도소	68	66
광주교도소	60	60
군산교도소	62	58
대구교도소	55	49
대전교도소	63	61
목포교도소	60	56
부산교도소	60	59
서울구치소	60	60
수원구치소	59	58
영등포교도소	60	60
영등포구치소	60	58
진주교도소	60	56
천안개방교도소	57	56
천안소년교도소	59	58
청송제1감호소	60	57
청송교도소	58	48
청주여자교도소	62	61
춘천교도소	61	60
합 계	1,084	1,041

총 조사대상자 1,084명 중에서 무응답 항목이 많아 유의미한 분석이 불가능한 43명을 제외하고 실제 자료분석은 1,0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조사표는 집단면접형태로 배포하고 조사대상자가 자기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수용자 중에 한글해독이 어렵거나 신체불편으로 인하여 자기기입이 곤란한 경우는 조사연구진이 조사표를 읽고 응답을 기재하는 개별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1월과 2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2절 구급시설 공무원 심층면접조사

여기에서는 구급시설 공무원 심층면접조사를 표본선정의 방법, 심층면접조사표의 구성, 자료수집방법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1. 표본선정

심층면접조사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18개 구급시설 중 8개 시설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8개 시설은 공주교도소, 광주교도소, 군산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영등포구치소, 영등포교도소, 진주교도소이며, 각 시설에서 2-4명 정도의 고충처리반 공무원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심층면접은 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중에서 교감이 5명, 교위가 16명, 교사가 3명이었다.

<표 4-3> 심층면접대상자 분포

단위 : 명

직급	심층면접 대상자 수	소 속
교감	5	보안과
교위	16	고충처리반(상담·송무·인권·청원), 교무과, 보안과
교사	3	고충처리반, 보안과
계	24	

2. 심층면접조사표 구성

심층면접의 조사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 1) 교정공무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 연령, 근무경력, 직급 등

- 2) 수용자의 인권신장에 필요한 사항
 - 제도적 장치의 측면
 - 인력 및 시설의 측면
 - 교정문화의 측면

- 3) 수용자의 진정행위에 대한 견해
 - 권리의 행사
 - 교정공무원의 재량권 침해
 - 부적응자의 불만 표출

- 4) 수용자들이 진정을 하는 이유

- 5) 수용자의 진정행위로 인한 어려움
 - 시설의 질서유지 측면
 - 다른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
 - 교정공무원의 업무수행 측면

- 6)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자료수집방법

심층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지침표를 중심으로 면접대상자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구금시설내의 별도 공간에서 평균 1시간-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접 내용은 현장에서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녹음되었으며, 심층면접은 2003년 2월중에 실시되었다.

제3절 조사대상 구금시설의 진정권제도 운영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18개 구금시설의 진정권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입소시 진정권 교육방법, 배정시간, 교육자와 입소후 진정권 교육방법, 배정시간, 교육자 및 시설별 진정함 설치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은 시설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당직교감, 관구교감 등의 일반 간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고충처리반이나 인권담당공무원 등 진정 담당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예를 들면, 고충처리반이나 인권담당공무원에 의해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 3개 시설이었으며 나머지 시설들은 당직교감이나 관구교감이 진정권관련 교육을 담당하였다.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이 실시된 시간은 5분에서 1시간까지로 그 편차가 컸으나, 주로 20분 이내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이였다. 예를 들면, 진주교도소와 서울구치소가 5분 정도로 교육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천안개방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청송 제1보호감호소가 1시간 가량으로 가장 길었다. 교육방법은 주로 신입자

교육시간에 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게시물, 구두고지, 방송, 비디오, 책자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시설별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방법, 배정시간, 교육자

구급시설명	교육담당자	소요시간	교육방법
수원구치소	각부 신입담당교위	약 20~30분	국가인권위 진정안내서의 낭독 및 설명 고지와 신입자교육실 게시판에 안내문 비치
춘천교도소	당직 교감		
천안개방교도소	인권담당	1시간	신입자 입소시 매회 전체 집합교육
진주교도소	당직교감	5분	신입자 고지사항 교육시 게시교육(신입 자 고지사항)
		5분	신입자 고지사항 교육시 게시교육(안내문)
		3분	비디오 교육
	관구교감	5분	생활지도 교육시간을 이용
공주교도소	당직교감	약 15~20분	진정절차, 진정방법 등을 교육하고 「수 용자 인권위원회 진정교육일지」에 교육 받은 수용자들의 무인을 받음
서울구치소	고충처리반원(생활지도계 소속) 교위	약 5분	신입프로그램 영상물을 이용 집합교육
목포교도소	당직교감	약 14분	신입자 안내 교육 비디오 제작물, 신입자 거실에 비치한 신입자 안내교육 책자 이 용
천안소년교도소	당직간부	30분	신입자 교육 시간에 고지
대전교도소	당직교감		신입자 교육 시간에 고지
청주여자교도소	관구교감	약 20분	비디오 교육 및 고지
영등포교도소	당직교감	1시간	신입자 교육 시간에 고지 및 안내서 비 치
청송제1보호감호소	당직교감	1시간이내	구두고지 및 책자를 이용
청송교도소	당직계장		개별적 고지
대구교도소	당직교감, 관구교감, 생활지도교위, 담당근무자, 입소담당근무자 등	약 20분	수용생활 안내비디오, 게시물, 구두고지
군산교도소	당직교감	10~15분	부착물에 의한 수용생활 안내교육
부산교도소	해당 관구교감	20분	신입교육과 더불어 교육, 교육용 자체제 작 유인물 배부, 교육 및 유인물 배부하 였다는 확인을 받음
광주교도소	당직계장	약 15~20분	VTR교육
영등포구치소	당직교감, 관구교감, 고충처리반 생활지도 담당, 담당근무자, 입소담당근무자	약 30분	구두, 비디오, 게시물, 수용생활안내책자

2. 입소후 진정권제도 교육

입소후 진정권제도 교육은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에 비하면 고충처리반 및 인권담당 직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관교감, 사동근무자 등 다양한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천안개방교도소, 서울구치소, 영등포구치소는 입소시와 마찬가지로 인권담당공무원 및 고충처리반 담당공무원에 의해 입소후 진정권제도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진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4개 시설은 입소시에는 고충처리반 담당공무원에 의한 진정권제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입소후에는 고충처리반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진정권제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입소후 진정권제도 교육에 배정된 시간은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 배정시간과 마찬가지로 5분에서 1시간까지로 편차가 크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입소시 배정시간에 준용하여 입소후 교육시간이 배정되었다(<표 4-5>와 <표4-6> 참조). 청주여자교도소는 입소시 교육 배정시간은 약 20분인데 비해 입소후 교육 배정시간은 약 1시간으로 40분 가량 증가하였으며, 군산교도소도 약 10-15분에서 약 20-30분으로 10분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에 영등포구치소는 입소시 교육 배정시간은 약 30분인데 비해 입소후 교육 배정시간은 약 20분으로 오히려 10분 가량 감소하였다. 따라서 입소후 진정권 교육시간도 대부분 20분 이내로 배정되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므로 입소시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입소후 교육방법은 입소시와 마찬가지로 게시물, 안내책자²⁶⁾, 구두고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목포교도소의 경우에 입소후 교육방법에서 “인권위에서 배부한 홍보책자”를 각 사동 및 작업장에 비치하여 진정권 제도를 교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홍보책자를 배부한 적이 없으므로, 법무부에서 발간한 수용생활안내책자와 혼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시설별 입소후 진정권제도 교육방법, 배정시간, 교육자

구급시설명	교육담당자	소요시간	교육방법
수원구치소	신입수용사동 담당교위	약 20분	국가인권위 진정안내서의 낭독 및 설명
춘천교도소			신입자교육 시 진정에 관한 내용과 방법 등을 교육, 각 거실에 안내책자를 1부씩 비치하여 수시로열람
천안개방교도소	인권담당	1시간	신입자 입소시 매회 전체 집합교육
진주교도소	방송담당	5분	방송교육
	고충처리반		안내문 게시
	사동근무자		안내책자 거실당 1부씩 비치
공주교도소	관구교감	약 15~20분	수용생활 필요사항 교육하면서 진정제도에 대한 재교육, 안내책자 비치, 관계직원이 상담을 통하여 설명
서울구치소	고충처리반원(국가인권위원회 업무 담당자)교위	1주간 약2분	별도의 교육없음, 안내책자 및 포스터 게시, 안내방송 실시
목포교도소	보안 담당근무자 및 관구교감	수시	각 사동 및 작업장에 인권위 진정안내서 비치, 각 거실에 수용생활 안내책자 비치, 각 사동 및 작업장에 인권위에서 배부한 홍보책자 비치
천안소년교도소	보안과장, 생활지도반교육, 교육교관	정신교육시간 내 포함	수용자정신교육 시간에 실시
대전교도소	당직교감		진정관련 자세한 안내 및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충처리반원과 상담할 수 있음을 고지, 전 거실에 안내문 게시
청주여자교도소	고충처리반 담당직원	약 1시간	수용자정신교육 시간에 실시
영등포교도소	당직교감, 인권담당, 관구교감	매월 1회 1시간	진정 안내서 및 포스터 비치, 강의
청송제1보호감호소	당직교감	1시간이내	구두고지 및 책자 이용하여 교육실시
청송교도소			안내서를 각 사동에 비치
대구교도소	관구교감, 생활지도교위, 담당근무자, 고충처리반원 등	수시 약 20분	게시물,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및 비치, 구두 등
군산교도소	사동관구교감	20~30분	차트에 의한 수용생활 안내 및 법무부 발간 수용생활안내 책자
부산교도소	고충처리담당, 새마을 정신교육 교관	매 새마을 정신교육시 1시간	새마을 정신교육과정에 안내교육(교육시 차트 제작사용)
광주교도소		약 15분~20분	주 2회 교무과 교화방송시간시 진정관련 사항 고지 및 진정 안내서 낭독, VTR 교육, 각 사동 복도 진정안내서 게시, 홍보 포스터 부착
영등포구치소	관구교감, 고충처리반 생활지도담당직원, 담당근무자	약 20분	구두고지, 포스터등 홍보물 게시, 인권위 진정에 관한 안내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수용생활 안내책자를 각 거실에 비치

<표 4-6> 시설별 입소시와 입소후의 진정관련 교육시간

구급시설명	입소시 교육시간	입소후 교육기간
수원구치소	약 20~30분	약 20분
춘천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1시간	1시간
진주교도소	18분	5분
공주교도소	약 15~20분	약 15~20분
서울구치소	약 5분	1주간 약 2분
목포교도소	약 14분	수시
천안소년교도소	30분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약20분	약 1시간
영등포교도소	1시간	매월 1회 1시간
청송제1보호감호소	1시간이내	1시간 이내
청송교도소		
대구교도소	약20분	수시 약 20분
군산교도소	10~15분	20~30분
부산교도소	20분	매 새마을 정신교육시 1시간
광주교도소	약15~20분	약 15~20분
영등포구치소	약 30분	약 20분

3. 진정함 설치현황

시설별 진정함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별로 최소 3개에서 최대10개 평균 5개의 진정함을 설치하고 있으며, 진정서의 수거는 청주여자교도소만이 1일 2회 실시하고 거의 모든 시설에서 1일 1회 정도 실시하며, 주로 고충처리반 직원이 진정서 수거를 담당하였다.

<표 4-7> 시설별 진정함 설치현황

구급시설명	진정함 총수	수거횟수	수 거 방 법
수원구치소	10	1일 1회	고충처리반장과 인권담당자가 동행하여 확인함
춘천교도소	4	1일 1회	인권담당 근무자가 진정함을 개봉하여 진정 여부를 확인하고 진정함점검부에 기록을 유지
천안개방교도소	5	1일 1회	직원이 매일 확인 및 회수
진주교도소	6	1일 1회 (공휴일제외)	고충처리반원이 순회하면서 진정함 확인
공주교도소	4	1일 1회 이상	고충처리반 직원이 진정서 수거
서울구치소	3	1일 1회	고충처리반원이 진정서 수거
목포교도소	5	1일 1회	고충처리반 담당자가 진정서 수거, 보안과 담당근무자를 통하여 고충처리반에 제출
천안소년교도소	3	1일 1회	고충처리반 인권담당자가 진정함 수거 회수
대전교도소	7	1일 1회	우편발송시간 이전 개함 및 회수
청주여자교도소		1일 2회	고충처리반 담당자가 직접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에 가서 수거
영등포교도소	5	1일 1회	인권담당자가 매일 1회 진정함 수거
청송제1보호감호소	3	1일 1회 이상	담당직원이 확인하여 수거
청송교도소	5	1일 1회	담당근무자가 진정서 수거
대구교도소	5	1일 1회	고충처리반 직원이 진정서 수거
군산교도소	5	1일 1회	인권담당자 직접제출 및 진정함 투입
부산교도소	3	1일 1회	고충처리반 직원이 진정서 수거
광주교도소	7	1일 1회	고충처리반 직원이 진정서 수거
영등포구치소	7	1일 1회	고충처리반 직원이 진정서 수거

제4절 조사대상 수용자의 일반적 성격

여기에서는 조사대상 수용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수용자의 성별·연령별·신분별·학력별 특성 및 전과, 징벌경험, 적응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사대상 수용자의 성별 특성

조사대상 수용자의 총인원은 1,041명이며 이중 남성이 913명으로 전체의 87.7%이며, 여성은 128명으로 12.3%이다. 범죄백서(2002)에 의하면 전체 수용인원 중에서 여성수용자의 비율은 5.0%이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응답자 비율이 범죄백서에 비해 높은 이유는 여성전용수용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가 조사대상시설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²⁷⁾

<표 4-8> 조사대상 수용자의 성별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남	913	87.7
여	128	12.3
계	1,041	100.0

2. 조사대상 수용자의 연령별 특성

조사대상 수용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23명(2.2%),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248명(23.8%),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318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275명(26.4%), 50세 이상은 177명(17.0%)이다.

2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2, pp. 257-258

<표 4-9> 조사대상 수용자의 연령별 특성

구 분	빈 도	퍼 센 트
20세 미만	23	2.2
20세 이상 30세 미만	248	23.8
30세 이상 40세 미만	318	30.6
40세 이상 50세 미만	275	26.4
50세 이상	177	17.0
계	1,041	100.0

3. 조사대상 수용자의 신분별 특성

조사대상 수용자의 신분별 특성을 살펴보면, 형의 선고를 받은 기결수는 797명으로 전체의 76.6%, 형의 확정을 받지 않은 미결수는 244명으로 23.4%를 차지하였다. 즉, 기결수가 미결수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조사대상 수용자의 신분별 특성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미 결	244	23.4
기 결	797	76.6
계	1,041	100.0

4. 조사대상 수용자의 학력별 특성

수용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무학 18명(1.7%), 초등학교 109명(10.6%), 중학교 231명(22.3%), 고등학교 494명(47.7%), 전문대 68명(6.6%), 대학교 115명(11.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677명으로써 전체의 65.4%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수용자는 전체의 34.5%를 차지하였

다.

<표 4-11> 조사대상 수용자의 학력별 특성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무 학	18	1.7
초 등 학 교	109	10.6
중 학 교	231	22.3
고 등 학 교	494	47.7
진 문 대	68	6.6
대 학 교	115	11.1
계	1,035	100.0

※ 학력에는 졸업뿐만 아니라 재학이나 중퇴를 포함하였다.

5. 조사대상 수용자의 전과경력

전체 조사대상 수용자 중에서 초범인 경우는 532명(52.0%)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과경험 1-2회 286명(27.9%), 3-4회 130명(12.7%), 5회 이상 76명(7.4%)으로 전체 조사대상 수용자 중에서 재범이상은 492명, 48%로 나타났다. 재범자 492명 중 전과가 3회 이상인 재소자는 206명으로 재범자의 과반수 가량인 41.9%가 3회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조사대상 수용자의 전과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없 다	532	52.0
1 ~ 2회	286	27.9
3 ~ 4회	130	12.7
5회 이상	76	7.4
계	1,024	100.0

6. 조사대상 수용자의 징벌경험

구금시설 내부에서 징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자 1,041명에서 무응답자 163명을 제외한 878명 중 63명(7.2%)이었으며, 징벌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815명(92.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적 소수의 수용자만이 징벌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조사대상 수용자의 징벌경험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없 음	815	92.8
있 음	63	7.2
계	878	100.0

7. 조사대상 수용자의 적응정도

조사대상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주 고통스럽다가 204명(22.0%), 그저 그렇다가 628명(67.8%),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94명(10.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22.0%가 구금시설의 수용생활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14> 조사대상 수용자의 적응정도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아주 고통스럽다	204	22.0
그저 그렇다	628	67.8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94	10.2
계	926	100.0

8. 시설유형별 조사대상자 분포

조사대상 구금시설은 “구금시설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2001.7)에 근거하여 서울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수원구치소 등은 미결수용시설로 분류하였다. 영등포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군산교도소 등은 초범수용시설로, 그리고 춘천교도소, 대구교도소, 청송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송제1보호감호소, 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공주교도소, 목포교도소 등은 2범이상 수용시설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결과 조사대상자 중에서 미결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176명 16.9%이었고, 초범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293명 28.1%, 그리고 2범이상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72명 55.0%이었다.

조사대상 구금시설은 수용규모에 따라 1,000명 미만, 1,000명-2,000명, 2,500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결과 1,000명 미만의 시설은 5개소,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

인 시설은 9개소, 2,500명 이상인 시설은 4개소이었다. 조사대상 수용자 중에서 1,000명 미만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298명 28.6%이었고,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13명 49.3%, 2,500명 이상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230명 22.1%이었다.

<표 4-15> 시설유형별 조사대상자 분포

구 분		빈 도	인 원	퍼 셣 트
시설분류	미결		176	16.9
	초범		293	28.1
	2범이상		572	55.0
시설수용규모	1,000명 미만		298	28.6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		513	49.3
	2,500명 이상		230	22.1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진정권제도 인지도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의 제6조에서는 시설수용자들이 인권침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수용자가 최초로 보호·수용되었을 때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7조에서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와 제7조에 의거해 구금시설에서 실시한 입소시와 입소후 교육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진정권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금시설에서 실시한 진정권 관련교육의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2.9%에 불과하고,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7.6%, 모른다는 응답자는 202명으로 전체의 19.5%이다. 제4장에서 기술하였듯이 구금시설들은 시설별로 5분에서 1시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정권 관련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권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자는 32.9%에 불과하여 구금시설의 진정권 관련교육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잘 알고 있다	341	32.9
대충 알고 있다	492	47.6
모른다	202	19.5
계	1,035	100.0

<표 5-2>는 구금시설별로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정도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설유형²⁸⁾과 진정권제도 인지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시설분류와 인지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조사대상 구금시설을 미결수용시설, 초범수용시설, 2범이상 수용시설로 분류했을 때에 미결수용시설의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이 29.1%에 불과하고 모른다는 응답이 25.7%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초범수용시설(잘안다:36.2%, 모른다:16.0%)이나 2범이상 수용시설(잘안다:32.5%, 모른다:19.4%)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설분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구금시설의 수용규모와 인지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시설수용규모가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의 비율은 29.7%이며, 모른다는 비율은 23.6%를 차지하여 1,000명 미만(잘안다:34.2%, 모른다:15.4%)이나 2,500명 이상(잘안다:38.4%, 모른다:15.7%)의 시설에 비해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유난히 낮은 경향이 다²⁹⁾.

28) 본 연구는 시설유형을 시설분류와 시설수용규모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시설분류는 조사대상 구금시설을 미결수용시설, 초범수용시설, 2범이상 수용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시설수용규모는 조사대상 구금시설의 수용자규모에 따라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 2,500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구금시설의 수용자규모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등 인원현황(2002. 7. 31. 기준, 2002년도 국감자료)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29) 본 연구는 구금시설별로도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구금시설별 분석의 경우에 시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의 시설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A구금시설, B구금시설... 등과 같이 시설부호로 구분하였다.

구금시설별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였을 때에(부록A 표 a-1, 구금시설별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진정권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에 B구금시설, E구금시설, F구금시설,

<표 5-2> 시설유형별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모른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51 (29.1)	79 (45.2)	45 (25.7)	175 (100.0)	Chi-Square=7.3 (D.F.=4) P=N.S.
	초범	106 (36.2)	140 (47.8)	47 (16.0)	293 (100.0)	
	2범이상	184 (32.5)	273 (48.1)	110 (19.4)	567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102 (34.2)	150 (50.4)	46 (15.4)	298 (100.0)	Chi-Square=13.2 (D.F.=4) P<0.05
	1,000명 이상	151	237	120	508	
	2,500명 미만	(29.7)	(46.7)	(23.6)	(100.0)	
	2,500명 이상	88 (38.4)	105 (45.9)	36 (15.7)	229 (100.0)	

다음은 진정권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조사대상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표 5-3>에서와 같이 진정권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잘 안다는 사람은 측정항목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20% 내외이며, 모른다는 사람의 비율은 최소한 40% 이상으로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시설수용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편리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하거나,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즉, 진정여부는 교도소장이나 교정공무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진정의사를 밝히면 누구든지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20.7%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외에,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장소 및 시간 등 편의를 시설측이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느냐에 대해서는 20.2%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시설측은 진정서가 작성되면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24.6%만이, 면전진정을

M구급시설 등은 조사대상자의 4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시설들이었다. 반면에 진정권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의 경우에 K구급시설에서는 35.0%, P구급시설에서는 32.6%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다른 시설들에 비하여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특히 낮았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20.1%만이, 면전진정을 할 때에 교정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6.0%만이, 면전진정을 할 때에 교정공무원이 면담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6.1%만이, 교정공무원은 진정서를 읽어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21.7%만이, 입소할 때에 시설측은 진정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6.6%만이, 시설측이 진정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9.3%만이, 징벌중에도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6%만이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진정권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모른다는 응답의 경우도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47.2%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 교정공무원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7.2%가, 진정서가 작성되면 시설측은 즉시 발송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40.0%가, 면전진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50.7%가, 면전진정을 할 때에 교정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1.9%가, 교정공무원이 면전진정의 면담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2.9%가, 진정서를 교정공무원이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51.4%가, 입소할 때에 시설측은 진정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55.6%가, 시설측이 진정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4.2%가, 징벌중에도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5.3%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정권제도의 구체적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0%내외에 불과하고, 모른다는 응답자는 항목별로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65.3%까지 분포하여 진정권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5-3> 진정절차에 대한 인지도

인 지 도 진정 절차나 방법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모른다	계
허가 불필요	213 (20.7)	330 (32.1)	485 (47.2)	1,028 (100.0)
진정서 작성편의 제공	208 (20.2)	336 (32.6)	487 (47.2)	1,031 (100.0)
작성진정서의 즉시 발송	254 (24.6)	365 (35.4)	413 (40.0)	1,032 (100.0)
면전진정 가능	207 (20.1)	301 (29.2)	522 (50.7)	1,030 (100.0)
면전진정시 시설측공무원의 참여 불가	164 (16.0)	227 (22.1)	634 (61.9)	1,025 (100.0)
면전진정시 시설측공무원이 면담내용 녹취불가	165 (16.1)	215 (21.0)	643 (62.9)	1,023 (100.0)
작성된 진정서를 시설측공무원이 열람 금지	222 (21.7)	276 (26.9)	526 (51.4)	1,024 (100.0)
시설측에서의 입소시 진정관련 교육의 고지	170 (16.6)	285 (27.8)	570 (55.6)	1,025 (100.0)
시설측의 진정함 설치·관리	198 (19.3)	375 (36.5)	453 (44.2)	1,026 (100.0)
징벌중에도 진정서 작성·제출 가능	129 (12.6)	226 (22.1)	667 (65.3)	1,022 (100.0)

<표 5-4>는 시설유형별로 진정권제도 절차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것이다³⁰⁾. 먼저 시설분류의 경우에, 미결시설의 평균값은 24.8점, 초범수용시설의 평균값은 22.8점, 2범이상 시설의 평균값은 23.4점이다. 10개 측정항목 모두를 잘 아는 경우의 점수가 10점이

30) <표 5-4>에서는 간결한 자료분석을 위하여 진정절차에 관한 10개 측정항목을 합산하고 시설유형별로 그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 진정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측정항목의 경우 ‘잘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하면 ‘1’ 점을 부여하고, ‘대충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하면 ‘2’ 점을 부여하고, ‘모른다’ 라고 응답하면 ‘3’ 점을 부여하였다. 나머지 9개 측정항목에도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했을 때에 10개 측정항목 모두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점수는 10점이 되며, 10개 측정항목 모두를 모른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점수는 30점이다. <표 5-4>는 이런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진정절차를 인지하는 점수를 계산하고 시설유형별로 그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고 10개 항목 모두를 모르는 경우에 점수가 30점인 것을 고려할 때에 미결시설, 초범시설, 2범이상 시설의 평균값은 시설분류와 관계없이 전부 모른다는 응답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결수용시설의 평균값이 24.8점은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 미결수용시설에서 진정권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용규모면에서 1,000명 이상의 시설에서 평균값은 22.6점,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의 시설에서는 24.3점, 2,500명 이상의 평균값은 22.5점 등으로 수용규모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조사대상자가 진정권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경향이다. 특히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시설의 평균값은 24.3점으로 가장 높아 이러한 시설에서의 인지도가 유난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표 5-4> 시설유형별 진정절차 인지도

		인 원	평 균	표준편차
시설분류	미결	163	24.8	6.2
	초범	291	22.8	6.6
	2범이상	552	23.4	6.2
시설수용규모	1,000명 미만	292	22.6	6.4
	1,000명 이상~2,500명 미만	491	24.3	6.0
	2,500명 이상	223	22.5	6.8

본 연구는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표에 개방형 질문양식을 포함하였다(참조. 부록 B: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다음은 개방형 질문의 응답 중에서 진정권제도와 진정절차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기술한 사항들을 정

31) 구금시설별로 구분했을 때에(부록A 표 a-2, 구금시설별 진정절차 인지도)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던 시설들에서 역시 진정절차를 인지하는 수준도 높은 경향이다. B구금시설, E구금시설, L구금시설, M구금시설의 경우에 평균값이 각각 21.9, 20.7, 22.9, 15.7 등으로 다른 구금시설들에 비하여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추세이다. 이에 반하여 G구금시설, J구금시설, K구금시설, N구금시설, P구금시설 등은 평균값이 25점 이상으로 다른 구금시설들에 비해 진정절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리하여 이에 관한 수용자들의 의견을 살펴본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금시설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대신에 본 연구가 부여한 조사자 일련 번호만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기술한 내용의 대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진정권제도와 진정 절차 등에 대해 현재 잘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요청이다. 예를 들어 “인권위원회가 있고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의 자세한 방법도 각 거실에 안내문을 붙여 줘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인지 등의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조사대상자 48번),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 (조사대상자 52번), “대부분에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을 모름. 수용시설 측에서의 교육필요” (조사대상자 100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걸 먼저 교육을 통해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수용자는 이런 기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수용자가 많습니다” (조사대상자 157번),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하고 싶어도 방법과 절차를 모릅니다” (조사대상자 342번), “이야기만 대충 들었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겠음” (조사대상자 358번), “오늘에서야 이 설문지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진정하는지 그리고 시설내 직원들이나 시설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대화내용이나 서신내용 등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조사대상자 414번) 등과 같이 조사대상자들은 진정권 제도나 진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기술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진정함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인줄 알았음” (조사대상자 162번),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대상자 423번), “5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인권침해를 진정하는 곳이 있다는 것과 그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조사대상자 519번), “최근 일주일 전부터 소내방송을 통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홍보하고 있으며, 그나마 소리가 약해 잘 듣지 않는 실정임” (조사대상자 723번), “입소 때나 평소에 홍보나 교육이 전혀 없었음. 오늘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음. 널리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대상자 905번) 등은 2001년 11월 26일부터 진정접수를 실시하였지만 그동안 구금시설에서의 관련교육이 충실하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다. 진정권제도가 구금시설내의 새로운 인권보호장

치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도나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의 인지도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금시설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요구된다.

더불어, 진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조사대상자들의 의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 315번은 “우리 수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기술하여 인권침해의 의미를 수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요청하며, 조사대상자 358번 역시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의 홍보가 부족합니다” 라고 진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홍보를 요구하며, 조사대상자 587번도 “어떠한 것들이 진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 고 기술하여 진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인권침해 사건과 차별행위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행위 사건의 경우는 진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다소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애, 병력,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상황, 성적 지향, 나이, 용모 등, 종교, 정치적 의견, 전과, 기타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면 진정할 수 있다고 예시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인권침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인권침해의 경우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진정할 수 있다고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예를 들어 헌법 제10조에서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를 준거로 하여 인권침해를 규정한 것은 일면 수용자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의 내용이 이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된 수용자는 과연 무엇이 인간존엄성의 침해이며, 어떤 경우가 행복추구권의 침해인가에 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587번의 “어떠한 것들이 진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 라는 문의를 인권침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어려움을 잘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경우도 차별행위와 같이 수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구체화된 침해유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진정권제도를 알고있는 정도가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교차분석한 것이다. 먼저 <표 5-5>는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성별과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진정권제도를 잘 알고있다는 응답의 경우에 남성수용자 중에서 32.5%가 그렇다고 하였고, 여성수용자들 중에서는 36.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성수용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구급시설 모두에서 여성수용자들이 남성수용자에 비해 인지도가 높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표 5-5>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성별과의 관계

진정권제도 인지도 \ 성 별	남 성	여 성
	잘 알고 있다	295 (32.5)
대충 알고 있다	433 (47.7)	59 (46.5)
모른다	180 (19.8)	22 (17.3)
계	908 (100.0)	127 (100.0)

Chi-Square = 0.9 (D.F. = 2) P = N.S

<표 5-6>은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20세미만의 조사 대상자 중에서 진정권제도를 모른다는 비율이 34.8%,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19.3%,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에는 16.8%,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17.9%,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25.3%등이다. 따라서 20세 미만 저연령자와 5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 진정권제도 인지도가 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6>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연령과의 관계

연령 진정권제도 인지도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잘 알고 있다	6 (26.1)	62 (25.0)	107 (33.8)	103 (37.6)
대충 알고 있다	9 (39.1)	138 (55.7)	156 (49.4)	122 (44.5)	67 (38.5)
모른다	8 (34.8)	48 (19.3)	53 (16.8)	49 (17.9)	44 (25.3)
계	23 (100.0)	248 (100.0)	316 (100.0)	274 (100.0)	174 (100.0)

Chi-Square = 22.3 (D.F. = 8) P < 0.05

<표 5-7>은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수용자 신분을 교차분석한 것이다. 기결수의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모른다는 비율이 19.6%, 미결수의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모른다는 비율이 19.3% 등으로 수용자의 신분별로는 주목할 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표 5-7> 진정권제도의 인지도와 수용자 신분과의 관계

수용자 신분 진정권제도 인지도	미결수	기결수
	잘 알고 있다	82 (33.6)
대충 알고 있다	115 (47.1)	377 (47.7)
모른다	47 (19.3)	155 (19.6)
계	244 (100.0)	791 (100.0)

Chi-Square = 0.1 (D.F. = 2) P =N.S.

<표 5-8>은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교육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진정권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무학의 경우에 44.4%,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에 27.1%, 중학교졸업의 경우에 20.1%, 고등학교졸업의 경우에 18.0%, 전문대졸업의 경우에 7.4%, 대학교졸업 이상의 경우에 20.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무학(44.4%)이나 초등학교 졸업자(27.1%) 중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진정권 관련교육에서 교육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8>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교육정도와의 관계

진정권제도 인지도 \ 교육 정도	무 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	대학교 졸업이상
잘 알고 있다	5 (27.8)	37 (34.6)	74 (32.3)	152 (30.8)	23 (33.8)	50 (43.5)
대충 알고 있다	5 (27.8)	41 (38.3)	109 (47.6)	253 (51.2)	40 (58.8)	42 (36.5)
모른다	8 (44.4)	29 (27.1)	46 (20.1)	89 (18.0)	5 (7.4)	23 (20.0)
계	18 (100.0)	107 (100.0)	229 (100.0)	494 (100.0)	68 (100.0)	115 (100.0)

Chi-Square = 29.1 (D.F. = 10) P < 0.05

<표 5-9>는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전과경력과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전과가 없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모르는 비율은 22.5%, 1~2회의 전과경험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경우에 모르는 비율은 13.4%, 3~4회의 전과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20.8%, 5회 이상의 전과경험이 있는 경우는 17.6% 등이다. 전과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진정권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22.5%)이 가장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5-9>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전과와의 관계

진정권제도 인지도 \ 전 과	없 다	1~2회	3~4회	5회 이상
잘 알고 있다	178 (33.5)	95 (33.4)	40 (30.8)	24 (32.4)
대충 알고 있다	234 (44.0)	151 (53.2)	63 (48.4)	37 (50.0)
모른다	120 (22.5)	38 (13.4)	27 (20.8)	13 (17.6)
계	532 (100.0)	284 (100.0)	130 (100.0)	74 (100.0)

Chi-Square = 12.0 (D.F. = 6) P = N.S.

<표 5-10>은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징벌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징벌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 19.3%가 진정권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징벌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17.5%가 진정권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징벌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권제도를 모른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5-10>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징벌경험과의 관계

진정권제도 인지도 \ 징 벌 경 험	있 음	없 음
잘 알고 있다	269 (33.0)	20 (31.7)
대충 알고 있다	388 (47.7)	32 (50.8)
모른다	157 (19.3)	11 (17.5)
계	814 (100.0)	63 (100.0)

Chi-Square = 0.3 (D.F. = 2) P = N.S.

<표 5-11>은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수용생활 적응도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정도는 수용생활 적응도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수용생활을 아주 고통스럽게 느끼는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27.4%만이 진정권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용생활이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31.6%가 잘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수용생활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55.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수용생활 적응도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모른다는 응답의 경우에서도 수용생활을 아주 고통스럽게 느끼는 조사대상자의 21.1%가 진정권제도를 모른다고 하였고,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18.8%가,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18.1%가 진정권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용생활 적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잘 아는 비율이 높고(55.3%),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모르는 비율이 높다(21.1%)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1>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수용생활 적응도와의 관계

수용생활 만족도 진정권제도 인지도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	그저 그런 상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태
잘 알고있다	56 (27.4)	198 (31.6)	52 (55.3)
대충 알고 있다	105 (51.5)	311 (49.6)	25 (26.6)
모른다	43 (21.1)	118 (18.8)	17 (18.1)
계	204 (100.0)	627 (100.0)	94 (100.0)

Chi-Square=26.8 (D.F.=4) P<0.0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이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정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진정권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2.9%에 불과하고, 진정할 수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응답의 비율이 19.5%에 달할 정도로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구체적 절차나 방법들을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했을 때에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 내외에 불과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은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65.3%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더욱 낮게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 진정권제도 인지도를 살펴봤을 때에 미결수용시설, 초범수용시설, 2범이상 수용시설 등 시설분류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수용규모별로는 1,00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34.2%이었고 이에 반하여 1,000명-2,500명을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그러한 비율이 29.7%에 불과하는 등 수용규모별로 주목할만한 차이가 있다.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별로 인지도를 분석했을 때에, 특히 연령이 20세 미만(34.8%)이거나 50세 이상(25.3%)의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며, 교육경험이 없거나(무학, 44.4%) 초등학교 출신자(27.1%)의 경우에 진정권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를 고통스러워하는 수용자(21.1%)의 경우 역시 진정권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진정권제도가 구금시설내의 새로운 인권보호장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수용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진정권제도를 모르는 수용자가 19.5%에 달하고, 특히 저연령자나 고연령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수용생활 부적응자들 중에서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제2절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 태도

진정권제도의 인지는 이러한 제도를 모른다면 시설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요청을 할 수 없어 진정권행사에 있어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권제도가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하며, 진정을 하면 개선효과가 있으며, 진정후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태도를 가질 때에 진정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다음은 조사대상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표 5-12>는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진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

정항목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태도를 분석한 것이다. 타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진정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 조사대상자들은 622명으로 전체의 62.8%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가진 조사대상자는 122명으로 전체의 12.4%이다. 이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60%이상이 타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진정행위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2> 타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행위 필요성에 관한 태도

필요성 \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622	62.8
그저 그렇다	246	24.8
아니다	122	12.4
계	990	100.0

<표 5-13>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보다 시설내 책임자와 상담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측정항목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태도이다. 진정을 하는 것보다 시설내 책임자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가진 응답자는 321명으로 전체의 32.0%이다. 이에 반하여 379명, 즉 37.8%는 “아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시설내 책임자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일부 교정공무원들이 우려하듯이 진정권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수용자들이 고충사항 모두를 인권위진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5-13> 시설책임자와의 상담에 관한 태도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시설책임자와 상담		
그렇다	321	32.0
그저 그렇다	302	30.2
아니다	379	37.8
계	1,002	100.0

<표 5-14>는 “진정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진정효과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진정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질문에 43.5%에 해당하는 431명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25.4%는 진정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43.5%가 진정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아직까지 진정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와 같이 진정권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5-14> 진정효과에 관한 소극적 태도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진 정 효 과		
그렇다	431	43.5
그저 그렇다	308	31.1
아니다	252	25.4
계	991	100.0

<표 5-15>는 “진정을 하면 시설측으로부터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측정문항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진정 후에 교정시설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388명인 39.0%가 “그렇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가진 조사대상자는 366명인 36.9%이다. 이를 통하여 수용자의 40%가량이 진정권행사와 관련하여 시설측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5> 진정 후의 불이익에 관한 태도

진정 불이익 / 구 분	빈 도	퍼 센 트
그렇다	388	39.0
그저 그렇다	240	24.1
아니다	366	36.9
계	994	100.0

진정권행사에 관한 4가지 태도항목 중에서 다음은 진정효과와 진정후 불이익을 중심으로 시설유형별로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표 5-16>은 진정효과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를 분석한 것이다. 미결수용시설의 경우에 진정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40.4%이며, 초범수용시설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40.7%이다. 반면에 2범이상 수용시설의 경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45.9%로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다소 높게 조사되었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시설수용규모별로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의 시설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이 46.5%로 1,000명 미만(42.2%)과 2,500명 이상(38.4%)의 시설보다 다소 높지만 시설수용규모와 진정효과와의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³²⁾.

<표 5-16> 시설유형별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63 (40.4)	53 (34.0)	40 (25.6)	156 (100.0)	Chi-Square=4.8 (D.F.=4) P=N.S.
	초범	118 (40.7)	87 (30.0)	85 (29.3)	290 (100.0)	
	2범이상	250 (45.9)	168 (30.8)	127 (23.3)	545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122 (42.2)	95 (32.9)	72 (24.9)	289 (100.0)	Chi-Square=5.0 (D.F.=4) P=N.S.
	1,000명 이상	226	138	122	486	
	2,500명 미만	(46.5)	(28.4)	(25.1)	(100.0)	
	2,500명 이상	83 (38.4)	75 (34.7)	58 (26.9)	216 (100.0)	

<표 5-17>은 시설유형과 진정후의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표 5-17>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분류와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이며 시설분류 중에서 진정후의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2범이상 수용시설이다. 2범이상 수용시설의 경우에 진정후의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4.7%로 미결수용시설의 31.7%와 초범수용시설의 32.4%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수용규모면에서는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의 시설에서 진정후의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2.1%로 1,000명 미만 시설의 36.2%, 2,500명 이상 시설의 36.0%보다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³³⁾.

32) 진정효과에 대해서(부록A 표 a-3, 구금시설별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 소극적 태도를 가진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구금시설들은 P구금시설(56.4%), J구금시설(55.0%), A구금시설(54.1%), O구금시설(51.8%), R구금시설(51.7%) 순이다. 이들 시설들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진정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33)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진정후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태도를 나타낸 시설은 P구금시설(59.0%), R구금시설(53.3%), O구금시설(51.8%) 등이다(부록A 표 a-4, 구금시설별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태도). 반면에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진정후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시설은 M구금시설(69.1%), B구금시설(53.5%) 등이다.

<표 5-17> 시설유형별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태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50 (31.7)	50 (31.7)	58 (36.6)	158 (100.0)	Chi-Square=19.0 (D.F.=4) P<0.05
	초범	94 (32.4)	76 (26.2)	120 (41.4)	290 (100.0)	
	2범이상	244 (44.7)	114 (20.9)	188 (34.4)	546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106 (36.2)	74 (25.2)	113 (38.6)	293 (100.0)	Chi-Square=4.6 (D.F.=4) P=N.S.
	1,000명 이상	205	116	166	487	
	2,500명 미만	(42.1)	(23.8)	(34.1)	(100.0)	
	2,500명 이상	77 (36.0)	50 (23.3)	87 (40.7)	214 (100.0)	

앞에서의 분석에서 진정효과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43.5%가 소극적 태도를 가졌는데, 이들이 직접 기술한 내용을 통하여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참조. 부록 C: 진정효과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예를 들어, 조사대상자 133명은 “시정조치가 될까, 무시되어버리고, 묵인되어버릴 것 같은”우려를 갖고 있으며, 조사대상자 240명과 400명은 “개선은 거의 말뿐인 것 같다”, “인권상담을 하면 조금이라도 표시가 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진정효과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과반수 가량의 조사대상자들이 진정을 하면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술내용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정효과에 대한 수용자들의 비판적 태도가 확산될 경우에 진정권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수용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으므로 진정을 하면 개선된다는 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방형 질문 중에서 진정후의 불이익과 관련한 조사대상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교정공무원의 차별대우를 우려하는 것이다(참조. 부록 D: 진정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특히 조사대상자 259명이나 287명은 “시설측 공무원에게 잘못 보일까 싶어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음”, “사방담당자에게 진정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수나 있겠는가? 찍힐 것이 뻔한데”라고 기술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차별대우로 인한 우려

감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될까하는 두려움과 가석방 혜택에 불이익이 올지 몰라 병어리 냉가슴 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조사대상자 597번)이나, “진정을 한다면 잘은 모르지만 나가는 날까지 교정공무원들은 색안경을 쓰고 볼 것입니다”(조사대상자 726번)이나, “진정을 하고 싶지만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조사대상자 994번)나, “진정하는 자체가 무슨 고자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고 이로 인해 주위의 시선을 받게 되는데”(조사대상자 1068번) 등도 진정후의 불이익이 두려워 진정권행사를 주저하는 수용자의 심리적 태도를 잘 대변한다.

다음은 어떤 수용자들이 진정효과에 대해 소극적 태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용자 특성과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것이다. 우선, <표 5-18>은 성별과 진정효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에 진정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389명으로 남성 조사대상자의 44.7%이며, 여성의 경우에 그러한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여성 조사대상자의 35.0%이다. 이로써 남성수용자가 여성수용자에 비해서 진정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8> 성별과 진정효과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

진 정 효 과	성 별	
	남성	여성
그렇다	389 (44.7)	42 (35.0)
그저 그렇다	273 (31.3)	35 (29.2)
아니다	209 (24.0)	43 (35.8)
계	871 (100.0)	120 (100.0)

Chi-Square=8.2 (D.F.=2) P<0.05

<표 5-19>는 연령과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의 경우는 40.9%, 20-30세의 경우는 42.0%, 30~40세의 경우는 47.5%, 40~50세의 경우는 44.6%, 50세 이상의 경우는 36.5%가 진정을 하여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태도이다. 따라서 30~40세와 40~50세의 연령층에서 진정효과에 대한 기대가 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9> 연령과 진정효과에 관한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

진 정 효 과 \ 연 령	연 령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렇다	9 (40.9)	103 (42.0)	145 (47.5)	116 (44.6)	58 (36.5)
그저 그렇다	5 (22.7)	96 (39.2)	82 (26.9)	75 (28.9)	50 (31.4)
아니다	8 (36.4)	46 (18.8)	78 (25.6)	69 (26.5)	51 (32.1)
계	22 (100.0)	245 (100.0)	305 (100.0)	260 (100.0)	159 (100.0)

Chi-Square=19.2 (D.F.=8) P<0.05

<표 5-20>은 수용자신분과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수용자 신분에 따라서 미결수의 경우에 36.7%, 기결수의 경우에 45.6%가 진정을 하여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이다. 즉 기결수가 미결수에 비해서 진정효과에 대해 더욱 낮은 기대를 갖고 있는 추세이다.

<표 5-20> 수용자 신분과 진정효과에 관한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

진정효과 \ 신분	미결수	기결수
그렇다	84 (36.7)	347 (45.6)
그저 그렇다	83 (36.2)	225 (29.5)
아니다	62 (27.1)	190 (24.9)
계	229 (100.0)	762 (100.0)

Chi-Square=6.1 (D.F.=2) P<0.05

<표 5-21>은 학력과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학력에 따른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64.3%, 초등학교의 경우 51.6%, 중학교의 경우 45.4%, 고등학교의 경우 43.0%가 진정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나타냈다. 무학이나 초등학교졸업의 경우에 진정효과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낮지만, 학력과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학력별 차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표 5-21> 학력과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정효과 \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졸업이상
그렇다	9 (64.3)	49 (51.6)	98 (45.4)	207 (43.0)	25 (37.3)	42 (36.9)
그저 그렇다	2 (14.3)	17 (17.9)	69 (31.9)	155 (32.2)	24 (35.8)	38 (33.3)
아니다	3 (21.4)	29 (30.5)	49 (22.7)	119 (24.8)	18 (26.9)	34 (29.8)
계	14 (100.0)	95 (100.0)	216 (100.0)	481 (100.0)	67 (100.0)	114 (100.0)

Chi-Square=15.0 (D.F.=10) P=N.S.

<표 5-22>는 수용자의 전과횟수와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전과횟수에 따른 진정효과의 소극적 태도를 살펴보면 전과횟수가 없는 경우 40.3%, 1~2회의 경우 44.1%, 3~4회의 경우 48.4%, 5회 이상인 경우 56.5%가 진정을 하여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이를 통하여 전과횟수가 많은 경우에 진정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2> 전과횟수와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 정 효 과	전 과 횟 수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그렇다	207 (40.3)	120 (44.1)	61 (48.4)	39 (56.5)
그저 그렇다	160 (31.2)	96 (35.3)	33 (26.2)	16 (23.2)
아니다	146 (28.5)	56 (20.6)	32 (25.4)	14 (20.3)
계	513 (100.0)	272 (100.0)	126 (100.0)	69 (100.0)

Chi-Square=13.6 (D.F.=6) P<0.05

<표 5-23>은 수용자의 징벌경험과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징벌경험의 유무에 따른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징벌경험이 없는 경우 49.2%가 진정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이다. 또한 징벌경험이 없는 경우도 41.7%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징벌경험의 유무에 따른 진정효과에 대한 기대 차이는 크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다.

<표 5-23> 징벌경험과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 정 효 과	징 벌 경 험	
	없 다	있 다
그렇다	328 (41.7)	30 (49.2)
그저 그렇다	247 (31.4)	19 (31.1)
아니다	212 (26.9)	12 (19.7)
계	787 (100.0)	61 (100.0)

Chi-Square=1.9 (D.F.=2) P=N.S.

<표 5-24>는 수용생활 적응도와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수용생활이 “아주 고통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62.7%는 진정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이고, 수용생활이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39.5%가, 수용생활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25.9%가 소극적 태도이다. 따라서 수용생활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인 경우에 진정효과에 대한 기대 역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4> 수용생활 적응도와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 정 효 과	수용생활 적응도		
	아주 고통스럽다	그저 그렇다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	126 (62.7)	242 (39.5)	23 (25.9)
그저 그렇다	46 (22.9)	221 (36.1)	18 (20.2)
아니다	29 (14.4)	149 (24.4)	48 (53.9)
계	201 (100.0)	612 (100.0)	89 (100.0)

Chi-Square=76.9 (D.F.=4) P<0.05

<표 5-25>는 성별과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0.5%가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태도를 나타내었고, 여성의 경우는 28.7%가 그러한 태도이다. 이를 통하여 남성수용자의 경우에 여성보다 진정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5> 성별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정불이익	성 별	
	남 성	여 성
그렇다	353 (40.5)	35 (28.7)
그저 그렇다	215 (24.6)	25 (20.5)
아니다	304 (34.9)	62 (50.8)
계	872 (100.0)	122 (100.0)

Chi-Square=12.0 (D.F.=2) P<0.05

<표 5-26>은 연령과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연령에 따른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20대 미만의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30.4%가,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경우는 33.0%,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는 42.3%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경우는 44.3%가, 50세 이상의 경우는 34.6%가 진정후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태도이다. 즉 연령별로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표 5-26> 연령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정불이익 \ 연 령	연 령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렇다	7 (30.4)	81 (33.0)	128 (42.3)	117 (44.3)	55 (34.6)
그저 그렇다	6 (26.1)	69 (28.2)	71 (23.4)	55 (20.8)	39 (24.5)
아니다	10 (43.5)	95 (38.8)	104 (34.3)	92 (34.9)	65 (40.9)
계	23 (100.0)	245 (100.0)	303 (100.0)	264 (100.0)	159 (100.0)

Chi-Square=11.2 (D.F.=8) P=N.S.

<표 5-27>은 수용자 신분과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미결수의 경우에 응답자의 28.6%, 기결수의 경우는 42.2%가 진정후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기결수가 미결수에 비해서 진정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7> 수용자 신분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정불이익 \ 신 분	신 분	
	미결수	기결수
그렇다	66 (28.6)	322 (42.2)
그저 그렇다	69 (29.9)	171 (22.4)
아니다	96 (41.5)	270 (35.4)
계	231 (100.0)	763 (100.0)

Chi-Square=14.4 (D.F.=2) P<0.05

<표 5-28>은 학력과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무학인 응답자의 경우에 53.3%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44.0%, 중학교의 경우는 38.9%, 고등학교의 경우는 39.0%, 전문대의 경우는 39.7%, 대학교 졸업이상의 경우는 32.5%가 진정후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학력이 낮은 경우에 진정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표 5-28> 학력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정불이익 \ 학 력	무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	대학교 졸업이상
그렇다	8 (53.3)	44 (44.0)	84 (38.9)	186 (39.0)	27 (39.7)	37 (32.5)
그저 그렇다	1 (6.7)	19 (19.0)	48 (22.2)	123 (25.8)	15 (22.1)	33 (29.0)
아니다	6 (40.0)	37 (37.0)	84 (38.9)	168 (35.2)	26 (38.2)	44 (38.6)
계	15 (100.0)	100 (100.0)	216 (100.0)	477 (100.0)	68 (100.0)	114 (11.52)

Chi-Square=8.5 (D.F.=10) P=N.S.

<표 5-29>는 전과횟수와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전과횟수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 32.8%, 1~2회의 경우는 43.6%, 3~4회의 경우는 47.2%, 5회 이상의 경우는 53.6%가 진정 불이익에 대하여 우려된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과횟수가 많은 경우에 진정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역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9> 전과횟수와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정불이익	전과 횟수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그렇다	169 (32.8)	120 (43.6)	58 (47.2)	37 (53.6)
그저 그렇다	140 (27.2)	58 (21.1)	31 (25.2)	10 (14.5)
아니다	206 (40.0)	97 (35.3)	34 (27.6)	22 (31.9)
계	515 (100.0)	275 (100.0)	123 (100.0)	69 (100.0)

Chi-Square=23.0 (D.F.=6) P<0.05

<표 5-30>은 징벌경험의 유무와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징벌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 36.1%, 징벌경험이 있는 경우는 55.7%가 진정 불이익에 대하여 우려된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징벌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진정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0> 징벌경험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진정불이익	징벌 경험	
	없다	있다
그렇다	286 (36.1)	34 (55.7)
그저 그렇다	199 (25.1)	12 (19.7)
아니다	307 (38.8)	15 (24.6)
계	792 (100.0)	61 (100.0)

Chi-Square=9.5 (D.F.=2) P<0.05

<표 5-31>은 수용생활 적응도와 진정 불이익에 대한 태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 중에서 수용생활을 “아주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62.0%가, “그저 그렇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6.2%가,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경우는 13.2%가 진정 불이익을 우려하는 태도이다. 이를 통하여 수용생활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의 경우에 진정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역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1> 수용생활 적응도와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수용생활 만족도 진정불이익	아주 고통스럽다	그저 그렇다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	124 (62.0)	222 (36.2)	12 (13.2)
그저 그렇다	38 (19.0)	165 (27.0)	13 (14.3)
아니다	38 (19.0)	225 (36.8)	66 (72.5)
계	200 (100.0)	612 (100.0)	91 (100.0)

Chi-Square=100.2 (D.F.=4) P<0.05

제3절 진정경험

다음은 조사대상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정형태와 진정을 하게 된 진정사유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표 5-32>는 조사대상자의 진정경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본 사람은 42명으로 조사대상자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표 5-32> 진정경험

진정경험 \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없 다	999	96.0
있 다	42	4.0
계	1,041	100.0

<표 5-33>은 진정경험이 있었던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진정형태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경험이 있었던 조사대상자 42명중에서 서면진정의 방법으로만 진정한 경우는 16명으로 38.1%이고, 면전진정의 방법으로만 진정한 경우는 14명으로 33.3%를 차지하고, 서면진정과 면전진정 모두의 방법으로 진정한 경우는 12명으로 28.6%를 차지한다. 이를 통하여 수용자들이 진정하는 형태는 서면진정의 방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면전진정, 그리고 서면진정과 면전진정 모두를 활용하는 순서임을 알 수 있다.

<표 5-33> 진정형태

진정 형태 \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서면진정	16	38.1
면전진정	14	33.3
서면진정+면전진정	12	28.6
계	42	100.0

<표 5-34>는 서면진정을 한 경우에 진정사유의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서면진정사유를 살펴보면 의료(질병치료, 의료기관 이용 등)와 관련된 사유로 서면진정을 한 응답자가 10명으로 진정경험자의 23.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정공무원과의 관계(인간적 무시, 차별대우 등)와 관련한 사유로 진정한 경우가 5명으로 11.9%이다. 교정공무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서면진정을 한 경우는 4명으로 9.5%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정공무원과의 관계나 폭력행위와 관련한 진정사유가 21.4%를 차지하여 의료문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진정사유임을 알 수 있다.

<표 5-34> 서면진정사유

구분	빈도	퍼센트
서면진정사유		
무응답	7	16.7
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1	2.4
작업 (작업배치, 상여금지급 등)	1	2.4
접견 및 외부교통 (면회, 서신, 신문열람 등)	1	2.4
의료 (질병치료, 의료기관 이용 등)	10	23.8
징벌 (신문, 도서 열람 금지, 독거수용 등)	2	4.8
계호 (포승, 수갑의 사용, 출입방 검사 등)	1	2.4
교정공무원 관계 (인간적 무시, 차별대우 등)	5	11.9
교정공무원의 폭력행위	4	9.5
동료수용자들과의 생활 (따돌림, 심부름, 폭언 등)	1	2.4
동료수용자들의 폭력행위	2	4.8
기타	7	16.5
계	42	100.0

<표 5-35>는 면전진정의 경우에 진정사유의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면전진정사유를 살펴보면 의료(질병치료, 의료기관 이용 등)에 관련한 사유로 면전진정을 한 응답자가 15명으로 진정경험자의 35.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정공무원 관계(인간적 무시, 차별대우 등)와 관련한 사유로 진정한 경우가 3명으로 7.1%이다. 교정공무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면전진정을 한 경우는 4명으로 9.5%이다. 따라서 교정공무원과의 관계나 폭력행위와 관련한 진정사유가 16.6%를 차지하여 앞서 서면진정사유와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진정사유이다.

<표 5-35> 면전진정사유

구분	빈도	퍼센트
면전진정사유		
무응답	11	26.2
의식주 (급식, 수면, 침구의 부족 등)	2	4.8
의료 (질병 치료, 의료기관 이용 등)	15	35.7
징벌 (신문, 도서 열람 금지, 독거수용 등)	1	2.4
교정공무원 관계 (인간적 무시, 차별대우 등)	3	7.1
교정공무원의 폭력행위	4	9.5
동료수용자들과의 생활 (따돌림, 심부름, 폭언 등)	1	2.4
동료수용자들의 폭력행위	1	2.4
기타	4	9.6
계	42	100.0

제4절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다음에서는 전체응답자 1,041명 중에서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833명을 대상으로 진정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³⁴⁾

<표 5-36>은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권행사에 장애를 겪었거나 주위에서 이러한 장애를 목격한 경우가 295명으로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의 35.5%이다. 또한 진정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03명으로 진정권제도 인지자의 36.4%를 차지한다. 진정내용의 비밀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진정장애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16명으로 26.0%이다. 필기구나 종이와 같이 진정서 작성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장애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2명으로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의 6.2%이다. 끝으로 진정후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진정장애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9명으로 진정권제도 인지자의 23.9%를 차지한다.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자들이 장애요인으로 가장 빈번히 지적한 사항은 진정 방법의 무지와 진정 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이다.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1/3 이상이 진정방법의 무지와 진정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으로 진정권행사에 장애를 겪는 추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진정절차의 불편함과 복잡함으로 진정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도하였다. 그러나 행형법 제33조의 3은 집필을 위해서는 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제65조, 제66조)은 집필의 장소와 시간을 한정하며, 법무부훈령(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지침)은 진정을 할 때에 진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집필허가전이나 진정신청서 작성이 요구되는 현실적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

34) 「제4절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에서 분석항목은 응답자 자신이 겪은 것 외에 동료수용자가 겪은 것을 보거나 들은 간접경험도 포함한 것이다.

사대상자의 36%가 진정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으로 진정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지적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진정의사를 표명하면 즉시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절차 문제 다음으로 빈번히 지적한 사항은 진정내용의 비밀보장과 진정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조사대상자의 25% 가량이 이러한 사유로 자유로운 진정권행사에 장애를 겪는 추세이다. 이에 반하여 진정서 작성도구의 미비로 인해 진정장애를 겪는 경우는 6.2%에 불과하여, 필기구나 종이의 확보문제는 자유로운 진정권행사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진정권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정방법에 대한 교육과 진정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6>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	무응답	있다	없다	계
진정방법의 무지	97 (11.6)	295 (35.5)	441 (52.9)	833 (100.0)
진정절차의 복잡·불편함	102 (12.2)	303 (36.4)	428 (51.4)	833 (100.0)
진정내용의 비밀보장이 안됨	121 (14.5)	216 (26.0)	496 (59.5)	833 (100.0)
진정서 작성도구(필기구, 종이)가 없음	118 (14.2)	52 (6.2)	663 (79.6)	833 (100.0)
진정후 보복의 두려움	112 (13.4)	199 (23.9)	522 (62.7)	833 (100.0)

<표 5-37>은 시설유형별로 진정하는 방법을 몰라 진정장애를 겪은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³⁵⁾ 시설분류의 경우에,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으로 진정장애를 겪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2범이상 수용시설로 조사대상자의 48.2%가 이러한 경험

35) 분석과정에서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설의 수용규모면에서는 대규모시설에서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으로 진정장애를 겪거나 주위에서 목격하는 비율이 높다. 예컨대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의 시설에서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으로 진정장애를 겪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비율은 43.2%이고 2,500명 이상의 시설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43.7% 등으로, 1,000명 미만의 32.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용규모가 큰 시설에서 진정장애를 겪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⁶⁾.

<표 5-37> 시설유형별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에 의한 진정장애

		있다	없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38 (36.9)	65 (63.1)	103 (100.0)	Chi-Square=27.6 (D.F.=2) P<0.05
	초범	61 (27.0)	165 (73.0)	226 (100.0)	
	2범이상	196 (48.2)	211 (51.8)	407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75 (32.8)	154 (67.2)	229 (100.0)	Chi-Square=7.5 (D.F.=2) P<0.05
	1,000명 이상	147 (43.2)	193 (56.8)	340 (100.0)	
	2,500명 미만	73 (43.7)	94 (56.3)	167 (100.0)	
	2,500명 이상	73 (43.7)	94 (56.3)	167 (100.0)	

<표 5-38>는 시설유형별로 진정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으로 인하여 진정장애를 겪은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시설분류의 경우에, 진정절차의 복잡성과 불편함으로 진정장애를 겪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2범이상 수용시설이다. 2범이상 수용 시설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장애를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47.9%로 앞서 진정방법

36)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진정장애의 비율이 높았던 시설은(부록A 표 a-5, 구금시설별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에 의한 진정장애) G구금시설(61.9%), O구금시설(59.1%), P구금시설(58.3%), D구금시설(55.2%), B구금시설(50.0%)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으로 진정장애를 겪거나 주위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M구금시설, Q구금시설은 진정방법의 인식부족과 관련한 진정장애의 비율이 3.8%와 27.5%에 불과하여 다른 시설들에 비해 장애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의 인식부재에서와 같이 미결수용시설(35.3%)이나 초범수용시설(32.6%)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시설의 수요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의 시설에서 이러한 비율이 44.6%로 다른 시설들(1,000명 미만, 38.6%; 2,500명 이상, 38.9%)에 비해 다소 높게 분석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³⁷⁾.

<표 5-38> 시설유형별 진정절차의 복잡성·불편함으로 인한 진정장애

		있다	없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36 (35.3)	66 (64.7)	102 (100.0)	Chi-Square=15.8 (D.F.=2) P<0.05
	초범	73 (32.6)	151 (67.4)	224 (100.0)	
	2범이상	194 (47.9)	211 (52.1)	405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88 (38.6)	140 (61.4)	228 (100.0)	Chi-Square=2.6 (D.F.=2) P=N.S.
	1,000명 이상	150	186	336	
	2,500명 미만	(44.6)	(55.4)	(100.0)	
	2,500명 이상	65 (38.9)	102 (61.1)	167 (100.0)	

<표 5-39>에서 <표 5-41>는 시설유형별로 진정내용의 비밀보장문제³⁸⁾, 진정도구의

37) 진정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을 진정장애의 원인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은 시설은(부록A 표 a-6, 구금시설별 진정절차의 복잡성·불편함으로 인한 진정장애) P구금시설(65.2%), O구금시설(63.6%), G구금시설(54.8%)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진정장애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경험이 적었던 시설은 M구금시설(5.8%)에 불과하고, 그 외의 나머지 시설들에서는 최소한 30% 이상의 응답자들이 진정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으로 진정장애를 겪거나 목격했다고 보고하였다.

38)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진정장애를 겪은 비율을 구금시설별로 비교했을 때에(부록A 표 a-7, 구금시설별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진정장애), P구금시설은 조사대상자의 56.5%, 즉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시설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장애비율을 나타내었다. 진정내용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진정장애의 비율이 낮은 시설은 D구금시설(18.5%), F구금시설(16.1%), M구금시설(3.9%)등으로 이들 시설에서의 장애비율은 20% 미만으

구비문제³⁹⁾, 진정후 보복의 두려움⁴⁰⁾ 등으로 진정장애를 겪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한가지 예외는 시설분류와 진정도구의 미비문제와의 관계이다. <표 5-40>에서 알 수 있듯이, 미결수용시설에서 진정도구의 미비로 진정장애를 경험한 비율은 13.3%로, 초범수용시설의 4.5%와 2범이상 수용시설의 7.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결수용시설에서는 기결시설들과 달리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볼펜과 용지의 미비문제가 중요한 진정장애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9> 시설유형별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진정장애

로 다른 시설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39) 구금시설별로 분석했을 때에(부록A 표 a-8, 구금시설별 서면진정도구의 미비로 인한 진정장애), 진정도구의 구비문제로 인한 진정장애의 비율은 10%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진정장애를 유발하는데 그다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P구금시설(26.1%), K구금시설(19.4%), A구금시설(12.8%), N구금시설(11.9%), H구금시설(11.4%) 등은 볼펜이나 진정서의 결핍으로 진정장애를 겪었던 비율이 10% 이상으로 다른 시설들에 비해 진정도구의 결핍으로 인한 진정장애가 있었던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다. 이에 반하여 L구금시설과 M구금시설은 진정도구의 결핍에 의한 진정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40) 진정후의 보복이 두려워서 진정하지 못했거나 주위에서 목격한(부록A 표 a-9, 구금시설별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진정장애)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50%가 넘는 시설은 P구금시설이었다. P구금시설의 경우에 진정후의 보복과 관련하여 진정장애를 겪은 비율이 56.5%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그러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진정후의 보복과 관련하여 진정장애 비율이 낮은 시설은 M구금시설(3.9%), I구금시설(9.4%)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0% 미만에 불과한 응답자만이 그러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있다	없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27 (27.6)	71 (72.4)	98 (100.0)	Chi-Square=1.5 (D.F.=2) P=N.S.
	초범	63 (28.3)	160 (71.7)	223 (100.0)	
	2범이상	126 (32.2)	265 (67.8)	391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64 (28.6)	160 (71.4)	224 (100.0)	Chi-Square=0.8 (D.F.=2) P=N.S.
	1,000명 이상	104	221	325	
	2,500명 미만	(32.0)	(68.0)	(100.0)	
	2,500명 이상	48 (29.5)	115 (70.5)	163 (100.0)	

<표 5-40> 시설유형별 서면진정도구의 미비로 인한 진정장애

		있다	없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13 (13.3)	85 (86.7)	98 (100.0)	Chi-Square=7.9 (D.F.=2) P<0.05
	초범	10 (4.5)	214 (95.5)	224 (100.0)	
	2범이상	29 (7.4)	364 (92.6)	393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14 (6.3)	210 (93.7)	224 (100.0)	Chi-Square=2.2 (D.F.=2) P=N.S.
	1,000명 이상	29	300	329	
	2,500명 미만	(8.8)	(91.2)	(100.0)	
	2,500명 이상	9 (5.6)	153 (94.4)	162 (100.0)	

<표 5-41> 시설유형별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진정장애

		있다	없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19 (19.2)	80 (80.8)	99 (100.0)	Chi-Square=5.7 (D.F.=2) P=N.S.
	초범	58 (25.9)	166 (74.1)	224 (100.0)	
	2범이상	122 (30.6)	276 (69.4)	398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63 (28.0)	162 (72.0)	225 (100.0)	Chi-Square=0.7 (D.F.=2) P=N.S.
	1,000명 이상	95	237	332	
	2,500명 미만	(28.6)	(71.4)	(100.0)	
	2,500명 이상	41 (25.0)	123 (75.0)	164 (100.0)	

개방형 응답 중에서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으로 주로 지적된 사항은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진정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 진정사실의 비밀보장 등이다(참조. 부록 E: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진정절차도 어렵고 면담시에도 수용자의 대화내용과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조사대상자 80번), “타 수용시설에서 겪어본 바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조사대상자 136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나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너무 힘들고 더 나아가 면접은 더욱 힘든 상황임”(조사대상자 145번), “진정이나 어떤 것을 건의하고자 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다”(조사대상자 381번), “진정절차가 복잡하다”(조사대상자 939번), “처리가 빨랐으면, 진정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조사대상자 945번) 등은 모두 진정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을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진정사실의 비밀보장문제 역시 조사대상자들이 진정장애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한 사항이다. “내가 진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교도소 측에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가볍지 못하다”(조사대상자 706번),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및 면담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설측에 알려지는건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할까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세요”(조사대상자 812번),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진정함이 사동에 하나씩 배치되어 편지봉투와 편지지를 이용해서 봉합하여 인권위원회의 직원이 직접 나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밝은 미래는 보호될 것 같습니다”(조사대상자 992번) 등은 모두

진정내용의 비밀보장을 원하는 수용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기술들이다.

제5절 진정권행사의 방해요인

<표 5-42>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고 할 때에 주위 동료수용자나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진정방해가 있었던 경우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진정방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2명으로 전체의 14.6%이다.

<표 5-42> 진정방해 경험

구 분	빈도	퍼센트
진정방해경험 없 다	711	85.4
있 다	122	14.6
계	833	100.0

<표 5-43>은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시설유형별로 진정방해를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이러한 방해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⁴¹⁾. 시설분류의 경우에, 진정방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2범이상 수용시설이다. 2범이상 수용시설에서 진정방해를 경험한 비율은 17.3%로 미결수용시설(8.5%)이나 초범수용시설(1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41) 구금시설별로는 진정방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P구금시설였다(부록A 표 a-10, 구금시설별 진정방해). P구금시설에서는 응답자의 29.0%가 방해사례를 보고하였다. 그 다음은 O구금시설로 25.5%가 방해사례를 보고하였고, G구금시설의 23.9%, N구금시설의 22.2%, A구금시설의 21.6% 등의 순이다. 반면에 진정방해의 비율이 낮은 시설은 M구금시설(1.8%), I구금시설(2.2%), L구금시설(4.2%), F구금시설(9.3%) 등으로 진정방해를 보고한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다. 이에 반하여, 시설의 수용규모와 진정방해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표 5-43> 시설유형별 진정방해

		없었다	있었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119 (91.5)	11 (8.5)	130 (100.0)	Chi-Square=7.1 (D.F.=2) P<0.05
	초범	214 (87.0)	32 (13.0)	246 (100.0)	
	2범이상	378 (82.7)	79 (17.3)	457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209 (82.9)	43 (17.1)	252 (100.0)	Chi-Square=1.9 (D.F.=2) P=N.S.
	1,000명 이상	337 (86.9)	51 (13.1)	388 (100.0)	
	2,500명 미만	165 (85.5)	28 (14.5)	193 (100.0)	
	2,500명 이상				

<표 5-44>은 진정방해가 있었던 경우에 어떤 사유로 진정하려 했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 사유 중에서 가장 많았던 이유는 교정공무원과의 관계로 이들의 인간적 무시나 차별대우에 대해 진정하려 했지만 방해를 받았다는 사람이 15.6%(1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빈번했던 사유는 의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질병치료나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이유로 진정하려 한 경우가 12.3%(15명)이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폭력행위를 진정하려 한 경우도 6.6%(8명)이었다.

<표 5-44> 진정방해의 경우에 진정사유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방해하는 진정사유		
무응답	33	27.0
의식주 (급식, 수면, 침구의 부족등)	6	4.9
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2	1.6
작업 (작업배치, 상여금지급 등)	6	4.9
접견 및 외부교통 (면회, 서신, 신문열람 등)	6	4.9
의료 (질병 치료, 의료기관 이용 등)	15	12.3
징벌 (신문, 도서 열람 금지, 독거수용 등)	4	3.3
계호 (포승, 수감의 사용, 출입방 검사 등)	3	2.5
교정공무원 관계 (인간적 무시, 차별대우 등)	19	15.6
교정공무원의 폭력행위	8	6.6
동료수용자들과의 생활 (따돌림, 심부름, 폭언 등)	5	4.1
동료수용자들의 폭력행위	1	0.8
기타	14	11.5
계	122	100.0

<표 5-45>는 진정방해가 있었던 경우에 누가 방해를 했는가를 분석한 표이다. 교정 공무원이 진정방해를 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69명으로 진정방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56.6%이었다. 이에 반하여 동료수용자로부터 진정방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명(13.1%)으로 진정방해의 경우에 교정공무원에 의한 방해가 동료수용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45> 진정방해자

진정방해자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무응답	35	28.7
	동료수용자	16	13.1
	교정 공무원	69	56.6
	기타	2	1.6
	계	122	100.0

<표 5-46>은 진정방해가 있었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진정이 방해되었는지를 분석한 표이다. 가족의 회유, 동료수용자의 비난이나 폭행, 진정시 불이익에 대한 암시, 교정공무원의 노골적인 방해 등의 진정방해 방법 중에서 가장 빈번했던 것은 교정공무원에 의한 불이익에 대한 암시로 나타났다. 진정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진정방해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7명으로 진정방해 경험자의 37.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빈번한 진정방해방법은 교정공무원이 진정서 작성양식을 주지 않는 등의 노골적인 방해로 이러한 진정방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명 즉, 20.5%이었다. 그 외에 가족의 회유나 동료수용자의 비난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3명, 6명으로 진정방해 경험자의 2.5%, 4.9%이었다. 따라서 수용자가 진정을 하고자 했을 때에 교정공무원의 불이익 암시와 노골적 방해가 가장 빈번한 진정방해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46> 진정방해방법

진정방해방법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무응답	41	33.6
	가족의 회유	3	2.5
	동료 수용자의 비난이나 폭행	6	4.9
	진정을 했을 시 불이익에 대한 암시	46	37.7
	교정공무원의 노골적 방해	25	20.5
	기타	1	0.8
	계	122	100.0

개방형 응답 중에서 조사대상자들이 구금시설의 진정방해방법으로 가장 빈번히 지적된 사항은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이었다(참조. 부록 F: 진정방해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조사대상자 138번은 “인권위 진정은 수용자에게 유형·무형의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이송일 것입니다. 이송 등과 가석방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점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이송을 지적했으며, 조사대상자 142번도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감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조사대상자 1067번도 “진정을 하면 현재 생활하던 시설에서 더욱더 시설이 나쁘고 어려운 곳으로 꼬리표를 붙여서 이송조치하여 불이익을 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금시설측에서 진정방해를 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자주 거론한 사항은 교정공무원의 노골적 방해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159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하면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교정공무원이 이유를 묻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교정공무원의 개입을 지적했으며, 조사대상자 994번은 “교정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잘못 보낼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반협박을 하는 통에 사용할 수 없어서 불만입니다”라고 교정공무원의 노골적인 압력행사를 지적했고, 조사대상자 1008번은 “그럴 당시 시설측에서 먼저 이런저런 구실로 막습니다. 상의도 하고, 타협도 하고, 충고도 하고, (중략), 하지만 이래도 안될 시에는

또 다른 조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만들고”라고 교정공무원의 진정방해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제6절 진정후 불이익 경험

<표 5-47>는 진정을 한 후에 겪었던 불이익 여부의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진정을 한 이후에 진정인에 대해서 동료수용자의 폭언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5명으로 전체 833명의 7.8%이다. 다음으로 진정인에 대해 동료 수용자의 폭행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명으로 전체의 2.8%이다. 진정인에 대해 동료 수용자의 비난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9명으로 전체의 8.3%이다. 또한 진정인에 대해 동료 수용자의 따돌림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4명으로 7.7%이다. 끝으로 진정후 불이익 경험 중에서 교정공무원들로부터 불이익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77명으로 9.3%이다. 이를 통하여 진정후 진정인이 겪은 불이익으로는 교정공무원에 의한 불이익이 가장 빈번했으며(9.3%), 다음으로 동료수용자의 비난(8.3%), 동료 수용자의 폭언(7.8%) 등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47> 진정 불이익 경험

불이익 경험 내용	무응답	있 다	없 다	계
동료수용자들로부터의 폭언	203 (24.4)	65 (7.8)	565 (67.8)	833 (100.0)
동료수용자들로부터의 폭행	211 (25.3)	23 (2.8)	599 (71.9)	833 (100.0)
동료수용자들로부터의 비난	211 (25.3)	69 (8.3)	553 (66.4)	833 (100.0)
동료수용자들로부터의 따돌림	213 (25.6)	64 (7.7)	556 (66.7)	833 (100.0)
교정공무원들로부터의 불이익	230 (27.6)	77 (9.3)	526 (63.1)	833 (100.0)

<표 5-48>은 시설유형별로 진정을 한 후에 불이익을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겪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동료수용자들로부터의 폭언, 동료수용자들로부터의 폭행, 동료수용자들로부터의 비난, 동료수용자들로부터의 따돌림, 교정공무원으로부터의 불이익 등의 5가지 불이익 항목에 대해서 1) 불이익이 전혀 없었던 경우, 2) 1종류의 불이익이 있었던 경우, 3) 2종류이상의 불이익이 있었던 경우로 재분류하고 시설유형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시설분류와 불이익 경험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이지만 시설수용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시설분류의 경우, 불이익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2범이상 수용시설이다. 2범이상 수용시설에서 1종류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8%이고, 2종류 이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 등으로 미결수용시설(0.8%, 2.3%)이나 초범수용시설(6.5%, 8.5%)에 비해 높게 나타나 2범이상의 시설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수용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42) 구금시설별로 불이익 경험이 적었던 시설은 M구금시설(100.0%), I구금시설(97.8%), K구금시설(97.3%), H구금시설(95.8%) 등이었다(부록A 표 a-11, 구금시설별 진정후 불이익 경험). M구금시설의 경우는 진정후에 불이익을 겪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I구금시설의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97.8%가 불이익이 없었다고 했으며, K구금시설과 H구금시설의 경우도 불이익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95% 이상이었다. 이에 반하여 불이익 경험을 겪거나 목격한 비율이 높은 시설은 P구금시설(71.0%), R구금시설(71.1%), A구금시설(72.5%), N구금시설(75.5%) 등이었다. P구금시설에서는 불이익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0%에 불과하여 29.0%가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3%로 조사되어 P

<표 5-48> 시설유형별 진정후 불이익 경험

		없었음	1종류	2종류 이상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126 (96.9)	1 (0.8)	3 (2.3)	130 (100.0)	Chi-Square=26.7 (D.F.=4) P<0.05
	초범	209 (85.0)	16 (6.5)	21 (8.5)	246 (100.0)	
	2범이상	360 (78.8)	54 (11.8)	43 (9.4)	457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206 (81.8)	22 (8.7)	24 (9.5)	252 (100.0)	Chi-Square=1.7 (D.F.=4) P=N.S.
	1,000명 이상	325	32	31	388	
	2,500명 미만	(83.8)	(8.2)	(8.0)	(100.0)	
	2,500명 이상	164 (85.0)	17 (8.8)	12 (6.2)	193 (100.0)	

<표 5-49>는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진정후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응답한 77명을 대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수용자들과의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명으로 전체 77명의 41.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빈번했던 불이익은 협박과 회유로 이러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으로 전체 77명의 13.0%이다. 또한 징벌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으로 13.0%이다. 따라서 차별대우(41.5%), 협박과 회유(13.0%), 징벌(13.0%) 등이 진정인이 진정권 행사후에 교정공무원으로부터 빈번히 당하는 불이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49> 교정공무원으로부터의 불이익 내용

구금시설은 진정후에 불이익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이익 내용	빈 도	비 고
무 응 답	12	15.6
징 별	10	13.0
폭언 및 폭행	4	5.2
협박 및 회유	10	13.0
다른 수용자들과의 차별적인 처우	32	41.5
기 타	9	11.7
계	77	100.0

진정후 불이익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자기기술응답에서 흔히 지적한 사항은 타 교도소로의 이감, 비방, 가석방에서의 불이익 등이다(참조. 부록 G: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진정을 한 후의 불이익으로 타 교도소로 이감”(조사대상자 57번), “인권위 진정은 수용자에게 유형·무형의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제일은 이송일 것입니다”(조사대상자 138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감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조사대상자 142번), “진정을 하면 시설측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해버린다”(조사대상자 701번), “진정을 하게 되면 수용자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교도소측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이감을 보내는 것 같다”(조사대상자 702번) 등은 모두 진정후의 불이익으로 타 교도소로의 이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57번은 “진정을 한 후 인권위 담당 교정 공무원이 동료수형자에게 저에 대한 비방을 함”이라고 기술하여 교정공무원의 비방을 또다른 불이익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 138번은 “가석방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점이 주의깊게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가석방 심사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거론하였다.

제7절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517호)은 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등, 제7조 진정함의 설치·운용, 제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수용자가 진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에 규정된 구금시설측의 진정권 보장노력이 실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표 5-50>은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과 관련하여 입소시 교육, 입소후 교육, 진정함 설치, 안내서 비치, 진정서 작성의 자유, 집필보고전 작성 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금시설에 입소했을 때에 진정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6명으로 조사대상자의 60.4%이다. 다음으로 구금시설에 입소한 이후로 진정관련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628명(66.0%)이고, 진정함이 눈에 잘 띄는 곳(혹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491명(52.1%)이 진정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인권침해에 관하여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가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448명(49.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시설에서 진정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35.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논의했듯이, 진정여부는 진정의사를 밝히면 즉시 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계신 시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해서는 집필보고전을 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래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229명으로 전체의 25.3%이다.

전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에 규정된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조사대상자의 60.4%가 입소시에 진정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66.0%가 입소후에 진정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52.1%)이 진정함의 위치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49.0%가 안내서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25.3%는 집필보고전 작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앞서 조사대상 구금시설의

진정권제도 운영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 구금시설들은 수용자가 입소할 때에 5분에서 1시간까지 교육시간을 배정하고, 책자나 비디오 또는 방송을 통하여 진정권 관련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입소후에도 고충처리반 및 인권 담당직원이 주도하여 입소시 교육배정 시간과 마찬가지로 5분에서 1시간까지 진정권 관련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금시설의 교육활동에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입소전이나 입소후에 교육이 없었고 진정함의 위치 자체도 모른다고 응답함으로써 구금시설로부터의 지료와 조사대상자의 응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구금시설의 진정권 관련교육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교육경험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다. 두번째, 구금시설의 진정권 관련교육이 짧은 시간에 실시되어 조사대상자들이 진정권제도의 의의와 진정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⁴³⁾. 세번째, 구금시설내에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수용자들은 이동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진정함 활용에 주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을 수 있다. 네번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입소한 수용자의 경우에 입소할 때에 진정권 관련교육을 받지 못해 입소시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을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을 낮게 평가한 원인의 규명은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조사대상자가 교육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정함의 위치를 모르는 실태를 고려할 때에 구금시설의 보다 성의있는 진정권보장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5-50>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

43) 조사대상 구금시설들은 수용자가 입소할 때에 5분에서 1시간까지 진정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였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입소시 신입자 교육, 입소후 정신교육의 일부로 진행됨으로써 실제 인권위진정에 대해 할당되는 시간은 구금시설자료로는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시설측 노력사항	그렇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계
입소시 진정권 관련교육	120 (12.6)	258 (27.0)	576 (60.4)	954 (100.0)
입소후 진정권 관련교육	106 (11.1)	217 (22.9)	628 (66.0)	951 (100.0)
진정함 설치	308 (32.7)	143 (15.2)	491 (52.1)	942 (100.0)
진정권 안내서 비치	221 (24.2)	246 (26.8)	448 (49.0)	915 (100.0)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	274 (31.4)	288 (33.0)	310 (35.6)	872 (100.0)
집필보고전 작성	229 (25.3)	559 (61.8)	117 (12.9)	905 (100.0)

<표 5-51>에서 <표 5-55>은 시설유형과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표 5-51>에서 <표 5-55>를 통하여 시설유형별 진정권 보장노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시설분류와 진정서 작성과의 관계, 시설수용규모와 집필보고전 작성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다른 분석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진정권 보장노력은 시설유형별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시설분류면에서 2범이상 수용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이 다른 시설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2범이상 수용시설의 경우에 입소시 진정권 관련교육⁴⁴⁾이 없었다는 비율이 65.7%로 다른 시설에 비해 가장 높고, 입소후에도 진정권 관련교육⁴⁵⁾이 없었다는 비율이 71.6%로 역시 다른 시설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함의 설치⁴⁶⁾와 진정관련 안내서의 비치⁴⁷⁾를 묻는 질문에서도 57.9%가 진정함의 위치를 모른다,

44) 구금시설별로, 입소할 때에 진정권 관련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비율이 높은 시설은 M구금시설이다(부록A 표 a-12, 구금시설별 입소시 진정권 관련교육). 조사대상자의 67.9%가 입소시에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입소시에 진정권 관련교육이 없었다는 비율이 높은 시설은 O구금시설(87.0%), P구금시설(86.5%) 등이다.

45) 구금시설별로, 입소후에 진정권 관련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M구금시설이다(부록A 표 a-13, 구금시설별 입소후 진정권 관련교육). M구금시설의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69.8%가 입소 이후에도 진정권 관련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입소후에도 진정권 관련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높은 시설은 P구금시설(86.8%), O구금시설(83.3%), G구금시설(87.7%) 등이다.

51.5%가 안내서의 비치에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미결수용시설 다음으로 시설측의 진정권 보장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번째로, 소규모 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이 다른 시설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1,000명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 입소시 진정권 관련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의 비율은 19.4%인데 반하여,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의 시설에서는 9.2% 그리고 2,500명 이상의 시설에서는 10.9%에 불과하여 1,000명 미만의 시설에서 입소시 교육이 보다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소후 교육에서도 1,000명 미만의 시설에서는 17.6%가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의 시설에서는 8.0%만이 그리고 2,500명 이상의 시설에서는 9.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입소후 교육에서도 1,000명 미만의 시설이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1,000명 미만의 시설에서는 진정함의 설치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9.5%로 1,000명 이상 2,500명 미만의 23.6% 그리고 2,500명 이상의 29.7%보다 월등히 높아 진정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진정관련 안내서를 수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하는 부분에서도 1,000명 미만의 시설에서는 32.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나머지 시설들에서는 18.0%(1,000명 이상 2,500명 미만 시설)와 26.3%(2,500명 이상 시설)에 불과하여 진정관련 안내서의 활용에서도 긍정적인 평가이다.

46) 구금시설별로, 진정함의 설치위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M구금시설이다(부록A 표 a-14, 구금시설별 진정함의 설치의견). M구금시설에서는 조사대상자의 92.6%가 진정함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진정함 설치장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진정함 설치장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비율이 높은 시설은 Q구금시설(58.2%), E구금시설(41.1%), C구금시설(40.4%) 등이다. 이에 반하여 G구금시설의 경우는 진정함 설치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80.7%로 다른 시설들에 비해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

47) 구금시설별로, 진정관련 안내서 비치에 잘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시설은 M구금시설(77.8%), E구금시설(42.6%), Q구금시설(33.3%), L구금시설(27.5%) 등이다. 반면에 안내서 비치에 잘 되어있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시설은 P구금시설(73.5%), K구금시설(73.3%), G구금시설(64.3%)의 순이었다(부록A 표 a-15, 구금시설별 인권위 진정관련 안내서 비치와 자유로운 열람).

이외에, 진정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시설은 M구금시설(79.6%), E구금시설(39.6%), L구금시설(38.6%)의 순이며 반면에 진정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시설은 P구금시설(53.1%), G구금시설(50.0%), N구금시설(46.3%)의 순이었다(부록A 표 a-16, 구금시설별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 또한 집필보고전을 내야 한다고 응답에서도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시설은 G구금시설(38.6%), P구금시설(37.1%)의 순이었으며 I구금시설(5.0%)와 N구금시설(10.7%)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20~30% 가량이 집필보고전을 내야한다고 응답하였다(부록A 표 a-17, 구금시설별 진정 신청시 집필보고전 제출).

<표 5-51> 시설유형별 입소시 진정권 관련 교육

		충분하게 받았다	대충 들은 것 같다	전혀 없었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15 (10.2)	49 (33.3)	83 (56.5)	147 (100.0)	Chi-Square=39.2 (D.F.=4) P<0.05
	초범	63 (22.3)	71 (25.2)	148 (52.5)	282 (100.0)	
	2범이상	42 (8.0)	138 (26.3)	345 (65.7)	525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55 (19.4)	68 (23.9)	161 (56.7)	284 (100.0)	Chi-Square=27.4 (D.F.=4) P<0.05
	1,000명 이상	43	117	307	467	
	2,500명 미만	(9.2)	(25.1)	(65.7)	(100.0)	
	2,500명 이상	22 (10.9)	73 (36.0)	108 (53.1)	203 (100.0)	

<표 5-52> 시설유형별 입소후 진정권 관련 교육

		충분하게 받았다	대충 들은 것 같다	전혀 없었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12 (8.3)	32 (22.1)	101 (69.6)	145 (100.0)	Chi-Square=47.6 (D.F.=4) P<0.05
	초범	60 (21.4)	70 (24.9)	151 (53.7)	281 (100.0)	
	2범이상	34 (6.5)	115 (21.9)	376 (71.6)	525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50 (17.6)	74 (26.1)	160 (56.3)	284 (100.0)	Chi-Square=25.9 (D.F.=4) P<0.05
	1,000명 이상	37	92	336	465	
	2,500명 미만	(8.0)	(19.8)	(72.2)	(100.0)	
	2,500명 이상	19 (9.4)	51 (25.2)	132 (65.4)	202 (100.0)	

<표 5-53> 시설유형별 진정함의 설치의견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위치를 모른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28 (19.9)	15 (10.6)	98 (69.5)	141 (100.0)	Chi-Square=77.5 (D.F.=4) P<0.05
	초범	144 (51.4)	45 (16.0)	92 (32.6)	281 (100.0)	
	2범이상	136 (26.1)	83 (16.0)	301 (57.9)	520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140 (49.5)	47 (16.6)	96 (33.9)	283 (100.0)	Chi-Square=63.4 (D.F.=4) P<0.05
	1,000명 이상	108	69	280	457	
	2,500명 미만	(23.6)	(15.1)	(61.3)	(100.0)	
	2,500명 이상	60 (29.7)	27 (13.4)	115 (56.9)	202 (100.0)	

<표 5-54> 시설유형별 인권위 진정관련 안내서 비치와 자유로운 열람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24 (18.6)	28 (21.7)	77 (59.7)	129 (100.0)	Chi-Square=29.7 (D.F.=4) P<0.05
	초범	97 (34.8)	72 (25.8)	110 (39.4)	279 (100.0)	
	2범이상	100 (19.7)	146 (28.8)	261 (51.5)	507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91 (32.3)	75 (26.6)	116 (41.1)	282 (100.0)	Chi-Square=27.0 (D.F.=4) P<0.05
	1,000명 이상	79	111	249	439	
	2,500명 미만	(18.0)	(25.3)	(56.7)	(100.0)	
	2,500명 이상	51 (26.3)	60 (30.9)	83 (42.8)	194 (100.0)	

<표 5-55> 시설유형별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계	비고
시설 분류	미결	34 (28.1)	42 (34.7)	45 (37.2)	121 (100.0)	Chi-Square=2.4 (D.F.=4) P=N.S.
	초범	93 (34.7)	87 (32.5)	88 (32.8)	268 (100.0)	
	2범이상	147 (30.4)	159 (32.9)	177 (36.7)	483 (100.0)	
시설 수용규모	1,000명 미만	102 (37.4)	85 (31.3)	85 (31.3)	272 (100.0)	Chi-Square=14.5 (D.F.=4) P<0.05
	1,000명 이상	111	133	170	414	
	2,500명 미만	(26.8)	(32.1)	(41.1)	(100.0)	
	2,500명 이상	61 (32.8)	70 (37.6)	55 (29.6)	186 (100.0)	

개방형 응답 중에서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지적한 사항은 구금시설측이 진정권제도를 보다 적극적 홍보하고, 진정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히 구비해달라는 요청이다(참조. 부록 H: 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에 대한 자기기술 응답). “수용시설에 처음 입소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떻게 진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진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조사대상자 169번), “수용자가 수용될 당시 진정하는 요령을 잘 알려주었으면 합니다”(조사대상자 325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위치 등을 간단히 주지시켜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조사대상자 678번), “자유롭게 그리고 이런 호소방법이 있다는 것을 시설측이 나서서 홍보하는 등의 제도적 운용”(조사대상자 1076번) 등은 모두 구금시설측이 진정권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 562번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 인권위원에 진정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잘 비치하여 주었으면 함”이라고 진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다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기술하였다(참조. 부록 I: 진정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일부 조사대상자들은 진정권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저희와 같은 수용자들이 인권위원회에 손을 뻗기에는 너무도 멀리에 있지 않나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행정

기관 내에 위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조사대상자 133번), “정신교육 때에는 꼭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면에서 성과 득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교육해주셨으면 합니다”(조사대상자 160번), “각 교도소마다 인권위원회 분실을 운영하여 수용자에게 인권 및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합니다”(조사대상자 182번),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상주”(조사대상자 376번), “자유롭게 진정을 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상주한다던지 편리하게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조사대상자 380번), “각 구급시설에 인권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씩 상주근무자를 두고 감시역할을 하기 바람”(조사대상자 567번), “인권위원회 직원을 소에 1명이라도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진정 및 청원이 잘되게 해주었으면 한다”(조사대상자 790번),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자주 시설에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불시에 찾아주어 무작위적으로 개인상담이나 실태를 자주 했으면 한다...중략...필요하다면 인권위원이 상주하여 더 많은 수용자들과의 접촉이 있었으면 합니다”(조사대상자 927번),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거리에 누구나 건강하고, 바른 마음으로 의논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조사대상자 991번) 등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분실 혹은 지소가 수용자 가까이 설치되어 진정권제도의 교육이 보다 충실해지고, 진정사건이 신속히 처리되고, 수용자들이 시설측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기를 건의하고 있다.

제8절 교정공무원의 심층면접 결과

진정권 제도와 관련하여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들에 대하여 진정권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가 진정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는 진정조사에 필요한 관련기록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 진정권제도가 수용자의 새로운 인권구제책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사회제도 도입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원래 추구했던 기대효과와 함께,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어왔다. 다음은 진정권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인권위 진정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견해는 어떠하며, 시행과정에서 교정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정공무원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주요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1. 수용자들의 진정행위에 대한 인식

수용자의 진정권행사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인식은 이중적이다. 일부에서는 “진정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인권위원회에 대한 교정공무원들의 시각이 많이 변화되었다.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추세라면 우리도 변하자는 생각이다”와 같이 인권위 진정제도를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에 반하여 한 편에서는 “문제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들을 괴롭혀서 자신들의 편의나 위치를 위해 청원이나 진정을 많이 한다”, “충분히 시설자체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진정내용이 대부분 수용자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진정하는 수용자들은 동료수용자들 사이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편이다”, “인권위에 진정함으로써 시설내 상담이 줄어들어 좋긴 하지만 (교도관도) 인간인지라 내 새끼가 다른 애비(인권위)한테 갔으니 너는 네 애비한테 가라는 심정이 생기고 진정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 말 한마디라도 곱게 나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안고 간다” 등과 같이 수용자의 진정행위를 부정적 방향에서 평가하였다.

2. 구금시설의 진정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

심층면접과정에서 집중적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구금시설의 진정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이었다. 진정권제도를 모르는 수용자들이 왜 이토록 많으냐는 연구진의 질문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대답은 일관되었다. “인권위원회 홍보는 많이 되어있다”, “신입교육시 교육한다”, “정신교육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진다” 등과 같이 교정시설에서는 진정권제도에 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권제도를 모르는 까닭은 “수용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혹은 “수용자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나 홍보를 듣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수용자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정권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의 비율이 32.9%에 불과하며 특히 진정하는 구체적 절차나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응답의 비율이 20.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진정권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교정공무원의 지적대로 수용자들의 무관심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의 80% 가량이 구금시설의 홍보교육에 관심이 갖지 못해 진

정권 행사의 구체적 절차를 모른다면 홍보교육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구금시설의 진정권 홍보교육과정에서 수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권위원회 홍보는 많이 되어있다. 방송도 많이 하고 복도에 보면 홍보용지가 많이 붙어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진정에 대해 알고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수용자들이 스스로 알면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측에서 진정권에 대해 들어보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진정이 가장 많은 시설이 우리교도소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권 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방송을 통해 인권위원회 진정에 관한 교육을 하는 데 수용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진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신입교육시 고충처리 직원이 1시간 정도 직접 진정관련 내용을 교육한다. 1년에 1번씩 2주간 정신교육시간에 포함되어져 진정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의사가 밝혀지면 고충처리직원이 직접 진정의사를 밝힌 수용자에게 가서 진정신청을 받는다.”

”시설에서는 인권위 진정에 대한 교육은 잘하고 있으며, 모르고 있는 경우는 수용자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나 홍보를 듣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3. 수용자의 진정사유에 대한 인식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들의 진정사유로 주로 거론한 사항은 두가지이다. 그중의 하나는 구금시설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진정한다는 것이다. 즉, “시설부족, 제도의 미비, 관습”, “독거실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많은데, 독거실은 현저히 부족하다”, “독거수용을 얻기 위해”, “독거수용, 징벌, 의료관련” 등의 사유로 인해 수용자들이 진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교정공무원들이 거론한 두 번째 사유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욱 나은 처우를 받기 위하여 진정권제도를 오용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진정이 교정공무원들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 “문제수들이 교정공무원들을 괴롭혀서 자신들의 편의나 위치를 위해 진정을 많이 한다”,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을 한다” 등의 의견은 진정권제도의 오용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서 <표 5-34>와 <표 5-35>에서 진정경험이 있는 수용자들이 가장 빈번히 지적한 진정사유는 의료문제와 교정공무원의 인간적 무시·차별대우·폭력행위 등이었다. 이를 통하여 교정공무원의 인식과 수용자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부족, 제도의 미비, 관습 등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독거실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많은데, 독거실은 현저히 부족하다. 징벌수용자들과의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독거수용을 원하는데 배방순서에 의해서 배방이 이루어지다보니 수용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진정을 하게 된다. 징벌사동, 미지정사동, 독거사동에서 가장 많이 인권위 진정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 진정이 교정공무원들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 문제수들이 인권위 진정을 많이 하고, 교정공무원들이 인권을 유린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통제가 힘든 수용자들에게 팔을 잡는다거나, 저지를 할 경우에 물리력이 사용되는데, 그걸 가지고 진정을 한다.”

“진정을 하는 수용자들은 정해져 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다른 수용자들보다 차별화된 수형생활의 편의와 이익을 원하는 것이다.”

4. 인권위 설립후 수용자의 진정권행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

수용자의 진정권행사로 인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교정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교정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힘이 50대 50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30대 70인 것 같다”, “교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업관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마찰만 있더라도 수용자들은 진정을 하게 되고 교정공무원은 진정관련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마음고생을 한다”,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 수용자들의 인권은 있지만 교정공무원들의 인

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등의 의견은 진정권제도의 시행에 따라 교정 공무원들의 위축된 심정을 잘 대변한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지적한 또다른 폐해는 업무과중과 예산문제이다. “인권위원회 진정서의 배송요금부터 모두 시설측에서 부담, 인권위측이 요구하는 막대한 자료들에 대한 인쇄비 등의 예산 문제와 시간문제가 심각해졌다”와 같이 구금시설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진정관련 업무가 부과됨으로써 업무부담과 예산문제가 대두하였다는 것이다.

“교정공무원들은 인권위 진정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권유린을 했다고 진정을 하고 조사를 받고 나면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난동을 피우는 문제수들에게 계구를 사용하게 되면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진정을 한다. 국민의 정부가 되고 인권위원회가 생겨나면서 고소도 증가하고, 수용자들의 힘이 커졌다.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힘의 균형이 50대 50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30대 70인 것 같다. 시설에서의 처우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자신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진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교정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마찰만 있더라도 수용자들은 진정을 하게 되고 교정공무원은 진정관련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마음고생을 한다. 진정을 하는 수용자가 계속 하는 경향이 있다. 허위진정과 진정의 남용이 있더라도 제재방법이 없다.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들을 골탕먹이려고 하면 계속해서 진정과 고소·고발을 한다.”

“수용자의 진정에 대한 남발에 대한 제재가 없고, 자신들이 한 진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에게 협박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게 된다. 인권위법에서처럼 진정서 처리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 수용자들의 인권은 있지만 교정공무원들의 인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5. 진정방해에 대한 인식

수용자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진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정공무원은 조사와 함께 수용자의 진정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진정행위를

방해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진정방해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전반적인 의견은 수용자의 진정행위를 방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방해가 없을 뿐더러 생기기도 어렵다, 진정후 이송을 당했다는 경우는 진정하기 전에 이송계획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연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송을 하지는 않는다”, “교정공무원이 진정방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등과 같이 교정공무원에 의한 진정방해는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공무원에 의한 진정방해는 없지만 “수용자들간의 문제를 진정하려 할 때에 동료수용자들에게 진정방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동료수용자에 의한 진정방해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심층면접과정에서 진정방해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강조했지만, 서울 근교의 한 구금시설에 부착된 문구는 심층면접과정에서의 명시적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시설에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 업무처리지침 중 <별표 1> 신입자 교육시 고지사항에 명시된 “허위사실로 진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성 문구가 볼드체로 부착되어 있었다. 이 문구는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심층면접과정에서 표현된 명시적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6. 진정권제도의 보완책에 대한 인식

심층면접과정에서 교정공무원들이 진정권제도의 보완책으로 흔히 거론한 사항은 “인권위원회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제한적인 진정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남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와 같이 진정남발과 악의적 진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정절차의 개편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진정을 원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교정공무원과의 상담이란 중간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심제로 진정사유가 있을 경우에 1차는 시설내 고충처리반에서 상담하고, 2차는 교정청에서 담당하고, 그것이 안될 때에 3차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의 방법을 제안한다” 등은 현재와 같이 수용자들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하는 절차에서 교정공무원이 중간에 개입하는 절차로 진정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학력 수용자도 이해하기 쉽고,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정내용에 대한 진정교육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진정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정할 수 있는가를 보다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관련기관들이 주목해야 할 의견이다.

제9절 요약

1. 진정권제도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도가 낮다.

연구결과 진정권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9%에 불과하고 모른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9.5%이다. 구급시설에서는 시설별로 진정권행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있다고 하지만 진정권제도를 잘 아는 응답자는 3명당 1명에 불과하고 5명당 1명은 이러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수용자들이 진정권제도를 인지하는 수준이 낮다.

진정절차에 대한 수용자 인지도는 더욱 낮았다. 구체적인 진정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경우는 20% 내외이었고 모른다는 경우가 40% 이상으로 진정절차에 대한 수용자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징벌중에도 진정서의 작성이나 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은 65.3%로 진정절차에 관한 항목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진정권제도 인지도를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교차분석하였을 때에 교육수준이 낮거나 수용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용자의 경우에 인지도가 더욱 낮은 경향이였다.

2. 진정권행사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고, 수용자의 두려움이 크다.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진정행위란 타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고 32% 가량이 진정에 앞서 시설책임자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를 통하여 수용자들이 진정권행사를 자기만의 편의를 위하거나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에 무조건 진정을 남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43.5%는 진정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진정효과에 대한 기대는 낮은 수준이었다.

진정권행사와 관련한 두려움의 경우에, 응답자의 39.0%가 진정을 하면 구금시설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많은 수의 응답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2범이상 수용시설들에서 두려움을 토로한 응답자는 무려 44.7%에 달하였다.

3. 의료문제와 교정공무원과의 관계가 주요 진정사유이다.

서면진정의 경우에 의료문제와 관련한 사유로 진정한 응답자는 진정경험자의 23.8%이었고, 교정공무원에 의한 폭력행위와 차별행위와 관련한 사유로 진정한 응답자가 21.4%이었다. 면전진정의 경우에는 의료문제를 사유로 진정한 응답자가 진정경험자의 35.7%이었고 교정공무원에 의한 폭력행위와 차별행위를 사유로 진정한 응답자가 16.6%이었다. 구금시설의 수용자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의료문제와 교정공무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4. 진정방법의 무지와 진정절차의 복잡·불편함이 빈번한 진정장애 요인이다.

진정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권행사에 장애를 겪었거나 주위에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경우가 295명으로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의 35.5%이었다. 또한 진정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진정하는데 장애가 있었거나 목격한 사례도 36.4%이었다.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1/3 이상이 진정방법의 무지와 진정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을 겪거나 목격하는 추세로, 수용자들이 진정권행사를 위해서 진정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진정절차를 간편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거나, 진정후의 보복이 두려워 진정장애가 있었던 경우도 26.0%와 23.9%로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1/4가량이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5. 진정방해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경험이 14.6%에 달한다.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다는 833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주위 동료수용자나 교정공무원 으로부터 진정방해를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이러한 방해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4.6%이었다. 진정방해로 인해 진정을 하지 못한 경우 원래 진정하고자 했던 내용 중 교정공무원의 폭력행위와 차별행위로 인해 진정이 방해된 경우는 전체 방해사례의 22.2%로 가장 많았으며, 진정을 방해한 사람은 교정공무원이 56.6% 그리고 동료수용자가 13.1%이었다.

그리고 진정방해방법의 경우에 진정서 작성양식을 주지 않는 등 교정공무원의 노골적인 방해가 20.5%, 진정후의 불이익 암시를 통한 방해가 37.7% 등이었다. 이를 통하여 교정공무원이 진정을 방해할 때에 노골적인 방해보다 은밀한 방법을 통한 방해가 더욱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일부 구금시설에서의 진정후의 불이익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경험의 비율이 높다.

구금시설 전체적으로 진정후에 불이익을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겪는 것을 목격한 응답자의 비율이 10% 미만이지만, 일부 구금시설의 경우에 진정후에 불이익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25% 이상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수용자들이 진정후에 보복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사후보호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가 낮다.

응답자의 60.4%가 입소시에 진정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66.0%가 입소후에도 진정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응답자의 52.1%가 진정함이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정안내서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는가

에 대해서도 49.0%가 그렇지 않다고 했으며,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자도 35.6%이었다. 응답자의 2/3 가량이 입소후에 진정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금시설측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6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구금시설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들의 자유로운 진정권행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진정권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법적 측면,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등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

○ 행형법과 인권위원회법의 법률적 상충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형법 제33조의 제1항 집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형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수용자의 서신과 문서 등의 집필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에서는 '수용자의 서신과 문서등의 집필은 집필실·거실 또는 작업장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3항에서는 '집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에서는 집필을 위하여서는 소

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집필의 시간은 일요일·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그 장소 또한 지정된 장소로 제한하지만⁴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이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부분이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행형법에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불이익 금지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는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불이익을 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불이익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진정권제도를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정후 불이익을 질문했을 때에, 교정공무원에 의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9.2%이었다(참조. <표 5-47>).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차별대우, 협박과 회유, 징벌 등이 빈번한 불이익 유형으로 지적되었다(참조. <표 5-49>). 이러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후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와 관련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표준화된 교육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정권제도와 절차에 대한 수용자의 낮은 인지도에 비추어,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진정권제도의 존재와 이용방법을 수용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사항일 것이다.

48)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 업무처리’ 제8조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서 작성을 일요일, 휴일, 또는 휴게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진정권제도와 절차에 관한 입소시 교육과 입소후 교육은 구금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진정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금 시설별로 일부 시설에서는 교육담당자가 당직교감이나 관구교감이 담당하고, 다른 시설에서는 고층처리반이 담당하여 진정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시간도 일부 시설에서는 5분에 불과하고 다른 시설에서는 20분, 또 다른 시설에서는 1시간 등 서로 달리 배정되어 있다. 교육방법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개별고지의 형태로 교육하고 다른 시설에서는 비디오, 게시물을 통하고 다른 시설에서는 집합교육의 형태로 교육하고 있다.

현재의 체계적이지 못한 입소시 교육과 입소후 교육을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 시간, 교육내용, 교육담당자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진정권제도가 수용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되고 이에 따라 모든 수용자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진정권제도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개선방안을 조사하였을 때(참조: 부록, 수용자의 제도개선사항) 많은 수용자들이 진정을 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가능한 그들과 가까이 있기를 요구한다. 신속한 진정처리와 수용자들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하여 전국 교정청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진정방해에 대한 내부동조체계(internal compliance system)가 구성되어야 한다.

교정공무원의 경우에 진정방해란 있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수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15% 가량이 진정방해를 겪거나 주위에서 목격했다고 응답하여 교정공무원의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진정방해의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 대신에 본 연구는 진정방해의 가능성까지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구금시설별로 내부동조체계의 구성을 제안한다. 나아가 방해사례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구

제하여 소속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행사에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내부동조체계의 구성은 지금처럼 구금시설측은 진정대상이나 진정처리에 필요한 기록제공 등의 피동적 역할에 그치는데, 내부적으로 진정방해를 규제하는 역할이 부여됨으로써 진정권제도의 정착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신설한 인권반 제도도 내부동조기제를 통해 일반시민의 인권신장과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구체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경찰청은 2003년 5월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인권반을 설치하고 경위급의 인권담당관을 지정하여 경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신장시키고자 한다. 이에 의하면 인권반과 인권담당관은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등 인권업무를 전담하며, 인권상담실을 운영하여 경찰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며, 인권치안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경찰의 인권시책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금시설에서도 경찰청의 인권반이나 인권담당관과 같은 내부동조기제를 운영하여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시설 분위기를 개선하고, 진정방해나 진정장애를 시도하는 교정공무원을 규제하며, 진정권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수용자들이 진정과정에서의 불편함을 불식시키는 등 교정공무원 스스로 수용자 인권보호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구금시설의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 구금시설은 진정권제도, 진정관련 태도, 진정장애, 진정후 구금시설로부터의 불이익, 진정권 보장노력 등 대부분의 분석에서 연구결과가 긍정적 방향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자유로운 진정권 행사를 위하여 현행의 강압적인 대규모 시설환경을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관계가 보다 인간적일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 진정관련 교육에서 인권침해의 유형에 대한 개괄적 소개가 있어야 한다.

수용자들이 진정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인권침해의 경우와 차별행위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차별행위의 경우는 진정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예시되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경우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권침해의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광범위하게 진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어떠한 것들이 진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요구하듯이, 인권침해란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라 수용자들이 진정권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진정관련 교육에서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수용자의 진정권행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관리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수용자의 경우에 교정공무원과 매일 대면하기 때문에 이들을 피진정인으로 진정하려 할 때에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차별대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진정후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조사대상자가 약 40%를 차지하였다.

진정권행사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항은 특별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이다. 특별관리프로그램은 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차별대우가 있는지를 집중관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진정을 한 수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관심 대상자가 됨으로써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일반 수용자의 경우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간접경험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진정권행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경험이 있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 처우 여부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진정권 행사에 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진정신청사실에 대한 비밀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용자들의 자기기술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금시설 수용자의 입장에서 교정공무원에게 서면진정이나 면전진정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들로부터 진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진정하기는 쉽지 않다. “사방담당자에게 진정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가? 찍힐 것이 뻔한데”는 진정신청에 대한 구금시설 수용자의 심리적 장벽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진정신청사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수용자의 요구는 자기기술보고 뿐만 아니라 진정권행사에 대한 태도, 진정후 불이익 경험 등에서도 계량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이 교정공무원을 거쳐야 진정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진정접수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정함을 구금시설의 고충처리반에서 주로 관리하는데 이러한 형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주 1회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진정권행사에 대한 교정공무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심층면접에서 나타났듯이 수용자의 진정권행사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의견은 중층적이다. 일부에서는 진정권행사를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수단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특혜를 얻기 위하거나, 교정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하여, 혹은 동료 수용자와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의 행위로 진정권행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에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수용자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구금시설 연구모임, 2001. 구금시설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2002. 교정관련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가인권위원회 기사모음집 1.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가인권위원회 기사모음집 2.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 보고서.
- 권영성, 2003.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동희, 2003. 행정법 I (제9판), 박영사.
- 문준조, 2000.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박미숙, 2000.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2002.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재윤, 1996.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국민대학교출판부.
- 법무부, 2000. 각국 인권위원회 비교, 법무부.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2002. 교정관련 소송사례집, 법무연수원.
- 석종현, 2000. 일반행정법 (상), 삼영사.
- 오영근, 2003.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 이순래, 1998. “소년전환처우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학당 명형식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이순래, 1999.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 이창현·지영림, 1999. 진정서·탄원서 작성의 모든 것, 청림출판.
- 이호중, 1997. 형법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웅, 2003.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 장규원, 1995.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 2001. “교정행정의 미래”, 교정연구 (제12호), 한국교정학회.
- 장태주, 2003. 행정법개론, 현암사.
- 정진수, 2002.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진연, 2000. “수형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와 법적 구제”, 교정 (제11호), 교정협회.
 조규창, 1998. 로마형법, 고려대학교출판부.
 조용환, 1993. “세계인권회의참가보고서”, 인권보고서 (제8집), 대한변호사협회.
 조용환, 2000.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조효제 · 이승호 · 한영수 · 이상희, 2002. 인권길라잡이 (교정편), 국가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2002.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사계절.
 토마스 버겐탈/양건 · 김재원 옮김, 1992. 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한영수, 2001.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 국외문헌과 웹사이트

Calliess, R.-P./ H. Müller-Dietz, 2000. Strafvollzugsgesetz, C.H.Beck.
 Champion, Dean J., 2001.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Prentice Hall.
 Fairchild, E., 1993.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s, Wadsworth.
 Friedrich, Walther J., 1990. Rechtskunde für jedermann, C.H.Beck.
 Hassemer, W./ J.P. Reemtsma, 2002. Verbrechensopfer, C.H.Beck.
 Kaiser, G./ H.-J. Kerner/ H. Schöch, 1997. Strafvollzug, 4.Aufl., C.F.Müller.
 Litwinski, H./ W. Bublies, 1989. Strafverteidigung im Strafvollzug, C.H.Beck.
 Smith, Christopher E., 2000. Law and Contemporary Corrections, Wadsworth.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미국교정협회 www.correctionals.com/aca
 법제처 www.moleg.go.kr
 사이버교정연구소 <http://members.tripod.lycos.co.kr/bobesum>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일본감옥인권센터 www.jca.ax.apc.org/cpr
 일본법무성 www.moj.go.jp
 재소자인권협의회 www.prisonrights.org
 형사학/피해자학교실 www.prochang.com

부 록 1

Interview Guide

(시설공무원 심층면접 가이드)

1. 시설공무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연령, 근무경력, 직급 등)
2. 수용자의 인권신장에 필요한 사항
 - 제도적 장치의 측면
 - 인력 및 시설의 측면
 - 교정문화의 측면
3. 시설공무원의 수용자 진정행위에 대한 견해
 - 절차적 권리의 행사
 - 실질적 권리의 행사
 - 시설공무원의 재량권 침해
 - 부적응자의 불만 표출
4.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 시설공무원의 인사승진 측면
 - 시설의 질서유지 측면
 - 수용자의 내부관계 측면
5. 수용자의 진정을 방해하는 이유
6. 바람직한 수용자 고충처리의 방향
 - Ombudsman 방식
 - 수용자 불평처리 위원회
 - 중재
 -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개입
7. 국가인권위원회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

부 록 2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실태와 진정권 보장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이러한 연구의 하나로, 구금시설내에서 진정권 보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앞으로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연구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문문항들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응답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개인과 현재 계신 시설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익명으로 통계처리되므로 개인신상이나 시설에 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월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 빌딩, 전화: 02-2125-9700)

7.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1) 결혼을 하지 않았다 (미혼)
- 2)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동거를 했다 (동거)
- 3) 결혼해서 함께 살았다 (기혼)
- 4) 결혼했으나 따로 살았다 (별거)
- 5)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이혼)
- 6) 결혼했으나 배우자가 죽었다 (사별)

8.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재학이나 중퇴를 포함) 다니셨습니까?

- 1) 무학
- 2) 초등학교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5) 전문대
- 6) 대학교 졸업이상

9. 현재 시설에 수용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상일 경우는 주된 유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살인 (살인, 존속살인, 촉탁살인 등)
- 2) 강도 (강도, 강도상해,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 3) 강간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강간치사·상 등)
- 4) 약취·유인
- 5) 절도
- 6) 사기
- 7) 폭력
- 8) 마약류 사용 및 거래
- 9) 범죄단체조직
- 10) 기타 (무엇: _____)

10. 현재 시설에 계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11. 귀하께서는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 1) 없다
- 2) 1~2번
- 3) 3~4번
- 4) 5번 이상

12. 귀하는 현재의 시설에 수용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1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12-a. 이전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와 지금까지의 교정시설 수용기간을 적어주십시오. ()회 총 ()년 ()개월

16. 시설에 계시면서 어려운 문제는 누구와 주로 상의하는 편입니까?

- 1) 교회직 공무원
- 2)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 3) 종교위원 또는 외부의 종교관계자
- 4) 교화위원 또는 외부의 관계인사
- 5)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동료 수용자
- 6) 접견, 서신 등을 통해 자주 대하는 가족
- 7) 기타()
- 8) 지금까지 상의해본 적이 없다

II.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귀하가 알고 계신 내용을 질문하는 문항입니다.

※ 참고로 진정하는 방법에는 서면진정과 면진진정이 있습니다.

서면진정: 수용자가 직접 종이에 진정내용을 기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면진진정: 수용자의 방문요청에 따라 시설을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앞에서 직접 진정을 하는 방법

17. 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 2) 대충 알고 있다
- 3) 모른다

17-a.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 진정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 2) 대충 알고 있다
- 3) 모른다

18.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시설공무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 필기도구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___ 1) 잘 알고 있다
 ___ 2) 대충 알고 있다
 ___ 3) 모른다
19. 진정서가 작성되면, 시설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___ 1) 잘 알고 있다
 ___ 2) 대충 알고 있다
 ___ 3) 모른다
20.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과 직접 만나서 진정(면전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___ 1) 잘 알고 있다
 ___ 2) 대충 알고 있다
 ___ 3) 모른다
21.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앞에서 직접 진정을 하는 경우(면전진정) 시설측 공무원이 입회하거나 진술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___ 1) 잘 알고 있다
 ___ 2) 대충 알고 있다
 ___ 3) 모른다
22.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앞에서 직접 진정을 하는 경우(면전진정) 시설측 공무원이 면담내용을 듣거나, 녹음 또는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___ 1) 잘 알고 있다
 ___ 2) 대충 알고 있다
 ___ 3) 모른다
23.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진정서나 서면을 시설측 공무원이 읽어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___ 1) 잘 알고 있다
 ___ 2) 대충 알고 있다
 ___ 3) 모른다

24. 시설측에서는 수용자를 최초로 수용할 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진정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 2) 대충 알고 있다
- 3) 모른다

25. 시설측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면진정)을 하기 위한 진정함을 설치하고 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 2) 대충 알고 있다
- 3) 모른다

관

26. 징벌혐의로 조사 중에 있거나 징벌 중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한 진정서는 작성 혹은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 2) 대충 알고 있다
- 3) 모른다

위

Ⅲ.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질문하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의 ()안에 V표를 해주십시오.

- | | (1)
그렇다 | (2)
그저 그렇다 | (3)
아니다 |
|--|------------|---------------|------------|
| 27-a. 시설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진정을 통한 개인의 불편 해소는 참아야 한다. | () | () | () |
| 27-b.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보다 시설내 책임자와 상담하는 것이 올바르다. | () | () | () |
| 27-c.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은 시설공무원에 대한 인간적 배신이다. | () | () | () |
| 27-d.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보다 동료와 상의하는 것이 낫다. | () | () | () |
| 27-e. 진정을 하면 시설측으로부터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 () | () | () |

- 27-f. 진정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 () ()
- 27-g. 힘들더라도 나 혼자만 참으면
모두가 편안해진다. () () ()
- 27-h.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진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IV. 다음은 귀하가 시설생활 중에 겪을 수 있는 고충사항을 질문하는 문항입니다.

- | | (1) | (2) | (3) | (4) | (5) |
|---|-----------|------------|------|------------------|-----------------|
| | 아주
그렇다 | 대부분
그렇다 | 보통이다 | 대부분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 28-a. 급식량과 급식내용은 규정대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 () | () | () | () | () |
| 28-b. 식사시간은 규정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 () | () | () | () | () |
| 28-c. 수면시간은 규정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 () | () | () | () | () |
| 28-d. 운동기회나 운동시간은 규정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 () | () | () | () | () |
| 28-e. 목욕기회나 목욕시간은 규정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 () | () | () | () | () |
| 28-f. 영치금 사용에 만족하십니까? | () | () | () | () | () |
| 28-g. 신체·의류·휴대품·거실에 대한
검사는 규정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 | () | () | () | () |
| 28-h. 작업장 출퇴근 때의 검사는
규정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 | () | () | () | () |
| 28-i. 의류·침구·기타 생활용품은
규정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 () | () | () | () | () |
| 29-a. 면회의 횟수는 규정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 () | () | () | () | () |

	(1)	(2)	(3)	(4)	(5)
	아주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보통이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9-b. 면회시간은 규정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	()	()	()	()
29-c. 면회장소는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	()	()	()
29-d. 편지의 발신과 수신은 규정에 맞게 할 수 있습니까?	()	()	()	()	()
29-e. 전화통화는 규정에 맞게 할 수 있습니까?	()	()	()	()	()
29-f. 종교생활에 만족합니까?	()	()	()	()	()
29-g. 신문·도서는 규정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까?	()	()	()	()	()
29-h.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규정대로 시청할 수 있습니까?	()	()	()	()	()
30-a.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는 규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	()	()	()	()
30-b.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절차는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	()	()
30-c.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만족합니까?	()	()	()	()	()
31-a. 징벌은 규정대로 부과되고 있습니까?	()	()	()	()	()
31-b. 징벌이 차별없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	()	()	()	()
31-c. 수갑이나 포승은 규정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	()	()	()
31-d. 시설공무원의 과도한 물리력 또는 가혹행위가 있습니까?	()	()	()	()	()
31-e. 독거수용은 규정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	()	()	()
	(1)	(2)	(3)	(4)	(5)

- | | 아주
그렇다 | 대부분
그렇다 | 보통이다 | 대부분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
| 32-a. 시설의 생활수칙 및
규율은 합리적입니까? | () | () | () | () | () |
| 32-b. 생활수칙 및 규율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까? | () | () | () | () | () |
| 32-c. 생활수칙이나 규율이
철저하게 집행됩니까? | () | () | () | () | () |
| 32-d. 시설공무원이
친절하고 자상합니까? | () | () | () | () | () |
| 32-e. 시설공무원이 귀하를
인간적으로 대우합니까? | () | () | () | () | () |
| 32-f. 시설공무원이 다른 사람에 비해
귀하를 가혹하게 대우합니까? | () | () | () | () | () |
| 32-g. 시설공무원의 환심을
사 두는 것이 필요합니까? | () | () | () | () | () |
| 33. 현재 시설에서 소년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34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 | | | |



	(1) 아주 그렇다	(2) 대부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부분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33-a. 현재 배정받은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	()	()
33-b. 교육시간이 규정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	()	()	()	()
33-c. 교육내용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	()	()
33-d. 교육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33-e.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4. 현재 시설에서 작업을 배정받고 계십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35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1) 아주 그렇다	(2) 대부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부분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34-a. 배정받은 작업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	()	()	()
34-b. 작업배치는 적절합니까?	()	()	()	()	()
34-c. 작업상여금에 만족합니까?	()	()	()	()	()
34-d. 작업량에 만족합니까?	()	()	()	()	()
34-e. 작업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34-f. 어떤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5. 전체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___ 1) 아주 고통스럽다

___ 2) 그저 그렇다

___ 3)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다음은 현재의 시설에 계시면서 귀하가 겪으시는 어려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가 느끼시는 어려움 혹은 고통의 정도를 다음의 예와 같이 체크해주시시오.

예) 의식주와 관련하여 매우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경우:

36-a. 의식주 문제 (급식, 수면, 침구의 부족 등)

매우 고통스럽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V		
1	2	3
4	5	6
7		

36-a. 의식주 문제 (급식, 수면, 침구의 부족 등)

매우 고통스럽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1	2	3
4	5	6
7		

36-b. 복지 문제 (면회, 서신, 신문열람 등)

1	2	3	4	5	6	7
---	---	---	---	---	---	---

36-c. 후생 문제 (질병 치료, 의료기관 이용 등)

1	2	3	4	5	6	7
---	---	---	---	---	---	---

36-d. 징계 문제 (신문·도서 열람 금지, 독거수용 등)

1	2	3	4	5	6	7
---	---	---	---	---	---	---

36-e. 계호 문제 (포승·수갑의 사용, 출입방 검사 등)

1	2	3	4	5	6	7
---	---	---	---	---	---	---

36-f. 시설공무원 관계 (인간적 무시, 차별대우 등)

1	2	3	4	5	6	7
---	---	---	---	---	---	---

36-g. 시설공무원의 폭력행위

1	2	3	4	5	6	7
---	---	---	---	---	---	---

41. (진정을 하셨을 경우에) 서면으로 진정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___ 1) 의식주 (급식, 수면, 침구의 부족 등)
- ___ 2) 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 ___ 3) 작업 (작업배치, 상여금 지급 등)
- ___ 4) 복지 (면회, 서신, 신문열람 등)
- ___ 5) 후생 (질병 치료, 의료기관 이용 등)
- ___ 6) 징계 (신문·도서 열람 금지, 독거수용 등)
- ___ 7) 계호 (포승·수갑의 사용, 출입방 검사 등)
- ___ 8) 시설공무원 관계 (인간적 무시, 차별대우 등)
- ___ 9) 시설공무원의 폭력행위
- ___ 10) 동료수용자들과의 생활 (따돌림, 심부름, 폭언 등)
- ___ 11) 동료수용자들의 폭력행위
- ___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2. (진정을 하셨을 경우에) 면담 신청을 통한 진정은 몇 번 하셨습니까?

약 _____ 회

43. (진정을 하셨을 경우에) 면담 신청으로 진정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___ 1) 의식주 (급식, 수면, 침구의 부족 등)
- ___ 2) 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 ___ 3) 작업 (작업배치, 상여금 지급 등)
- ___ 4) 복지 (면회, 서신, 신문열람 등)
- ___ 5) 후생 (질병 치료, 의료기관 이용 등)
- ___ 6) 징계 (신문·도서 열람 금지, 독거수용 등)
- ___ 7) 계호 (포승·수갑의 사용, 출입방 검사 등)
- ___ 8) 시설공무원 관계 (인간적 무시, 차별대우 등)
- ___ 9) 시설공무원의 폭력행위
- ___ 10) 동료수용자들과의 생활 (따돌림, 심부름, 폭언 등)
- ___ 11) 동료수용자들의 폭력행위
- ___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50. (진정방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진정을 방해하였습니까?

- 1) 가족의 회유
- 2) 동료 수용자의 비난이나 폭행
- 3) 진정을 했을 시 불이익에 대한 압시
- 4) 시설공무원 노골적 방해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II. 다음은 시설측에서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51. 귀하는 현재의 시설에 처음 입소하였을 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을 충분히 교육받았습니까?

- 1) 충분히 교육받았다
- 2) 대충 들은 것 같기는 하다
- 3) 전혀 없었다

52. 귀하는 입소 이후에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 1) 충분히 교육받았다
- 2) 대충 들은 것 같기는 하다
- 3) 전혀 없었다

5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눈에 잘 띄는 곳(혹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습

- 1)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 2)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 3) 진정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5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진정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까?

- 1)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 2)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 3)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
- 4) 진정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55.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기재한 내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혹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

- 1) 그렇다
- 2) 보통이다
- 3) 아니다

56. 현재 계신 시설에서 진정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___ 1) 그렇다
 ___ 2) 보통이다
 ___ 3) 아니다
57.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원과의 면담(면전진정)을 신청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 경우 시설측에서 허가해 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___ 1) 그렇다
 ___ 2) 잘 모르겠다
 ___ 3) 아니다
58. 현재 계신 시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해서는 집필보고전을 내야 합니까?
 ___ 1) 그렇다
 ___ 2) 잘 모르겠다
 ___ 3) 아니다
59.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의 내용을 시설측이 열람하고 있습니까?
 ___ 1) 그렇다
 ___ 2) 잘 모르겠다
 ___ 3) 아니다
60.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내는 문서나 편지가 당사자에게 신속히 전달됩니까?
 ___ 1) 그렇다
 ___ 2) 보통이다
 ___ 3) 아니다
61.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과의 대화는 비밀보장이 됩니까?
 ___ 1) 되고 있다
 ___ 2) 보통이다
 ___ 3) 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이유: _____)
62.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과 대화하는 면담실은 밖에서 계호하고 있는 시설측 공무원의 얼굴이 보입니까?
 ___ 1) 보인다
 ___ 2) 잘 모르겠다
 ___ 3) 보이지 않는다
63.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과 대화하는 면담실에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___ 1) 잘 되어 있다
 ___ 2) 보통이다
 ___ 3) 전혀 되어있지 않다

64.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과 면담하는 시간은 충분합니까?

- 1) 충분하다
- 2) 보통이다
- 3) 부족하다

65.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시설측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 1) 그렇다
- 2) 모르겠다
- 3) 아니다

66. 현재 계신 시설은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보통이다
- 3) 아니다

VIII. 다음은 진정을 한 후에 겪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주위에서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거나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67. 진정을 한 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언을 들었거나 또는 폭언 듣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을

- 1) 예
- 2) 아니오

68. 진정을 한 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폭행 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을

- 1) 예
- 2) 아니오

69. 진정을 한 후에, 다른 수용자로부터 생활부적응자라는 비난을 받았거나 또는 비난을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70. 진정을 한 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거나 또는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을

- 1) 예
- 2) 아니오

71. 진정을 한 후에, 시설공무원 및 직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___ 1) 예

___ 2) 아니오

72. 진정을 한 후 시설 공무원 및 직원으로부터 당한 불이익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___ 1) 징벌

___ 2) 폭언 및 폭행

___ 3) 협박 및 회유

___ 4) 다른 수용자들과의 차별적인 처우

___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3. 구금시설의 수용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74.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데에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앞으로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인권보호 절차의 모색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부 록 A

<표 a-1> 구금시설별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퍼센트)

시 설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모른다	계
A구금시설	14 (21.2)	37 (56.1)	15 (22.7)	66 (100.0)
B구금시설	28 (46.7)	28 (46.7)	4 (6.6)	60 (100.0)
C구금시설	15 (25.9)	30 (51.7)	13 (22.4)	58 (100.0)
D구금시설	13 (27.1)	23 (47.9)	12 (25.0)	48 (100.0)
E구금시설	30 (49.2)	24 (39.3)	7 (11.5)	61 (100.0)
F구금시설	22 (40.7)	21 (38.9)	11 (20.4)	54 (100.0)
G구금시설	11 (18.6)	35 (59.3)	13 (22.1)	59 (100.0)
H구금시설	17 (28.3)	30 (50.0)	13 (21.7)	60 (100.0)
I구금시설	18 (31.0)	28 (48.3)	12 (20.7)	58 (100.0)
J구금시설	17 (28.3)	30 (50.0)	13 (21.7)	60 (100.0)
K구금시설	16 (28.1)	21 (36.8)	20 (35.0)	57 (100.0)
L구금시설	19 (33.9)	29 (51.8)	8 (14.3)	56 (100.0)
M구금시설	40 (71.4)	16 (28.6)	0 (0.0)	56 (100.0)
N구금시설	14 (24.1)	31 (53.5)	13 (22.4)	58 (100.0)
O구금시설	14 (24.6)	33 (57.9)	10 (17.5)	57 (100.0)
P구금시설	11 (23.9)	20 (43.5)	15 (32.6)	46 (100.0)
Q구금시설	20 (32.8)	33 (54.1)	8 (13.1)	61 (100.0)
R구금시설	22 (36.7)	23 (38.3)	15 (25.0)	60 (100.0)

Chi-Square=96.04 (D.F.=34) P<0.05

<표 a-2> 구금시설별 진정절차 인지도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평 균	표 준 편 차	계
A구금시설	24.2	5.7	64
B구금시설	21.9	7.1	59
C구금시설	23.5	6.0	58
D구금시설	24.0	6.9	46
E구금시설	20.7	6.9	61
F구금시설	23.4	5.7	52
G구금시설	25.2	5.5	59
H구금시설	24.1	6.0	57
I구금시설	24.0	6.8	53
J구금시설	25.0	6.2	60
K구금시설	26.3	5.6	53
L구금시설	22.9	5.9	56
M구금시설	15.7	5.4	56
N구금시설	25.7	4.6	57
O구금시설	23.4	5.4	55
P구금시설	25.8	5.3	41
Q구금시설	23.7	5.8	60
R구금시설	23.1	6.2	59
계	23.4	6.4	1006

<표 a-3> 구금시설별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계
A구금시설	33 (54.1)	19 (31.1)	9 (14.8)	61 (100.0)
B구금시설	21 (36.2)	20 (34.5)	17 (29.3)	58 (100.0)
C구금시설	25 (43.1)	19 (32.8)	14 (24.1)	58 (100.0)
D구금시설	19 (43.2)	17 (38.6)	8 (18.2)	44 (100.0)
E구금시설	22 (36.7)	21 (35.0)	17 (28.3)	60 (100.0)
F구금시설	20 (37.7)	18 (34.0)	15 (28.3)	53 (100.0)
G구금시설	30 (50.9)	18 (30.5)	11 (18.6)	59 (100.0)
H구금시설	21 (38.9)	17 (31.5)	16 (29.6)	54 (100.0)
I구금시설	21 (42.9)	18 (36.7)	10 (20.4)	49 (100.0)
J구금시설	33 (55.0)	13 (21.7)	14 (23.3)	60 (100.0)
K구금시설	21 (39.6)	18 (34.0)	14 (26.4)	53 (100.0)
L구금시설	23 (41.8)	18 (32.7)	14 (25.5)	55 (100.0)
M구금시설	7 (12.7)	17 (30.9)	31 (56.4)	55 (100.0)
N구금시설	25 (44.6)	19 (33.9)	12 (21.5)	56 (100.0)
O구금시설	29 (51.8)	21 (37.5)	6 (10.7)	56 (100.0)
P구금시설	22 (56.4)	5 (12.8)	12 (30.8)	39 (100.0)
Q구금시설	28 (45.9)	19 (31.1)	14 (23.0)	61 (100.0)
R구금시설	31 (51.7)	11 (18.3)	18 (30.0)	60 (100.0)

Chi-Square=67.24 (D.F.=34) P<0.05

<표 a-4> 구금시설별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태도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계
A구금시설	30 (46.2)	15 (23.1)	20 (30.7)	65 (100.0)
B구금시설	22 (37.9)	5 (8.6)	31 (53.5)	58 (100.0)
C구금시설	26 (44.8)	10 (17.2)	22 (38.0)	58 (100.0)
D구금시설	17 (40.5)	13 (31.0)	12 (28.5)	42 (100.0)
E구금시설	21 (35.0)	15 (25.0)	24 (40.0)	60 (100.0)
F구금시설	21 (39.6)	12 (22.6)	20 (37.8)	53 (100.0)
G구금시설	27 (45.8)	16 (27.1)	16 (27.1)	59 (100.0)
H구금시설	17 (31.5)	17 (31.5)	20 (37.0)	54 (100.0)
I구금시설	20 (39.2)	15 (29.4)	16 (31.4)	51 (100.0)
J구금시설	21 (35.0)	20 (33.3)	19 (31.7)	60 (100.0)
K구금시설	13 (24.5)	18 (34.0)	22 (41.5)	53 (100.0)
L구금시설	22 (40.7)	14 (25.9)	18 (33.4)	54 (100.0)
M구금시설	3 (5.5)	14 (25.4)	38 (69.1)	55 (100.0)
N구금시설	19 (33.9)	17 (30.4)	20 (35.7)	56 (100.0)
O구금시설	29 (51.8)	13 (23.2)	14 (25.0)	56 (100.0)
P구금시설	23 (59.0)	5 (12.8)	11 (28.2)	39 (100.0)
Q구금시설	25 (41.0)	15 (24.6)	21 (34.4)	61 (100.0)
R구금시설	32 (53.3)	6 (10.0)	22 (36.7)	60 (100.0)

Chi-Square=81.56 (D.F.=34) P<0.05

<표 a-5> 구금시설별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에 의한 진정장애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있 다	없 다	계
A구금시설	22 (44.9)	27 (55.1)	49 (100.0)
B구금시설	26 (50.0)	26 (50.0)	52 (100.0)
C구금시설	18 (40.0)	27 (60.0)	45 (100.0)
D구금시설	16 (55.2)	13 (44.8)	29 (100.0)
E구금시설	15 (31.3)	33 (68.7)	48 (100.0)
F구금시설	15 (44.1)	19 (55.9)	34 (100.0)
G구금시설	26 (61.9)	16 (38.1)	42 (100.0)
H구금시설	16 (42.1)	22 (57.9)	38 (100.0)
I구금시설	12 (35.3)	22 (64.7)	34 (100.0)
J구금시설	16 (35.6)	29 (64.4)	45 (100.0)
K구금시설	10 (32.3)	21 (67.7)	31 (100.0)
L구금시설	18 (42.9)	24 (57.1)	42 (100.0)
M구금시설	2 (3.8)	51 (96.2)	53 (100.0)
N구금시설	14 (32.6)	29 (67.4)	43 (100.0)
O구금시설	26 (59.1)	18 (40.9)	44 (100.0)
P구금시설	14 (58.3)	10 (41.7)	24 (100.0)
Q구금시설	11 (27.5)	29 (72.5)	40 (100.0)
R구금시설	18 (41.9)	25 (58.1)	43 (100.0)

Chi-Square=59.92 (D.F.=17) P<0.05

<표 a-6> 구금시설별 진정절차의 복잡성·불편함으로 인한 진정장애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있 다	없 다	계
A구금시설	24 (49.0)	25 (51.0)	49 (100.0)
B구금시설	24 (45.3)	29 (54.7)	53 (100.0)
C구금시설	18 (40.0)	27 (60.0)	45 (100.0)
D구금시설	12 (41.4)	17 (58.6)	29 (100.0)
E구금시설	16 (33.3)	32 (66.7)	48 (100.0)
F구금시설	14 (41.2)	20 (58.8)	34 (100.0)
G구금시설	23 (54.8)	19 (45.2)	42 (100.0)
H구금시설	13 (35.1)	24 (64.9)	37 (100.0)
I구금시설	13 (38.2)	21 (61.8)	34 (100.0)
J구금시설	19 (43.2)	25 (56.8)	44 (100.0)
K구금시설	10 (32.3)	21 (67.7)	31 (100.0)
L구금시설	20 (48.8)	21 (51.2)	41 (100.0)
M구금시설	3 (5.8)	49 (94.2)	52 (100.0)
N구금시설	17 (40.5)	25 (59.5)	42 (100.0)
O구금시설	28 (63.6)	16 (36.4)	44 (100.0)
P구금시설	15 (65.2)	8 (34.8)	23 (100.0)
Q구금시설	16 (39.0)	25 (61.0)	41 (100.0)
R구금시설	18 (42.9)	24 (57.1)	42 (100.0)

Chi-Square=50.38 (D.F.=17) P<0.05

<표 a-7> 구급시설별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진정장애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있 다	없 다	계
A구급시설	19 (41.3)	27 (58.7)	46 (100.0)
B구급시설	18 (34.6)	34 (65.4)	52 (100.0)
C구급시설	16 (35.6)	29 (64.4)	45 (100.0)
D구급시설	5 (18.5)	22 (81.5)	27 (100.0)
E구급시설	13 (26.5)	36 (73.5)	49 (100.0)
F구급시설	5 (16.1)	26 (83.9)	31 (100.0)
G구급시설	14 (35.0)	26 (65.0)	40 (100.0)
H구급시설	12 (34.3)	23 (65.7)	35 (100.0)
I구급시설	7 (21.9)	25 (78.1)	32 (100.0)
J구급시설	15 (34.9)	28 (65.1)	43 (100.0)
K구급시설	8 (25.8)	23 (74.2)	31 (100.0)
L구급시설	13 (33.3)	26 (66.7)	39 (100.0)
M구급시설	2 (3.9)	50 (96.1)	52 (100.0)
N구급시설	17 (40.5)	25 (59.5)	42 (100.0)
O구급시설	13 (30.2)	30 (69.8)	43 (100.0)
P구급시설	13 (56.5)	10 (43.5)	23 (100.0)
Q구급시설	13 (31.7)	28 (68.3)	41 (100.0)
R구급시설	13 (31.7)	28 (68.3)	41 (100.0)

Chi-Square=38.22 (D.F.=17) P<0.05

<표 a-8> 구금시설별 서면진정도구의 미비로 인한 진정장애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있 다	없 다	계
A구금시설	6 (12.8)	41 (87.2)	47 (100.0)
B구금시설	1 (1.9)	51 (98.1)	52 (100.0)
C구금시설	2 (4.4)	43 (95.6)	45 (100.0)
D구금시설	2 (7.4)	25 (92.6)	27 (100.0)
E구금시설	2 (4.2)	46 (95.8)	48 (100.0)
F구금시설	3 (9.4)	29 (90.6)	32 (100.0)
G구금시설	3 (7.3)	38 (92.7)	41 (100.0)
H구금시설	4 (11.4)	31 (88.6)	35 (100.0)
I구금시설	3 (9.4)	29 (90.6)	32 (100.0)
J구금시설	2 (4.4)	43 (95.6)	45 (100.0)
K구금시설	6 (19.4)	25 (80.6)	31 (100.0)
L구금시설	0 (0.00)	39 (100.00)	39 (100.0)
M구금시설	0 (0.00)	52 (100.0)	52 (100.0)
N구금시설	5 (11.9)	37 (88.1)	42 (100.0)
O구금시설	2 (4.7)	41 (95.3)	43 (100.0)
P구금시설	6 (26.1)	17 (73.9)	23 (100.0)
Q구금시설	1 (2.5)	39 (97.5)	40 (100.0)
R구금시설	4 (9.8)	37 (90.2)	41 (100.0)

Chi-Square=36.80 (D.F.=17) P<0.05

<표 a-9> 구급시설별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진정장애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있 다	없 다	계
A구급시설	16 (33.3)	32 (66.7)	48 (100.0)
B구급시설	12 (23.1)	40 (76.9)	52 (100.0)
C구급시설	14 (31.1)	31 (68.9)	45 (100.0)
D구급시설	8 (28.6)	20 (71.4)	28 (100.0)
E구급시설	10 (20.8)	38 (79.2)	48 (100.0)
F구급시설	9 (27.3)	24 (72.7)	33 (100.0)
G구급시설	15 (36.6)	26 (63.4)	41 (100.0)
H구급시설	11 (30.6)	25 (69.4)	36 (100.0)
I구급시설	3 (9.4)	29 (90.6)	32 (100.0)
J구급시설	11 (25.0)	33 (75.0)	44 (100.0)
K구급시설	5 (16.1)	26 (83.9)	31 (100.0)
L구급시설	11 (26.8)	30 (73.2)	41 (100.0)
M구급시설	2 (3.9)	50 (96.1)	52 (100.0)
N구급시설	16 (37.2)	27 (62.8)	43 (100.0)
O구급시설	14 (33.3)	28 (66.7)	42 (100.0)
P구급시설	13 (56.5)	10 (43.5)	23 (100.0)
Q구급시설	15 (37.5)	25 (62.5)	40 (100.0)
R구급시설	14 (33.3)	28 (66.7)	42 (100.0)

Chi-Square=41.69 (D.F.=17) P<0.05

<표 a-10> 구금시설별 진정방해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없 었 다	있 었 다	계
A구금시설	40 (78.4)	11 (21.6)	51 (100.0)
B구금시설	46 (82.1)	10 (17.9)	56 (100.0)
C구금시설	39 (86.7)	6 (13.3)	45 (100.0)
D구금시설	30 (83.3)	6 (16.7)	36 (100.0)
E구금시설	48 (88.9)	6 (11.1)	54 (100.0)
F구금시설	39 (90.7)	4 (9.3)	43 (100.0)
G구금시설	35 (76.1)	11 (23.9)	46 (100.0)
H구금시설	41 (87.2)	6 (12.8)	47 (100.0)
I구금시설	45 (97.8)	1 (2.2)	46 (100.0)
J구금시설	41 (87.2)	6 (12.8)	47 (100.0)
K구금시설	33 (89.2)	4 (10.8)	37 (100.0)
L구금시설	46 (95.8)	2 (4.2)	48 (100.0)
M구금시설	55 (98.2)	1 (1.8)	56 (100.0)
N구금시설	35 (77.8)	10 (22.2)	45 (100.0)
O구금시설	35 (74.5)	12 (25.5)	47 (100.0)
P구금시설	22 (71.0)	9 (29.0)	31 (100.0)
Q구금시설	44 (83.0)	9 (17.0)	53 (100.0)
R구금시설	37 (82.2)	8 (17.8)	45 (100.0)

Chi-Square=37.57 (D.F.=17) P<0.05

<표 a-11> 구금시설별 진정후 불이익 경험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없었음	1종류	2종류 이상	계
A구금시설	37 (72.5)	8 (15.7)	6 (11.8)	51 (100.0)
B구금시설	43 (76.8)	7 (12.5)	6 (10.7)	56 (100.0)
C구금시설	35 (77.8)	3 (6.7)	7 (15.5)	45 (100.0)
D구금시설	29 (80.5)	6 (16.7)	1 (2.8)	36 (100.0)
E구금시설	47 (87.0)	3 (5.6)	4 (7.4)	54 (100.0)
F구금시설	37 (86.0)	2 (4.7)	4 (9.3)	43 (100.0)
G구금시설	35 (76.1)	5 (10.9)	6 (13.0)	46 (100.0)
H구금시설	45 (95.8)	1 (2.1)	1 (2.1)	47 (100.0)
I구금시설	45 (97.8)	0 (0.00)	1 (2.2)	46 (100.0)
J구금시설	42 (89.4)	3 (6.4)	2 (4.2)	47 (100.0)
K구금시설	36 (97.3)	0 (0.0)	1 (2.7)	37 (100.0)
L구금시설	41 (85.4)	6 (12.5)	1 (2.1)	48 (100.0)
M구금시설	56 (100.0)	0 (0.0)	0 (0.0)	56 (100.0)
N구금시설	34 (75.5)	4 (8.9)	7 (15.6)	45 (100.0)
O구금시설	37 (78.7)	4 (8.5)	6 (12.8)	47 (100.0)
P구금시설	22 (71.0)	3 (9.7)	6 (19.3)	31 (100.0)
Q구금시설	42 (79.3)	6 (11.3)	5 (9.4)	53 (100.0)
R구금시설	32 (71.1)	10 (22.2)	3 (6.7)	45 (100.0)

Chi-Square=72.65 (D.F.=34) P<0.05

<표 a-12> 구금시설별 입소시 진정권 관련교육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충분하게 받았다	대충 들은 것 같다	전혀 없었다	계
A구금시설	6 (9.3)	19 (29.2)	40 (61.5)	65 (100.0)
B구금시설	8 (14.0)	19 (33.3)	30 (52.4)	57 (100.0)
C구금시설	7 (12.3)	15 (26.3)	35 (61.4)	57 (100.0)
D구금시설	2 (4.9)	16 (39.0)	23 (56.1)	41 (100.0)
E구금시설	9 (16.1)	18 (32.1)	29 (51.8)	56 (100.0)
F구금시설	5 (10.4)	14 (29.2)	29 (60.4)	48 (100.0)
G구금시설	1 (1.7)	11 (19.3)	45 (79.0)	57 (100.0)
H구금시설	3 (6.1)	20 (40.8)	26 (53.1)	49 (100.0)
I구금시설	5 (10.6)	17 (36.2)	25 (53.2)	47 (100.0)
J구금시설	10 (16.7)	11 (18.3)	39 (65.0)	60 (100.0)
K구금시설	7 (13.7)	12 (23.5)	32 (62.8)	51 (100.0)
L구금시설	3 (5.5)	21 (38.9)	30 (55.6)	54 (100.0)
M구금시설	36 (67.9)	15 (28.3)	2 (3.8)	53 (100.0)
N구금시설	4 (7.0)	14 (24.6)	39 (68.4)	57 (100.0)
O구금시설	3 (5.6)	4 (7.4)	47 (87.0)	54 (100.0)
P구금시설	0 (0.0)	5 (13.5)	32 (86.5)	37 (100.0)
Q구금시설	6 (10.9)	16 (29.1)	33 (60.0)	55 (100.0)
R구금시설	5 (8.9)	11 (19.6)	40 (71.5)	56 (100.0)

Chi-Square=223.90 (D.F.=34) P<0.05

<표 a-13> 구금시설별 입소후 진정권 관련교육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충분하게 받았다	대충 들은 것 같다	전혀 없었다	계
A구금시설	4 (6.2)	17 (26.1)	44 (67.7)	65 (100.0)
B구금시설	7 (12.3)	10 (17.5)	40 (70.2)	57 (100.0)
C구금시설	6 (10.5)	14 (24.6)	37 (64.9)	57 (100.0)
D구금시설	1 (2.4)	11 (26.8)	29 (70.8)	41 (100.0)
E구금시설	9 (16.1)	16 (28.6)	31 (55.3)	56 (100.0)
F구금시설	2 (4.2)	13 (27.1)	33 (68.7)	48 (100.0)
G구금시설	0 (0.0)	7 (12.3)	50 (87.7)	57 (100.0)
H구금시설	2 (4.2)	14 (29.2)	32 (66.6)	48 (100.0)
I구금시설	5 (10.6)	12 (25.5)	30 (63.9)	47 (100.0)
J구금시설	8 (13.6)	8 (13.6)	43 (72.8)	59 (100.0)
K구금시설	5 (10.0)	6 (12.0)	39 (78.0)	50 (100.0)
L구금시설	5 (9.4)	21 (39.6)	27 (51.0)	53 (100.0)
M구금시설	37 (69.8)	15 (28.3)	1 (1.9)	53 (100.0)
N구금시설	2 (3.5)	10 (17.5)	45 (79.0)	57 (100.0)
O구금시설	0 (0.0)	9 (16.7)	45 (83.3)	54 (100.0)
P구금시설	2 (5.3)	3 (7.9)	33 (86.8)	38 (100.0)
Q구금시설	7 (12.7)	23 (41.8)	25 (45.5)	55 (100.0)
R구금시설	4 (7.1)	8 (14.3)	44 (78.6)	56 (100.0)

Chi-Square=278.58 (D.F.=34) P<0.05

<표 a-14> 구금시설별 진정함의 설치의견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위치를 모른다	계
A구금시설	21 (32.3)	14 (21.5)	30 (46.2)	65 (100.0)
B구금시설	17 (29.8)	10 (17.5)	30 (52.7)	57 (100.0)
C구금시설	23 (40.4)	11 (19.3)	23 (40.3)	57 (100.0)
D구금시설	9 (22.5)	2 (5.0)	29 (72.5)	40 (100.0)
E구금시설	23 (41.1)	10 (17.9)	23 (41.0)	56 (100.0)
F구금시설	14 (29.8)	7 (14.9)	26 (55.3)	47 (100.0)
G구금시설	4 (7.0)	7 (12.3)	46 (80.7)	57 (100.0)
H구금시설	11 (22.5)	5 (10.2)	33 (67.3)	49 (100.0)
I구금시설	9 (20.5)	7 (15.9)	28 (63.6)	44 (100.0)
J구금시설	17 (28.8)	12 (20.3)	30 (50.9)	59 (100.0)
K구금시설	8 (16.7)	3 (6.3)	37 (77.0)	48 (100.0)
L구금시설	17 (32.1)	8 (15.1)	28 (52.8)	53 (100.0)
M구금시설	50 (92.6)	4 (7.4)	0 (0.0)	54 (100.0)
N구금시설	22 (39.3)	11 (19.6)	23 (41.1)	56 (100.0)
O구금시설	15 (28.3)	11 (20.8)	27 (50.9)	53 (100.0)
P구금시설	6 (16.7)	8 (22.2)	22 (61.1)	36 (100.0)
Q구금시설	32 (58.2)	7 (12.7)	16 (29.1)	55 (100.0)
R구금시설	10 (17.9)	6 (10.7)	40 (71.4)	56 (100.0)

Chi-Square=181.27 (D.F.=34) P<0.05

<표 a-15> 구금시설별 인권위 진정관련 안내서 비치와 자유로운 열람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계
A구금시설	10 (15.6)	21 (32.8)	33 (51.6)	64 (100.0)
B구금시설	12 (21.1)	19 (33.3)	26 (45.6)	57 (100.0)
C구금시설	13 (23.2)	19 (33.9)	24 (42.9)	56 (100.0)
D구금시설	6 (15.4)	10 (25.7)	23 (58.9)	39 (100.0)
E구금시설	23 (42.6)	19 (35.2)	12 (22.2)	54 (100.0)
F구금시설	9 (19.6)	12 (26.1)	25 (54.3)	46 (100.0)
G구금시설	5 (8.9)	15 (26.8)	36 (64.3)	56 (100.0)
H구금시설	10 (22.7)	12 (27.3)	22 (50.0)	44 (100.0)
I구금시설	7 (17.5)	11 (27.5)	22 (55.0)	40 (100.0)
J구금시설	12 (20.7)	16 (27.6)	30 (51.7)	58 (100.0)
K구금시설	7 (15.6)	5 (11.1)	33 (73.3)	45 (100.0)
L구금시설	14 (27.5)	14 (27.4)	23 (45.1)	51 (100.0)
M구금시설	42 (77.8)	12 (22.2)	0 (0.0)	54 (100.0)
N구금시설	12 (21.1)	14 (24.6)	31 (54.3)	57 (100.0)
O구금시설	9 (17.0)	17 (32.1)	27 (50.9)	53 (100.0)
P구금시설	3 (8.8)	6 (17.7)	25 (73.5)	34 (100.0)
Q구금시설	18 (33.3)	11 (20.4)	25 (46.3)	54 (100.0)
R구금시설	9 (17.0)	13 (24.5)	31 (58.5)	53 (100.0)

Chi-Square=153.28 (D.F.=34) P<0.05

<표 a-16> 구금시설별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계
A구금시설	19 (30.6)	20 (32.3)	23 (37.1)	62 (100.0)
B구금시설	17 (32.7)	20 (38.5)	15 (28.8)	52 (100.0)
C구금시설	12 (22.6)	22 (41.5)	19 (35.9)	53 (100.0)
D구금시설	11 (29.7)	13 (35.1)	13 (35.2)	37 (100.0)
E구금시설	21 (39.6)	17 (32.1)	15 (28.3)	53 (100.0)
F구금시설	14 (32.6)	16 (37.2)	13 (30.2)	43 (100.0)
G구금시설	9 (16.1)	19 (33.9)	28 (50.0)	56 (100.0)
H구금시설	12 (27.3)	20 (45.5)	12 (27.2)	44 (100.0)
I구금시설	12 (32.4)	13 (35.1)	12 (32.5)	37 (100.0)
J구금시설	15 (26.8)	18 (32.1)	23 (41.1)	56 (100.0)
K구금시설	10 (25.0)	9 (22.5)	21 (52.5)	40 (100.0)
L구금시설	17 (38.6)	13 (29.6)	14 (31.8)	44 (100.0)
M구금시설	43 (79.6)	10 (18.5)	1 (1.9)	54 (100.0)
N구금시설	8 (14.8)	21 (38.9)	25 (46.3)	54 (100.0)
O구금시설	17 (33.3)	18 (35.3)	16 (31.4)	51 (100.0)
P구금시설	6 (18.8)	9 (28.1)	17 (53.1)	32 (100.0)
Q구금시설	15 (29.4)	16 (31.4)	20 (39.2)	51 (100.0)
R구금시설	16 (30.2)	14 (26.4)	23 (43.4)	53 (100.0)

Chi-Square=98.79 (D.F.=34) P<0.05

<표 a-17> 구금시설별 진정 신청시 집필보고전 제출

단위: 명 (퍼센트)

시 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계
A구금시설	23 (35.9)	38 (59.4)	3 (4.7)	64 (100.0)
B구금시설	14 (25.5)	30 (54.5)	11 (20.0)	55 (100.0)
C구금시설	19 (33.9)	31 (55.4)	6 (10.7)	56 (100.0)
D구금시설	13 (35.1)	20 (54.1)	4 (10.8)	37 (100.0)
E구금시설	13 (25.0)	32 (61.5)	7 (13.5)	52 (100.0)
F구금시설	6 (13.0)	37 (80.4)	3 (6.6)	46 (100.0)
G구금시설	22 (38.6)	31 (54.4)	4 (7.0)	57 (100.0)
H구금시설	6 (13.3)	33 (73.3)	6 (13.4)	45 (100.0)
I구금시설	2 (5.0)	33 (82.5)	5 (12.5)	40 (100.0)
J구금시설	11 (19.3)	38 (66.7)	8 (14.0)	57 (100.0)
K구금시설	5 (11.4)	33 (75.0)	6 (13.6)	44 (100.0)
L구금시설	12 (24.5)	32 (65.3)	5 (10.2)	49 (100.0)
M구금시설	18 (35.3)	13 (25.5)	20 (39.2)	51 (100.0)
N구금시설	6 (10.7)	41 (73.2)	9 (16.1)	56 (100.0)
O구금시설	19 (35.9)	30 (56.6)	4 (7.5)	53 (100.0)
P구금시설	13 (37.1)	18 (51.4)	4 (11.5)	35 (100.0)
Q구금시설	18 (34.0)	32 (60.4)	3 (5.6)	53 (100.0)
R구금시설	9 (16.4)	37 (67.3)	9 (16.3)	55 (100.0)

Chi-Square=103.86 (D.F.=34) P<0.05

부 록 B

<표 b>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48	<p>“인권위원회가 있고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의 자세한 방법도 각 거실에 안내문을 붙여 줘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인지 등의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일단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과 뒤처리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것 때문에 진정을 많이 망설입니다. 진정함의 위치나 진정서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으면 합니다.”</p> <p>“진정함이나 진정서의 위치가 손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배치, 자세한 안내서 구비”</p>
52	<p>“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p>
65	<p>“우선 대대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홍보와 자료 등이 많아져서 이를 보고·듣고·체험을 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저 몇몇군데나 시설에서 이용 내지는 할 수 있다면 안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고 진정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p>
86	<p>“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 고충을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법을 몰라 진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p>
100	<p>“간편한 절차와 빠른 처우, 대부분에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을 모름, 수용시설 측에서의 교육필요”</p>
108	<p>“1년에 몇 차례 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용자가 어떤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절차나 방법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 등의 알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합니다.”</p>
127	<p>“보다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보다 많은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133	<p>“수용자들이 진정을 하기 위해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의하고 진정해 봐야 시정조치가 될까 무시되어버리고 묵인되어 버릴 것 같아 진정을 생각했다가도 그냥 참고 돌아선 적이 많으나 저희와 같은 수용자들이 인권위원회에 손을 뻗기에는 너무도 멀리에 있지 않나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내에 위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p>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57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걸 먼저 교육을 통해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수용자는 이런 기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수용자가 많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걸 알리고 다음에 진정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절차를 대다수 수용자들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소내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시 인권위원회 직원들의 교육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교육프로그램에 편승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대우가 있을 것이며, 대우를 받는다고보다는 스스로의 진단으로 생활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신교육 때에는 꼭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면에서 실과 득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교육해주셨으면 합니다.”
162	“진정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이나 절차가 간단했으면 좋겠다. 많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방문을 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진정함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인 줄 알았음. 특히, 진정함이나 투서함의 의미를 몰랐음. 시설에서는 진정함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용하는데 많이 망설였음.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님.”
175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충을 진정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으면 합니다.”
176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떻게 진정서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음.”
196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당 소에서 전혀 설명도 없으며, 아예 덮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	“국가인권위원회를 전혀 모른다.”
216	“조금 뚜렷하게 인권위원회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말입니다. 제 주위에는 아직도 인권위원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24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수용자에게 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인식시켜주기 바란다.”
253	“수용자 개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267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법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15	“우리 수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329	“수용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인권위원회라는 존재여부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342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진정하고 싶어도 방법과 절차를 모릅니다).”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347	“수용자들이 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모르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권위원회를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358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의 홍보가 매우 부족합니다(이야기만 대충 들었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겠음).”
363	“우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교육을 수용자들에게 시킨 후 인권적인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우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아서 실상 이런 설문지를 작성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런 교육을 받아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금지초문이다. 그러니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고 잘못된 점을 찾기 이전에 철저한 교육과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 같다.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말 그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위원회 같은데 교육받은 것도 없고 사실 이런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진정해야 되는 것도 모르니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우선 수용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것이다.”
38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91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위한 단체인지 확실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409	“진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14	“오늘에서야 이 설문지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진정하는지 그리고 시설 내 직원들이나 시설 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대화내용이나 서신내용 등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415	“거의 모든 수용자가 그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42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곳에 들어와서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96	“교육이 필요합니다.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진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내용에 의한 확실한 개선이 수용자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진정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에게 서면을 통한 진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519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곳 구치소내에서 활동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특히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인권침해를 진정하는 곳이 있다는 것과 그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소내에 어떤 문제(의식주, 인권침해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정공무원에게 <u>보고하여야</u>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방의 8명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소한 이름입니다.”
528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는 제도가 현재 수용시설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유감이다.”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554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많은 동료수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82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모든 수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면담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서나 주소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단 한번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직원에게 들은 바가 없고 대부분의 다른 수용자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91	“이 곳에서는 서신검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정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해도 그 곳에 넣는 것을 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 곳에 수용된지가 2년 되는데 오늘 처음 인권위원회가 뭘 하는지 설문내용으로 알았습니다. 아마 다른 수용자들도 같을 것입니다. 먼저 모든 수용자들에게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부터 홍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96	“저는 오늘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번도 교도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각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권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인권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서신양식이 각 출역장마다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99	“인권보장, 설문조사후 개선이 필요,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국가인권위원회란 교육이 필요하다.”
618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여부 등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620	“우선 관에서 지정한 규율과 규칙을 정확히 수용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며, 수용자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잘 따라야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처음 들으므로 매우 황당하며,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적극적인 수용자 인권을 위한 제도로서 각 구급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존재를 알려야 할 것이다.”
631	“진정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수용자가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와 수용 시설에서는 진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각 방에 진정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33	“인권위원회가 있는지 지금 알았는데 무엇을 개선하고 질문의 요지도 우리한테 해당이 없는 것 같고 먼저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부터 홍보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39	“수용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647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62	“수용자에게 어떤 홍보도 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습니다(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함).”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664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치소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우연히 알게되었으며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모릅니다. 입소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이란 단체가 있음을 잘 교육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687	“어떠한 것들이 진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
693	“진정절차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직원 등을 통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 불이익 등의 불안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697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진정하라고 방송으론 계도되고 있으나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담당에게 보고를 하는 것도 어색한 면이 있으며, 본인이 수용되고 있는 사동이나 각 방에서 쉽게 진정할 수 있는 진정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723	“최근 일주일 전부터 소내 방송을 통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홍보하고 있으며, 그나마 소리가 약해 잘 듣지 않는 실정임. 대다수가 인권위원회의 진정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이 조사를 통해서나마 조금 알게되었습니다.”
729	“아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하는 일과 절차에 대하여 미숙하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802	“진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 수용자 모두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위원회 직원들께서 수시로 교도소를 방문하셔서 고충사항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18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21	“수용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진정을 할 수 있는지 인권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826	“진정방법을 모르는 수용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
905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함은 익히 알고 있으나, 저희가 이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음(입소때나 평소에 홍보·교육이 전혀 없었음, 오늘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음). 널리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모르고 있음.”
979	“많은 홍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모르는 시점에서 널리 홍보를 해야하며, 분명한 비밀보장으로 진정으로 인해 피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수용자가 대다수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실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침이 필요하다.”
981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보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1004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다가갈 수 있는지가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는지, 작성을 하기 위해선 꼭 교정공무원을 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0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는 내용 872-1-1 체를 모르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니 만큼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027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막연하게나마 진정하는데 대한 주위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있어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1029	“대다수의 수용자들은 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것이다. 나부터도 1년 6개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무슨 도움을 크게 받아본적도 없다. 오늘에서야 이렇게 설문한답시고 와서야 이런데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 우리같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너무나 먼 인권위원회이다. 아무쪼록 활발한 활동을 하여 수용자들의 애로사항 같은 걸 잘 들어주길 바란다.”
1030	“일반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우리에게 혜택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1052	“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105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수용자가 언제든지 진정할 수 있도록 진정함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합니다.”
1062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중 이곳저곳의 제재로 인하여 혹시 불이익을 받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우리 수용자들 모두에게 쉽게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간단한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65	“시설생활을 통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과 수용자가 모두 잘 알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위원회란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몰라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참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72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과 진정을 할 수 있는 방법 및 수용자의 권리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구금시설에서는 입소 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사전에 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1078	“본명은 처음으로 인권위원회의 직원들과 상면했으며, 인권위원회의 구성체가 실지 존재여부도 오늘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폭넓은 이해와 인식을 시키기 위한 홍보 및 전달매체가 상당수 부족한 실태라고 단언한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을 위한 차원높은 인식의 교육적 환경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목적과 이념 교육화, ② 비밀보장 확실화, ③ 부정과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고할 수 있는 창구, ④ 서신과 E-mail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같은 4가지 항목이 이루어졌을 때 인권위원회의 제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79	“진정과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꼭 진정서 같은 서류는 봉인되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81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용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을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 록 C

<표 C> 진정효과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일련번호	진정효과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1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나 법무부나 모두 한 통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우선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133	“수용자들이 진정을 하기 위해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의하고 진정해 봐야 시정조치가 될까 무시되어버리고 묵인되어 버릴 것 같아 진정을 생각했다가도 그냥 참고 돌아선 적이 많으나 저희와 같은 수용자들이 인권위원회에 손을 뻗기에는 너무도 멀리에 있지 않나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내에 위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40	“서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 상주하면서, 수용자의 모든 것을 관찰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개선은 거의 말뿐인 것 같다.”
400	“인권상담을 하면 조금이라도 표시가 나도록 해주십시오.”
496	“교육이 필요합니다.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진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내용에 의한 확실한 개선이 수용자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진정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에게 서면을 통한 진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641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힘든 고통을 받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 갈 뿐입니다.”
858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때에는 수용자 나름대로 불이익을 구제받고자 함인데 진정면담을 하고 나면 아무 것도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쓸데없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 및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물론, 자잘한 사건으로 면담 및 서신을 통해 진정을 하는 수용자들이 없진 않지만 그 중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탄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1046	“진정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나 진정을 하면 하나도 개선되고 문제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며, 진정을 하면 더욱 수용자의 인권은 더욱 교정공무원들에게 유린되고 말기에 극단처방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이 수박 겉 핥기이고 형식적이다.”

부 록 D

<표 d> 진정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일련번호	진정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20	“진정을 하게되면 수용자 모두가 만기 출소전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될 우려를 생각해서 참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형처우에 효과적인 방법이 개선되어야 자유롭게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됨.”
35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상담이나 서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인권위원회 진정을 했을 경우 혹시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46	“진정을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곳 생활에 적응을 잘못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듣거나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진정사항들이 상부에 보고되면 이 곳에선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인해 생활자체가 불편해져서 정신적으로 당분간 고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권이란 자체를 다들 보장받고 싶은 심정이나 죄를 짓고 들어와 이것저것 다 갖추려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조금 모자라게 조금씩 양보해가며 사는 것도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48	“인권위원회가 있고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의 자세한 방법도 각 거실에 안내문을 붙여 줘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인지 등의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일단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과 뒤처리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망설입니다. 진정함의 위치나 진정서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72	“본인 스스로가 수용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공동생활의 수칙을 지킨다면 직원들과의 마찰도 없을 뿐더러 원만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일이 있다고 해도 큰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146	“수번,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그렇게 용기있게 나서서 모든 비난과 질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62	“진정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이나 절차가 간단했으면 좋겠다. 많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방문을 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진정함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인 줄 알았음. 특히, 진정함이나 투서함의 의미를 몰랐음. 시설에서는 진정함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용하는데 많이 망설였음.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님.”
164	“개인적인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책을 강구해주었으면 합니다.”
168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곳 수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유가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다하여도 시설측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간격이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설측에서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수궁할지가 의문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가 강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련번호	진정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85	“진정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진정을 하면 인권위원회에서 바로 온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6	“형식적인 처리보다는 강력하게 수용자의 처우에 대처해 주기 바람. 수용자들이 인권위원회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진정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불신감을 주지 않기를 바람.”
235	“진정서를 신속하게 처리·조사하여야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수용자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진정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허울뿐인 진정이라고 여겨지게 됨. 우선 교도관의 처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책임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의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수용자가 진정을 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
240	“서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 상주하면서, 수용자의 모든 것을 관찰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개선은 거의 말뿐인 것 같다.”
259	“거실 내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료가 비치되었으면 함.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싶어도 시설측 공무원에게 잘못 보일까 싶어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음.”
287	“수용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수용자가 인권위원회에 접근하기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선 어려울 수밖에 없다(사실 사방담당자에게 진정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수나 있겠는가? 찍힐 것이 뻔한데). 인권위가 수용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정 수용자의 인권을 지켜주고자 한다면.....”
293	“진정인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철저히 강구해주어야 조금 더 현실적인 인권위의 역할이 가능하리라 생각함. 인권위 직원이 1~2주정도 압행으로 수감생활을 해보는 것이 설문조사하는 것보다 큰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294	“매월 한 두 차례 정도를 방문하여 직접 진정함을 관리한다면 진정함 사용자들이 불편하거나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진정함을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잠금장치를 하여 사용자들이 진정하고 싶을 때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386	“진정을 하면 시설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으면 합니다.”
412	“진정후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421	“인권위원회와 수용자간의 직접 채널이 정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행방법으로는 어떤 형태든 교정공무원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사의 자유로움이 제약받는 게 사실이다. 그것이 실제 행해지든 그러하지 않든 본인이 우선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인권위원회와 수용자간의 직접 접촉이 좀 더 정기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고 또 한편으로는 권리를 빙자해서 공동생활에 해를 기치는 이들 또한 선별해서 정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일련번호	진정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425	“진정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일 제가 하게된다면 비밀보장과 함께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주었으면 하고 수용자가 인권위원회 진정은 절차를 안거치고 바로 서신으로 했으면 함.”
427	“솔직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수용 생활에 불편한 점이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불이익 등을 진정하는데 보다 빠르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진정 후 어떠한 소내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와 많은 무지한 수용자들을 일깨워주시면 더욱 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것이라 믿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589	“진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후 직원들의 보복 때문입니다. 수용자들 생각이 모두 이와 비슷할 것이고 진정을 할 경우 그 당시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이후에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597	“현재 이 시설 자체가 초범 수용시설이고, 가석방을 위하여 모든 불편이라든지 내가 취해야 할 부분의 권리 대부분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혹시, 있을 진정이라도 교정공무원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될까하는 두려움과 가석방 혜택에 불이익이 올지 몰라 병어리 냉가슴 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에 있을 설문에서는 저와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598	“각 사동 출입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진정함을 비치하고 진정서를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진정을 포기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은 교도행정의 발달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693	“진정절차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직원 등을 통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 불이익 등의 불안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726	“이 곳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다면 잘은 모르지만 나가는 날까지 교정공무원들은 색안경을 쓰고서 볼 것입니다. 차라리 힘이 드시더라도 무작정 수용자를 불러서 고충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1대 1). 누군가를 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하여 불러주신다면 다른 수용자의 고충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곳에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자 하고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 내용과 여러 가지 등을 물어보고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1대 1의 무작정 만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994	“진정을 하고 싶지만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뒷일을 감당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사동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함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잘못 보낼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반협박을 하는 통에 사용할 수 없어서 불만입니다.”

일련번호	진정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997	<p>“이 곳은 분리되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진정내용은 비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실은 비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진정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모든 수용자를 인권위 직원이 비밀장소에서 같은 시간동안 면담을 하셔서 누가 어떤 진정을 했는지 혹은 진정을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지.....는 모든 사동에 진정함을 설치하여 아무 종이어나 본인의 이름과 진정내용을 써서 인권위 직원 분이 직접 가져가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p>
1009	<p>“첫 번째는 많은 홍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모르는 시점에서 널리 홍보를 해야하며, 분명한 비밀보장으로 진정하는 이에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수감자가 대다수이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침이 필요하다.”</p>
1012	<p>“진정을 해도 비밀이 보장되는지 의심스러워 할 수가 없다. 장기수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생각지도 못한다.”</p>
1027	<p>“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막연하게나마 진정하는데 대한 주위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있어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p>
1062	<p>“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중 이곳저곳의 제재로 인하여 혹시 불이익을 받거나 앓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우리 수용자들 모두에게 쉽게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간단한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1068	<p>“우선 소내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진정하는 자체가 무슨 고자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고 이로 인해 주위의 시선을 받게 되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구체화시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p>

부 록 E

<표 e>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일련번호	진정권행사 장애요인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36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부담없는 여건 조성, 눈치보지 말고 성의껏 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80	“진정요청시 진정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더욱 더 수용자의 고통을 해소해 주시고, 진정절차도 어렵고 면담시에도 수용자의 대화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119	“면전신청을 하면 조사관을 만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132	“각 교도소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파견근무하여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 서 주었으면 합니다. 서신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방문이 여러 날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 측에서 사건의 은폐 및 증거의 인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도소마다 인권위원회의 ‘분실’이 설치되어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33	“수용자들이 진정을 하기 위해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의하고 진정해 봐야 시정조치가 될까 무시되어버리고 묵인되어 버릴 것 같아 진정을 생각했다가도 그냥 참고 돌아선 적이 많으나 저희와 같은 수용자들이 인권위원회에 손을 뻗기에는 너무도 멀리에 있지 않나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내에 위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36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구금시설이라 진정사실이 비밀보장이 되는지 불안한 것 같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어 실제적으로 진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며 타 수용시설에서 겪어본 바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14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나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너무 힘들고 더 나아가 면접은 더욱 힘든 상황임. 수용자들은 단절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도 보고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방법으로 진정을 제출하는지조차 모르는 수용자들이 너무나 많음.”
162	“진정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이나 절차가 간단했으면 좋겠다. 많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방문을 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진정함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인 줄 알았음. 특히, 진정함이나 투서함의 의미를 몰랐음. 시설에서는 진정함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용하는데 많이 망설였음.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님.”
226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진정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372	“비밀이 보장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
381	“아무 때나 어떠한 절차 없이 만나고 아주 비밀리에 면담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진정이나 어떤 것을 건의하고자 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다. 그리고 사후의 일이 두렵다.”

일련번호	진정권행사 장애요인 자기기술응답
38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게끔 어떠한 장치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벽보 등을 부착하였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 진정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였으면 합니다.”
403	“과거와 달리 요즘의 교정직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크게 인권침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이 가끔 진정을 하려고 하면 지레 겁을 먹는지 몰라도 먼저 상담을 한 후에 진정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짚짚하기에 그렇겠지요.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421	“인권위원회와 수용자간의 직접 채널이 정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행방법으로는 어떤 형태든 교정공무원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사의 자유로움이 제약받는 게 사실이다. 그것이 실제 행해지든 그러하지 않든 본인이 우선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인권위원회와 수용자간의 직접 접촉이 좀 더 정기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고 또 한편으로는 권리를 빙자해서 공동생활에 해를 끼치는 이들 또한 선별해서 정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었으면 한다.”
501	“누구나 손쉽게 진정하고, 서식을 취득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국가위원회에 서신이 우표없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려바랍니다.”
652	“진정방법 등에 관한 사전안내와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 뚜렷한 인권침해 사실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만일 침해사실이 있어 진정을 하고픈 생각이 있었더라도 방법을 몰라 못하였을 것이다. 수용자에게 공무원은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706	“교도소내에서 진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진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교도소측에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가볍지 못하다.”
812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및 면담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설측에 알려지는건데 어떻게 그런것을 할까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822	“진정함부터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939	“진정절차가 복잡하다.”
945	“처리가 빨랐으면 진정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진정방해가 없으면 좋겠다.”
956	“수용자 어떤 사람이든 필요할 때에 즉시 진정할 수 있는 체계와 정기적인 교육으로 문맹자나 정신장애에 있는 수용자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련번호	진정권행사 장애요인 자기기술응답
992	<p>“진정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용지를 받아야하니깐 담당직원에게 의뢰를 해야 하고, 직원들의 입도 보통이 아니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을 하고 나면 뒤에 책임을 온통 내가 지고 징역살이는 한 보따리인데 남은 수용기간 동안 몇 곱의 징역을 살 겁니다. 이 곳의 생활은 정말 우습지요. 감사들의 눈을 속이고 그 때만 깨끗하고 잘 하게 하니 선생님들의 부적절한 태도에 너무 회의를 느끼고 우선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간에 잿빛옷을 입은 수용자이기에 모든 것을 묵비권하지요.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진정함이 사동에 하나씩 배치되어 편지봉투와 편지지를 이 용해서 봉합하여 인권위원회의 직원이 직접 나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밝은 미래는 보호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이용치 못하는 것은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p>
998	<p>“인권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용지를 자유롭게 받아서 쓸 수 있어야 하고 수용자들이 쉽게 넣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창하게 보고전을 내어야 하는 불편함과 그런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직원의 따가운 시선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999	<p>“인권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용지를 자유롭게 받아서 쓸 수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쉽게 넣을 수 있는 곳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창하게 보고전을 내야 하는 불편함이 큼니다.”</p>
1013	<p>“교육이 필요하다. 진정을 하고 싶어도 가석방이랄까 이 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기수들은 아무리 보호가 된다고 해도 이 곳에서 진정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눈길이 곱지 않으니까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진정을 했을 땐 꼭 신속히 처리되었음 한다.“</p>

부 록 F

<표 f> 진정방해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일련번호	진정방해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38	“인권위 진정은 수용자에게 유형·무형의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이송 일 것입니다. 이송 등과 가석방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점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진정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수용자를 위해 인권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142	“진정내용을 타수용자가 알 수 없게 하고,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감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15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하면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교정 공무원들이 이유를 묻지 않았으면 한다.”
994	“진정을 하고 싶지만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뒷일을 감당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사동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함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잘못 보낼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반협박을 하는 통에 사용할 수 없어서 불만입니다.”
1008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면 반드시 시설에 일단 보고를 하고 진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당시 시설측에서 먼저 이런저런 구실로 막습니다. 상의도 하고, 타협도 하고, 충고도 하고..... 하지만 이래도 안될 시에는 또 다른 조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여서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만들고..... 또 교정공무원들끼리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표현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수용자들과 서면 또는 면전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우리 수용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67	“진정을 하면 현재 생활하던 시설에서 더욱더 시설이 나쁘고 어려운 곳으로 꼬리표를 붙여서 이송조치하여 불이익을 준다.”

부 록 G

<표 g>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일련번호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57	“진정을 한 후 인권위 담당 교정 공무원이 동료수용자에게 저에 대한 비방을 함.”
58	“진정을 한 후의 불이익으로 타 교도소 이감”
138	“인권위 진정은 수용자에게 유형·무형의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이송 일 것입니다. 이송 등과 가석방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무언의 압력은 행사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점이 주의깊게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진정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수용자를 위해 인권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139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진정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내용이 시설측과 관계가 될 때는 여러가지 처우에 대한 차별 즉, 장기수에 대한 대우와 그 자신의 징역생활에 박대한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 또한 그러합니다. 시설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파견된 분이 계셔서 제소자의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2	“진정내용을 타수용자가 알 수 없게 하고,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감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701	“진정을 하면 시설측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해버린다.”
702	“진정을 하게되면 수용자들에게는 말하지는 않지만, 교도소측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이감을 보내는 것 같다.”

부 록 H

<표 h> 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일련번호	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26	“보고전 없이 아무데서나 어디서든 진정할 수 있고 각 교도소 내에 상주했으면 한다.”
169	“수용시설에 처음 입소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떻게 진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진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22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
324	“수용자가 수용될 당시 진정하는 요령을 잘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369	“소내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 방법을 잘 모르니 매월 1회씩이라도 정기적인 계몽을 통하여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404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집필보고전과 같은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4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442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모든 수용자들이 다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0	“수용시설 입소시 진정절차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543	“수용되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49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대부분이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무엇을 진정해야 하는 것도 모른다.”
555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충을 진정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적이 없으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므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원만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562	“교도소 측에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 인권위원에 진정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잘 비치하여 주었으면 함.”
645	“처음 입소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던지 아니면 인쇄물을 배부해주시면 참고사항이 되리라 봅니다.”
67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위치 등을 간단히 주지시켜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
1076	“자유롭게 그리고 이런 호소방법이 있다는 것을 시설 측이 나서서 홍보하는 등의 제도적 운영.”

부 록 I

<표 I> 진정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6	“진정을 하기 전에 (인권위 직원이)개인적으로 찾아주셔서 면담을 해주십시오.”
65	“우선 대대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홍보와 자료 등이 많아져서 이를 보고·듣고·체험을 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저 몇몇군데나 시설에서 이용 내지는 할 수 있다면 안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고 진정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80	“진정요청시 진정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더욱 더 수용자의 고충을 해소해 주시고, 진정절차도 어렵고 면담시에도 수용자의 대화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잘 파악해주시요.”
108	“1년에 몇 차례 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용자가 어떤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절차나 방법 등 그 외에 여러가지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119	“면진신청을 하면 조사관을 만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었으면 좋겠다”
133	“수용자들이 진정을 하기 위해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의하고 진정해봐야 시정조치가 될까 무시되어버리고 묵인되어 버릴 것 같아 진정을 생각했다가도 그냥 참고 돌아선 적이 많으나 저희와 같은 수용자들이 인권위원회에 손을 뻗기에는 너무도 멀리에 있지 않나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내에 위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37	“비밀이 보장된 제도하에 이러한 서면조사보다는 인권위에서 어렵겠지만 자주 찾아와 주셔서 자유로운 공간에서 많은 대화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39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진정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내용이 시설 측과 관계가 될 때는 여러가지 처우에 대한 차별 즉, 장기수에 대한 대우와 그 자신의 징역 생활에 막대한 해를 입는 것을 염려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 또한 그러합니다. 시설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파견된 분이 계셔서 제소자의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6	“수번,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그렇게 용기있게 나서서 모든 비난과 질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51	“수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시로 소내를 방문하시어 조사해주시요.”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16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절차를 대다수 수용자들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소내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시 인권위원회 직원들의 교육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교육프로그램에 편승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대우가 있을 것이며, 대우를 받는다고보다는 스스로의 진단으로 생활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신교육 때에는 꼭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면에서 실과 득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교육해주셨으면 합니다.”
164	“개인적인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책을 강구해주었으면 합니다.”
178	“언제든지 작은 불편이라도 항상 진정할 수 있게 단계개선”
182	“각 교도소마다 인권위원회 분실을 운영하여 수용자에 인권 및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합니다.”
185	“진정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진정을 하면 인권위원회에서 바로 온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5	“진정서를 신속하게 처리·조사하여야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수용자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진정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허울뿐인 진정이라고 여겨지게 됨. 우선 교도관의 처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수용자가 진정을 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
275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7	“수용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수용자가 인권위원회에 접근하기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선 어려울 수밖에 없다(사실 사방담당자에게 진정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수나 있겠는가? 찍힐 것이 뻔한데). 인권위가 수용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정 수용자의 인권을 지켜주고자 한다면.....”
294	“매월 한 두 차례 정도를 방문하여 직접 진정함을 관리한다면 진정함 사용자들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진정함을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잠금장치를 하여 사용자들이 진정하고 싶을 때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376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상주”
379	“인권위에서 여기 수용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와서 임의로 조사하여 이러한 곳의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수용생활이 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380	“자유롭게 진정을 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상주한다던지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393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자주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02	“주기적으로 자주 교도소 방문”
421	“인권위원회와 수용자간의 직접 채널이 정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행방법으로는 어떤 형태든 교정공무원들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사의 자유로움이 제약받게 사실이다. 그것이 실제 행해지든 그러하지 않든 본인이 우선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인권위원회와 수리를 빙자해서 공동생활에 해를 끼치는 이들 또한 선별해서 정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었으면 한다.”
425	“진정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일 제가 하게 된다면 비밀보장과 함께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주었으면 하고 수용자가 인권위원회 지정은 절차를 안거치고 바로 서신으로 했으면 함.”
427	“솔직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수용생활에 불편한 점이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불이익 등을 진정하는데 보다 빠르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진정후 어떠한 소내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와 많은 무지한 수용자들을 일깨워주시면 더욱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것이라 믿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457	“각 거실 내에 인권위원회 직원이 같이 교도관과 주둔하면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시설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수시로 주둔하면 가능.”
466	“인권위원회 면담이 매우 늦다.”
494	“위원회 직원과 많은 상담을 원합니다. 서면보다는 직원과 면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96	“교육이 필요합니다.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진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내용에 의한 확실한 개선이 수용자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진정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에게 서면을 통한 진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501	“누구나 손쉽게 진정하고, 서식을 취득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신이 우표없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려바랍니다.”
514	“인권위원회에 자유롭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숙지교육이 필요합니다.”
518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53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형사상의 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서신을 보내는 것과 집필보고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56	“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진정서를 받아갔으면 합니다. 한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원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련번호	진정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기기술응답
557	“각 구급시설에 인권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씩 상주근무자를 두고 감시역할을 하기 바람.”
563	“인권위원회에 보낼 양식을 각 거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이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579	“사건진정인들의 예를 보니, 처리시간이 너무 길어서 많은 불편함을 보았다.”
585	“진정요령에 대한 인권위원회 측의 직접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 부족하면 비디오테잎으로 수용자정신교육시간에 필수과목으로 삽입.”
587	“시설에서 각종 책자를 비치하고 있지만 그 책자를 읽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책자(안내책)를 거실별로 지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02	“진정함 설치가 여러 곳에 비치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하여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홍보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607	“수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으면 바랍니다.”
621	“진정함이나 진정하기를 위해서 우리 시설 내에 많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6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수용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어떤 교육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교육이 있어야 수용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수용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59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를 위하여 있다고 하면 주 1회 아니면 월 1회 직접 인권위직원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87	“어떠한 것들이 진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
715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비밀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78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에 있어 진정함이나 면담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통해 수용자의 불편함과 진정을 받아 이를 개선해주었으면 합니다.”
790	“인권위원회직원을 소에 1명이라도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진정 및 청원이 잘되게 해주었으면 한다.”
927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자주 시설에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불시에 찾아 주어 무작위로 개인상담이나 실태를 자주 했으면 한다. 그러나 현실에 맞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권위원이 상주하여 더 많은 수용자들과의 접촉이 있었으면 합니다.”
991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거리에 누구나 건강하고, 바른 마음으로 의논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수용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설문조사 지침서

일반적 사항

1. 본 설문조사는 구급시설 수용자들이 진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및 방해요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2. 구급시설(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을 대할 때에는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여 설문조사나 조사자에 대해 불쾌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는 내용이 교정공무원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조사대상자 중에 문맹자나 저학력자, 정신질환자, 시력이 낮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설문조사자는 직접 구두로 문항을 읽어준 후, 대상자의 응답을 체크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응답을 하는데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문항을 설명해주어야 하며, 조사자의 사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설문지의 마지막 문항까지 조사대상자가 응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설문지 내용 소개

1.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개인신상과 시설생활,
진정권 인지도,
진정에 대한 태도,
시설생활중 겪는 고충사항,
진정 장애나 방해요인,
시설측의 진정권 보장노력,
진정후 불이익 경험,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진정하는데 있어서의 개선해야할 사항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page 3의 12-a번 문항(과거 수형생활 경험횟수와 기간), page 4의 15-a와 15-b번 문항(현재 시설에서의 징벌경험 횟수와 사유), page 10의 33-a번 ~ 33-e번 문항(소내고육에 대한 만족도, 내용의 충실도 등), page 11의 34-a번 ~ 34-f번 문항(소내 작업에 대한 만족도, 사회에 나가서의 활용도 등), page 13 ~ page 15의 38번 ~ 44번 문항(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시기와 횟수, 내용 등), page 16 ~ page 17의 48번 ~ 50번 문항(진정방해를 받은 진정내용, 진정방해자, 방법)은 앞 문항인 12번 문항(과거 수형생활 경험), 15번 문항(현재 시설에서의 징벌 경험), 33번 문항(소내고육 여부), 34번 문항(소내작업 여부), 37번 문항(인권위에 진정한 경험), 46번 ~ 47번 문항(진정방해 경험)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거나, ‘예’라고 대답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항이니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거나 ‘아니오’라고 응답한 설문대상자는 모두 응답할 필요없이 문항 뒤에 기재된 문항부터 응답하도록 한다.
3. page 12 ~ page 13의 36-a번 ~ 36-l번 문항들은 시설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혹은 고통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므로 ‘매우 고통스럽다’의 1부터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의 7까지의 아라비아 숫자에 체크하도록 한다.
4. page 15 ~ page 17의 45-a번 ~ 50번(진정장애나 방해 경험), page 19 ~ page 20의 67번 ~ 72번(진정후의 불이익 경험) 문항은 조사대상자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겪지 않았으나 주변에서 겪는 걸 보았을 경우에도 응답하도록 한다.
5. page 15 ~ page 20의 45-a번 ~ 72번 문항(진정장애나 방해 경험, 시설측의 진정권 보장 노력, 진정후의 불이익 경험)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일 문항이므로 모든 응답자가 응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51번(입소시 교육), 52번(입소후 교육), 55번(진정관련 안내서 비치), 56번(진정서 작성의 자유도), 60번(인권위에서 보낸 문서나 편지의 신속한 수신), 61번(인권위 직원과의 대화의 비밀보장), 63번(인권위 지원과 면담하는 면담실의 방음여부) 문항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나올 경우에는 문항 여백에 ‘모름’, ‘모르겠다’, ‘모르겠음’과 같이 서술형으로 응답해주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심층면접지침서

일반적 사항

1. 본 심층면접조사는 진정권제도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 교정공무원 등에 대해 겸손하고, 예절바른 태도로 질문을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면접대상자의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여 면접대상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면접내용에 대한 녹취(녹음기 사용)에 있어서 연구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녹취자료는 면접대상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 상태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설문지 내용 소개

1. 심층면접은 크게 다음과 같이
시설공무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연령, 근무경력, 직급 등),
수용자의 인권신장에 필요한 사항,
시설공무원의 수용자 진정행위에 대한 견해,
수용자진정행위로 인한 어려움,
수용자의 진정을 방해하는 이유,
바람직한 수용자 고충처리의 방향,
진정권제도의 개선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각 항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용자의 인권신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교정공무원의 관점에서 수용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진정행위에 대한 질문은 수용자들의 진정행위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수용자들이 진정권제도에 대해 인지도가 낮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③ 수용자 진정행위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은 인권위원회 설립 이후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④ 수용자의 진정을 방해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진정을 방해하는 경우에 그 이유와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⑤ 바람직한 수용자 고충처리의 방향에 대한 질문은 교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⑥ 진정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은 제도적 보완책 등에 관한 견해를 질문하기 위한 것이다.

면 접 조 사 자 훈 련 자 료

1. 설문조사 훈련

훈 련	기 간	교육자	피교육자	내 용	비고
설문지 작성단계	2002년 10월 19일 ~ 2003년 1월 13일	이순래 장규원	이상용 김용근	행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회법시행령에 대한 소개. 조사내용의 구분과 세부내역 구성. 설문지 초안 작성.	
설문지 구성단계	2003년 1월 15일	이순래 장규원	이상용 김용근	설문지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설명. 표본추출과정 설명.	
조사방법	2003년 1월 21일	이순래 장규원	이상용 김용근	설문조사시 주의사항 훈련. 설문조사시 조사태도.	
조사과정 재교육	2003년 2월 8일	이순래 장규원	이상용 김용근	대구교도소와 부산교도소 조사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문항에 대한 재검 토. 수정된 내용의 재교육.	

2. 심층면접 훈련

훈 련	기 간	교육자	피교육자	내 용	비고
가이드 작성	2002년 11월 10 일 ~2003년 1월 15일	이순래 장규원	이상용 김용근	조사목적과 내용에 대한 토의. 심층면접 내용 초안 작성.	
조사전 교육	2003년 1월 21일	이순래 장규원	이상용 김용근	면접방법과 면접태도에 관한 교육. 심층면접의 중요내용 교육.	
조사과정 재교육	2003년 2월 8일	이순래 장규원	이상용 김용근	대구교도소와 부산교도소 조사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재검토. 질문 방법에 대한 교육 (입소시·입소후 교육, 진정방해)	

자문회의 회의결과

회의일시: 2003년 5월 6일 오후 2시-6시

회의장소: 원광대학교 대학원 세미나실

연구과제명: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참석자 명단:

1. 오영근 (한양대학교 교수, 법학 부분)
2. 노성호 (전주대학교 교수, 사회학 부분)
3. 박철현 (동의대학교 교수, 연구방법론 부분)
4. 장규원 (공동연구자)
5. 이순래 (연구책임자, 연구결과 발표)

자문회의 검토의견

오영근 교수의 검토의견

- . 많은 분량의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요약발표하여 감사하다.
- . 수용자 권리구제의 다양한 방법들을 정리하고, 특히 교정시설에서의 집필과 관련하여 행형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상충부분을 지적한 것이 돋보인다.
- . 본문에서 교정시설측이 진정권 관련교육을 담당하므로 진정권제도의 낮은 인지도를 기술하면서 교정시설의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 . 연구결과 부분에 소결의 형태를 첨가하여, 연구결과를 개관해 줄 필요가 있다.

노성호 교수의 검토의견

- . 진정권제도의 현황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자료들은 관련주체의 연구에서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외국제도에 대한 소개가 첨가되기를 바란다.
- . 응답자들이 진정절차를 불편해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불편해소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 결론에서 제시한 내부동조기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청에서 신설한 인권반 활동은 내부동조기제를 설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 본문 중의 중복 거론된 사항들은 부록의 형태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 인과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연구기간과 연구목적에 비추어 무리이지만, 필요한 곳에선 인과분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고서 이후에 수용자의 인지도 형성에 미치는 요인, 인지도와 태도와의 관계, 태도와 진정행위와의 관계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박철현 교수의 검토의견

- . 질문지는 기존에 이미 사용했던 문항들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 . 접근하기 곤란한 교정시설 수용자를 어렵게 조사했지만 표본선정과정에서 임의추출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교정시설에서 모범적인 수용자만을 표본으로 내보냈다면 연구결과는 왜곡되었을 수 있다.
- . 응답자의 개방형 응답을 인용한 것은 본문의 수량적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용된 몇몇 사람의 의견이 수용자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개방형 응답은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본문의 기술과정에서 예시적 사례임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 . 심층면접결과의 인용도 마찬가지로 20여명의 의견이 전체 교정공무원의 생각을 반영할 수는 없다. 개방형 응답과 마찬가지로 예시적 사례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논의의 핵심은 수량적 자료 중심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 . 연구결과의 제시와 해석을 엄격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부분부분 결과제시와 해석이 혼재되어 있는데 결과제시와 이에 대한 해석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 . 본문에서 언급한 수치와 표에서 정리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곳이 눈에 띈다. 수정이 요망된다.